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I

2026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Contents

Part 01
자립지원 사업의 이해

1. 자립지원 사업 개요 2
2. 자립지원 사업 연혁 7
3. 자립지원 사업 내용 9
4. 자립지원 사업 기관별 역할 11

Part 0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1. 개요 18
2. 채용 및 배치 21
3. 교육 23
4. 평가 24
5. 운영위원회 25
6. 외부 협력체계 및 자원 연계 26
7. 행정사항 27

Part 03
15세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자립지원서비스

1. 자립지원계획 수립 37
2.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38
3. 자립 준비도 점검 44
4. 보호연장아동 지원 45
5. 보호종료 점검 46

Part 04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서비스

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개요 54
2.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절차 64
3.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개요 69
4.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절차 72

Part 05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실천

1. 실천 개요 92
2. 일반형 99
3. 집중형 105
4. 위기형 111
5. 협조가 어려운 대상자 115

2026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주요 변경사항

Part 01 자립지원 사업의 이해

※ 주요 변경사항만 기재함. 세부 변경사항은 본문 확인

페이지	현행	개정
8	〈신규〉	2025년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대상 확대 (1,000명 → 1,500명)

Part 0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페이지	현행	개정
23	〈신규〉	슈퍼비전
24	〈신규〉	04. 평가
25	〈신규〉	운영위원회
26	〈신규〉	외부 협력체계 및 자원 연계
28	〈신규〉	- 종합 심리검사 참여 및 해석에 필요한 상담비, 초진비 등 지원 가능 - 심리상태 파악에 지능검사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전문가 판단이 있을 경우 지능검사 제외 가능
29	• 강사료: 최초 1시간 15만원 이내 (추가 1시간부터 10만원 이내) • 식·다과비: 1인 1식당 2만원 내(1일 총 5만원 내)	• 강사료: 강사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식·다과비: 1인 1식당 25천원 내 (1일 총 75천원 내, 1일 최대 3식)
30	거리(왕복) / 4km 미만 / 4km ~ 12km (시내) / 12km 이상 (시외) 일비: 해당없음 / 4시간 미만 10천원, 4시간 이상 20천원 / 20천원 식비: 대면상담 전·후 대상자와 함께 사용 시 담당 자립지원전담인력(최대 2인) 1회 20천원 운임: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실비 ② 차량 임차료: 유류비 포함, 렌트 기한 상관없이 3대 지원 가능(대면상담 용도 위주 사용 권고)	- 대면상담 출장비 거리(왕복) / 4km 미만 / 4km ~ 12km (시내) / 12km 이상 (시외) 일비* : 해당없음 / 4시간 미만 10천원, 4시간 이상 20천원 / 25천원 식비: 대면상담 전·후 대상자와 함께 사용 시 담당 자립지원전담인력(최대 2인) 1회 25천원 운임: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실비 숙박비: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실비 * 상한액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경유 시 최종 목적지 기준으로 적용, 차량 임차 또는 관용차량 이용 시 일비 1/2 감액(개인 차량 감액 제외) - 차량 임차료: 유류비·통행료 포함, 렌트 기한 상관없이 3대 지원 가능(대면상담 용도 위주 사용 권고)
30	- 종사자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비(1인 20만원 내)	- 종사자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비(1인 5회기 내)
32	〈신규〉	의사 확인(자립지원전담기관) 친족·주변인·종사자 확인 후 사업안내 및 참여 의사 확인 ⇩ 신청서 제출(자립지원전담기관)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 서비스 제공(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연계 ⇩ 결과 보고(자립지원전담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서비스 연계 여부 보고
33	〈신규〉	○ 자립준비청년이 보호되었던 아동복지시설, 친구 등 비친족이 장례주관 희망시 「장사법」 등 법률에 따라 시·군·구를 통해 장례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
33	〈신규〉	기록물 관리

Part 03 15세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자립지원서비스

페이지	현행	개정
37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5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삭제〉
46		- 취업 등 아동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소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해당 사실을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공유하고 퇴소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보호종료점검회의 개최

Part 04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서비스

페이지	현행	개정
54	〈신규〉	사후관리 ※ 대한민국 국적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대상 기준과 별개
55	〈신규〉	재등록 대상자(본인 거부 종료 후 재등록)는 재등록 당시 주소지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56	〈신규〉	정기 사후관리는 대면 실시 권고
58	〈신규〉	재보호 - 사후관리 미동의자가 재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희망 시 최초 보호종료일부터 5년간 사후관리(재보호기간 제외)65
58	〈신규〉	재보호 ○ 자립생활관(자립지원시설),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소 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안내 ○ 시·군·구는 연간 발생하는 재보호조치 결정 및 재보호종료 명단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상시 통보(공문 권고)*

2026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주요 변경사항

Part 04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서비스

페이지	현행	개정
59	○ 익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사후관리가 재개된 달부터 지원 지속	일시중지 ○ 군 복무 시작일부터 사후관리를 일시중지하며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잔여기간 사후관리 재개 - 사후관리 기간 중*, 입대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본인 사에 따라 복무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 일시중지** 처리 가능 * 사후관리 종료일 이후에는 사후관리 기간 연장 불가 ** 군복무 기간 사후관리(자립수준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59	* 종료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사후관리 재개	일시중지 ○ 재보호조치일부터 사후관리를 일시중지하며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잔여기간 사후관리 재개
60		일시중지 ※ 사후관리 일시중지는 일시중지된 일수를 기준으로 함
62	〈신규〉	이관 * 자립지원전담기관 개소 전 이관 체계 불분명 등으로 사후관리동의서가 없는 경우 보호종료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재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확보하되, 미확보 시 이관받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확보
63	〈신규〉	이관 ○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사후관리 대상자 중 자립지원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관받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필요성 검토하여 선정 후 사후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이관
72	○ 초기상담 과정을 통해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 진행	○ 대상자 발굴 후 1주 이내 대상자 초기상담 안내 ○ 대상자 발굴 후 2주 이내 초기상담 진행 ○ 초기상담 후 1주 이내 필요성을 재점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
73	〈신규〉	○ 초기상담 후 2주 이내 욕구사정 진행
74	〈신규〉	○ 자립 여건 및 의지뿐 아니라 주요 욕구의 지속도, 반복도, 심각도, 복합도, 해결의 어려움, 위험도, 긴급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
75	○ 내부 사례회의: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을 협의하게 위해 수시 개최 ○ 통합 사례회의: 주요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내용을 협의하여 연계 방식 조정	○ 내부 사례회의 - 주 1회 주간회의, 월 1회 월간회의 정기 개최 권고 ○ 통합 사례회의 - 분기 1회(연 4회) 이상 권고(외부 기관이 주 사례관리자인 회의 참석 제외)
76	○ 단기목표: 서비스 제공 후 6개월 내 달성 가능한 목표로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와 연관되게 설정하고 개입시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 ○ 장기목표: 6개월 이상의 개입으로 대상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	○ 단기목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1~3개월 단위 기간 중 실행 가능한 과정적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개입의 총량, 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프로그램 참여 시간·노력의 총량(산출 목표) ** 3개월 내의 단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장기목표 작성 없이 단기목표만 작성 가능 ○ 장기목표: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 해결을 위해 기대되는 변화 * 개입을 통해 대상자의 태도·행동·지위·조건 등이 변화되는 것, 문제해결 및 욕구 충족되는 개선 상황을 말하는 성과
76	〈신규〉	○ 목표 수정: 목표점검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대상자와 합의하여 수정
77	〈신규〉	○ 평가 기준 수립: 종결 시점에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기준 수립
78	〈신규〉	○ 단기목표에 기반한 대상자의 활동 및 서비스 계획에 준하여 수행 ○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서비스를 매개로 대상자의 주도적 참여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수단 ○ 대상자가 스스로 자립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촉진 및 지원
79	• 헬스장, 수영 등 체력단련비는 1개월 기준 15만원 한도 내 가능	• 체력단련비: 꾸준한 재활이나 운동,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장, 수영 등 1개월 기준 15만원 내 지원(단순 여가활동 제외)
79	• 법률소송비, 변호사 선임비	• 법률소송비, 변호사 선임비(소송, 재판, 참고인 조사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법무사 선임비(공증비용, 법률상담비 등)
79	〈신규〉	※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주거급여를 조회하여 지급 내역을 거주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공문 제출 ※ 주거급여 조회 확인 후 임대료(월세)를 지원하며, 주거급여 소급적용 시 소급 결정된 달부터 지원 중단
80		○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 외 분기 1회 이상(연 4회) 대상자 변화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과정에 대한 변화 점검

Part 05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실천

페이지	현행	개정
92	〈신규〉	실천 개요
99	〈신규〉	일반형
105	〈신규〉	집중형
111	〈신규〉	위기형
115	〈신규〉	협조가 어려운 대상자

Part

01 자립지원 사업의 이해

1. 자립지원 사업 개요

2. 자립지원 사업 연혁

3. 자립지원 사업 내용

4. 자립지원 사업 기관별 역할

01. 자립지원 사업 개요

1. 개념

- 자립: 가정과 지역사회의 성인 구성원으로서 자기충족적이고 상호협력적으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

- 자립지원 사업: 보호대상아동이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보호종료를 준비하여 성인기에 안정적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 전후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2. 목적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 강화 및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적응과 자립 실현

3. 근거(참고)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4. 대상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중인 사람**
  - 본인 의사에 따라 18세 이후 25세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및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시 보호기간 연장 가능
  - 보호종료된 사람 중 25세에 달할 때까지 재보호조치된 사람*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 및 시행령 제22조의2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시 재보호기간 연장 가능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18세 연령 도래 또는 연장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3호)
    - 재보호조치 된 경우, 재보호조치 기간 사후관리는 일시중지되며, 재보호조치 종료* 후 잔여기간 지원
    * '24. 8. 7. 이후 재보호조치 종료된 자부터 적용
  - 15세 이상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되었으나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4호)
    - 타법상 시설 입소, 조기 취업·진학 사유로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 도래 후 5년간 사후관리 ('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원가정 복귀 사유로 조기 보호종료되었으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재보호조치 종료 후 최초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4. 8. 7. 이후 재보호조치 종료된 자부터 적용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참고 | 관련 법 조항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 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아동복지법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아동복지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 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참고 | 관련 법 조항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6조의 4(재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중이거나 진학을 준비중인 경우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2(재보호조치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이하 "재보호조치"라 한다)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재보호조치에 따른 보호기간은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보호조치를 받는 사람이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보호조치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02. 자립지원 사업 연혁

1993년
- 7월 자립지원센터 위탁 사업 7개소 운영

1998년
- 전국 16개 센터로 확대 운영

2006년
- 전세 주택,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국토해양부)

2007년
- 4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디딤씨앗통장) 도입

2008년
-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실태조사(보건복지가족부)

2011년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전면 시행(보건복지부)

2012년
- 8월 아동복지법 개정(자립지원의 법적 근거 규정)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연장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보건복지부)
- 가정위탁지원센터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2013년
-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지자체(시·도, 시·군·구) 공무원 통계조회권 부여

2014년
- 가정위탁지원센터와 DB 연동 – 자립 관련 자료입력 및 통계산출 가능

2016년
- 경계선 지능* 아동 지도사 민간자격 등록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실태 및 욕구조사(보건복지부)

* DSM-Ⅳ 경계선지적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2017년
- 5월 자립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통합

2019년
- 자립수당,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업,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사업실시
- 아동자립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19.8월~)

2020년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로 디딤씨앗지원사업(CDA) 이관
- 자립수당 대상 확대(보호종료 2년 이내 → 3년 이내)
- 보호종료아동 심리정서 실태조사

2021년
-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발표
- 자립수당 대상 확대(보호종료 3년 이내 → 5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명칭 변경(보호종료아동 → 자립준비청년)

2022년
- 아동복지법 개정(24세 보호연장 규정 등)
- 자립수당 인상(월 30만 → 35만)
-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2023년
- 아동복지법 개정(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근거 신설)
- 자립수당 인상(월 35만 → 40만)
- 자립정보ON(jaripon.ncrc.or.kr), 자립준비청년 전용 상담센터 개설 (1855-2455)민간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북 배포
-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2024년
- 아동복지법 개정(재보호조치 자립지원 근거 신설)
- 자립수당 인상(월 40만 → 50만)

2025년
-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대상 확대(1,000명 → 1,500명)

03. 자립지원 사업 내용

1. 자립지원 사업 내용

- 15세 이상 아동 대상 매년 개별 자립지원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상태 평가
  -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 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연계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내 자립지원 내용(DB) 입력 및 관리
-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자립지원 교육

2. 주요 단계

- 보호 중 자립지원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
-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
-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보호종료 전후 상호 협력 필수

단계		제공주체	서비스 내용
1단계	시설 입소(위탁) 결정 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원가정이 있는 경우 원가정 지원계획,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2단계	자립지원 계획수립 및 운영		· 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별 자립기술평가 실시 및 자립지원계획서(서식1) 작성(진학, 취업, 주거 계획 등 포함)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자립지원계획 입력
3단계	자립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 자립지원계획에 기초하여 자립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제공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직접 운영, 외부 프로그램 연계 등 – 별도 공간(1인실), 자립체험관 등을 활용하여 자립체험프로그램 운영
4단계	자립준비도 점검		· 18세 도래 전 아동의 자립준비도, 본인의 연장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종료 또는 보호연장 결정 · 경계선 지능 등 자립취약아동의 자립준비기간 필요시 연장 보호 검토
5단계	보호연장 자립지원		· 취업·진학 서비스 중점 제공: 고용센터, 국가장학금, 외부 자원 등 활용 · 집중지원 필요 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연계
6단계	보호종료 점검 및 보호종료		· 보호종료예정자 자립 준비상황 최종 점검 및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 진학·취업, 등록금 조달, 주거 마련, 원가정 관계,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 자립수당 신청 여부, CDA 적립금 등
7단계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자립지원전담기관	·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서식17) · 집중지원 필요 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04. 자립지원 사업 기관별 역할

자립지원 사업 전달체계

관리체계	보건복지부(사업총괄)	시·도		시·군·구
운영체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 **추진체계별 역할 및 기능**

구분		역할 및 기능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 자립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총괄 · 자립지원 사업 운영 지침 마련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관리·감독
국가아동권리 보장원	**자립지원부**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 강화교육 및 자원 연계 등을 통한 자립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지원 및 사업 평가 · 자립지원 사업·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민간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모니터링 ·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디딤씨앗지원사업(CDA) 업무 운영
시·도 (시·군·구)	**담당부서**	·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및 예산·인력 등 운영지원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 확보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확인 및 지급일자 공지 · 자립지원 관련 통계 관리·보고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의 아동별 자립계획수립 여부, 자립준비 프로그램 실시 현황 등 점검
	자립지원 전담기관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실시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입력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기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및 지원 · 15세 이상 아동 연령별·영역별 자립기술평가, 자립지원 계획수립, 자립지원 프로그램 진행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지원 및 자립수당 신청 지원 · 자립지원 관련 현황 시스템 입력 및 지자체 보고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등에서 실시하는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참석 · 보호종료 후 관계 유지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 계속 ·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협조 ※ 특히 보호종료 후 1년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 및 연계 집중

1.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 ▸ 자립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총괄
  - ▸ 자립지원 사업 운영 지침 마련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관리·감독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 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 강화교육 및 자원 연계 등을 통한 자립지원
  -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지원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입력 지원, 종사자 교육, 평가 등
  - ▸ 자립지원 사업·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민간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바람개비서포터스(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멘토단) 운영관리
    - 자립정보플랫폼(자립정보ON),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 카카오 채널(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지원) 등 자립지원 정보 채널 운영
    - 자립지원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등

- 시·군·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
  - ▸ 보호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수립, 양육 상황 점검 및 원가정 복귀 지원
  - ▸ 보호종료예정아동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종결 안건 상정
    - 재보호조치 접수, 상담, 계획수립 및 심의: 재보호조치 결정 후 7일 내 보호조치 결정통지서 송부
  -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연계 및 사후관리 협조
    -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 전달: 보호종료 신청명단, 보호종료 결정명단, 전출입 명단
    - 조기 보호종료아동, 재보호조치, 연락두절 등
  - ▸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실시 협조 및 사후관리 점검표 작성*
    * 협의를 통해 유선 또는 공문 협조 방식으로 사후관리 점검표 항목에 관한 아동 현황 요청하여 작성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 ▸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및 지원
  - ▸ 15세 이상 아동 자립기술평가 실시, 자립지원계획(매년 1~3월 실시, 12월 말까지 입력) 수립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결과, 일시중지·연장아동 현황, 보호종료점검회의, 보호종료 현황
  - ▸ 자립체험프로그램 및 보호아동 연령별·영역별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운영

▸ 개별 자립준비도점검(부록4)을 통해 자립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원*

* 예. 보호종료 직전 교육 강화: 외부 자립체험관 활용, 자립교육 의무화, 보호종료 점검 사례회의 등

- 보호종료 3개월 전까지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호조치 종료(퇴소) 신청서 제출(서식7)
- 보호종료 1개월 전까지 보호종료점검회의 개최, 아동과 함께 자립수당·자립정착금 신청서 (계획서) 작성 및 시·군·구 제출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자립지원 현황 입력

구분			입력내용	입력시기
보호 중	자립지원 전담요원	아동관리	· 15세 이상 아동 등록 · 연장아동 연장사유 등록 · 일시중지 등록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등록 아동 중 15세 이상 시
		자립지원관리	· 자립기술평가, 자립지원계획서	· 수시
			· 자립준비프로그램, 사례관리일지	· 수시
보호종료 시점		보호종료관리	· 자립준비도 점검 내용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내용 · 보호종료점검회의 내용 · 보호종료카드 내용 등	· 보호종료 예정일 3개월 전 ~ 보호 종료 시

▸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자립수준평가) 필수 협조(보호종료 후 1년간 집중 협력)

- 위기 상황 발생 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안정적 지원 필요)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종사자 역량 강화교육 참석

아동복지시설 내 자립지원업무 역할 분담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은 생활지도원(보육사), 보호종료예정자와 자립준비청년(집중협력 1년차)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주된 책임을 지고 수행

- 사무국장, 보육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생활복지사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수행
- 지역 상황에 따라 법정 배치기준에 맞게 배치되지 못한 경우 시설 내에서 직무를 조정하여 수행

·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배치되지 않은 경우 보육사가 센터장의 슈퍼비전을 받으며 함께 모든 단계 수행)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 대비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부족하므로 상담원 도움을 받아 수행

- 자립지원계획수립, 자립기술평가, 보호종료점검회의* 개최

  * 보호종료점검회의는 업무분장에 따라 자립지원전담요원 대신 아동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상담원이 수행 가능

- 위탁부모 및 아동과 직접적 소통을 위해 센터 내 상담원,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수행

• 자립지원전담기관

▸ 자립지원 사업·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민간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사후관리: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준평가 등 사후관리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재보호조치 대상자 중 초기상담을 통한 선정 및 서비스 제공, 민간자원 발굴·연계 등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자립지원 업무 협조: 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자립지원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등

- 보호종료점검회의 참석하여 사후관리계획(서식15) 수립 및 사후관리동의서(서식16) 확보 후 보호종료예정일 3주 전까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 제출
- 자립정착금 수령 후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모니터링*

  * ▲(사용계획서 확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 또는 시·군·구에서 보호종료 명단과 함께 공유
  ▲(점검) 사용계획서에 따른 사용 여부 점검,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추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에 자립지원 현황 입력

- 사후관리(자립수준평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등

▸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 자립지원 사업 홍보. 바람개비서포터스 운영 등

2. 보고사항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분기별 익월 말까지 대상자별 사후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시·도

제출기한	제출내용	제출처
반기별 (익월 15일까지)	·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현황	보건복지부
반기별	· 사후관리 대상자 보건복지부 기준명단	자립지원전담기관
분기별 (익월 말일까지)	· 예산집행 관련 사항(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집행내역 관리 철저)	보건복지부
분기별	·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공유한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 - 명단 내 타 지역 대상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 시도 공유 → 공유받은 시도는 해당 시·군·구로 공유	시·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제출기한	제출내용	제출처
연도별	· 자립지원전담인력 채용계획 및 소요예산 등 사업계획	시·도 (필요시 보완 요청)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 예산집행 관련 사항 – 사례관리비 지출 증빙 시 사례관리비 지출 내역서(서식36) 제출	시·도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 시·도에서 제공받은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에 대상자별 사후관리 실시 현황 작성 (사후관리 유무, 날짜, 연락두절 여부, 대상자 특이사항 등)	시·도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 사후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실적 · 사례관리비 사용 내역(상담 물품 지원내역, 대면상담출장비 내역 등)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월별 (익월 10일까지)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 명단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심사서(서식39)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해지(종결) 동의서(서식40)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상시	· 자립준비청년 사망 사건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3. 자립지원업무 흐름도

구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	자립지원전담기관
15세 ~ 보호종료 전	· 자립기술평가 · 자립지원 계획수립 ·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	· 보호조치 결정 · 사례결정위원회: 양육상황 점검 · (필요시) 보호조치 변경 결정	
보호종료 3개월 전	· 자립준비도 점검 · 보호종료 여부 결정하여 시·군·구에 보호조치 및 종료(퇴소)신청서 제출 · 보호종료점검회의 개최 (자립지원전담기관 참석 요청)	·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호종료 신청 내역 안내 (성함, 연령, 입소일, 보호종료예정일, 시설정보 등) [조기보호종료 대상자] (타법상 시설입소, 조기 취업·진학) · 18세 도래 1개월 전 회의 개최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후관리 의뢰	· 보호종료 신청 내역 확인 · 담당 자립지원전담인력 지정 · 보호종료점검회의 참석
보호종료 1개월 전	· 보호종료점검회의 개최 완료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 자립수당 신청 지원	·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종료 결정 직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호종료 통지서 송부 * 사후관리계획서, 동의서 확보 확인 * 자립수당, 정착금 신청 확인 ·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호종료 결정 명단 안내	· 사후관리계획서 작성, 사후관리 동의서 확보 · 보호종료 3주 전까지 시·군·구 제출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 사후관리 업무 협조 (보호종료 후 1년간 집중 협조)	· 사후관리 업무 협조 · 사후관리 대상자 전출입 명단 안내 · 사후관리 실시 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 점검표 작성	· 사후관리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자립지원 프로그램 제공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 연령도래(18세) 또는 보호연장 종료자 모두 위 흐름도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

[참고]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및 자격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1, 14(보호유형별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기준)

▸ 아동양육시설*: 7세 이상 아동 7명당 보육사 1명, 생활복지사 1명, 직업훈련교사(필요 인원), 상담지도원(필요 인원), 임상심리상담원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 30명 이상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기준

**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 공동생활가정: 7세 이상 아동 7명당 보육사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필요인원)

▸ 가정위탁: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사무원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이상

* 관할지역 위탁아동 400명 초과) 2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 추가 배치
(15세 이상 아동수 100명 초과)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추가 배치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5(자립지원전담요원 자격기준)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 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Part

0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1. 개요

2. 채용 및 배치

3. 교육

4. 평가

5. 운영위원회

6. 외부 협력체계 및 자원 연계

7. 행정 사항

01. 개요

1. 목적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자립지원 업무 체계화
-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2. 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3. 설치 및 운영

- 시·도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직접 수행)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계약 체결(위탁 운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

수행기관 선정

· **수행기관:** 시·도에서 수행기관으로 공모 혹은 지정하여 대상자 모집·선정, 자립지원전담인력 선발·관리,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등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선정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3년 이상 아동복지 관련분야에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다만, 국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아동복지 관련분야 활동 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②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③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④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능한 법인
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설립된 시도 사회서비스원

· **선정 절차**

- 시·도는 원칙적으로 공모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조직·인력 규모 및 안정성, 사업수행 경험·능력, 예산운영 능력, 해당 분야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자립지원전담기관,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자립지원 업무 수행기관으로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예외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는 반드시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로 결정된 공공기관 또는 법인과 계약 체결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설치 기준

공간	설치 기준
사무실	· 자립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출 것
상담실	· 16.5m2 이상의 규모로 상담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 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그 밖의 시설	·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6.5m2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 운영 기준

▸ 관리규정: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 시행해야 함

▸ 장부 등의 비치: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함

– 자립지원전담기관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일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인사카드,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 원장(總計定 元帳) 및 수입

· 지출 보조부, 금전 ·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조사 · 상담 · 사례관리 기록과 관련 서류

▸ 그 밖의 사항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실시해야 함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자체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자립지원전담기관, 시·도(시·군·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비용보조

▸ 보건복지부 및 시·도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예산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4. 주요 업무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수준평가 등 사후관리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재보호조치 대상자 중 초기상담을 통한 선정 및 서비스 제공, 민간자원 발굴·연계 등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입력

– 사후관리(자립수준평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수행 현황 입력

▸ 자립지원 업무 협조: 보호아동 자립지원계획, 자립지원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등

– 보호종료점검회의 참석하여 사후관리계획(서식15) 수립 및 사후관리동의서(서식16) 확보 후 보호종료예정일 3주 전까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 제출

– 자립정착금 수령 후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모니터링*

* ▲(사용계획서 확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제공 또는 시·군·구에서 보호종료 명단과 함께 공유
▲(점검) 사용계획서에 따른 사용 여부 점검, 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추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

▸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 지역사회 자원 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기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바람개비서포터스 운영 등

02. 채용 및 배치

1. 자격 기준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3 별표7의4에 따라 아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아동·청년에 대한 기본 이해를 기반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전문가 채용

직위	자격 기준
자립지원 전담기관장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행정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단, 아래의 조건을 갖춘 자를 우대할 수 있음

①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전담요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② 자립관련 업무 종사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③ 정신건강전문요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④ 자립관련 자격증(직업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관련기관(청년센터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채용

- 채용주체: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 채용절차: 채용공고 → 1차 심사(서류심사) → 2차 심사(상담심사) → 최종 합격
  - ▸ 관련분야 지식 및 실무 적용 능력(사례관리, 상담 및 교육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방식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문인력을 우선 채용
    * 공개모집 외 예외 사항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사항을 따름

- 결격사유 및 범죄 경력 조회
  -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과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점검·확인*
    * 채용예정자 결정 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건강진단서를 제출받고, 조회 결과 및 확인을 통해 최종 합격 여부 결정

- 종사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 적용

2026년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38	20	9	13	11	10	5	2	4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10	9	11	11	15	10	14	5	240

* 탈 고립은둔 전담인력 포함

3. 배치

-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되어 사후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등 업무 수행
  - ▸ 시·도 등 기타 사업을 위해 채용된 인력과 혼용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타 업무 겸직 금지(희망디딤돌, 법인사업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의3 별표7의4 「자립지원전담인력 배치기준」

가.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1명, 자립지원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제1호가목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을 겸할 수 있다.

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자립지원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자립지원전담인력 내 슈퍼바이저(팀장)를 배치하여 조직 구성 가능*
  * 단, 슈퍼바이저(팀장)도 사후관리 실무 수행 필수

03. 교육

1. 개요

- 교육주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교육대상: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인력
- 교육일정: 연간 운영일정 별도 안내
- 교육과정: 자립지원 사업의 이해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목*으로 구성

  * 예. 자립지원 정책 이해, 자립 지원 업무매뉴얼 이해, 자립 지원 프로그램 활용, 통합사례관리·사후관리 실천, 자립준비청년과 관계 형성, 주거·진로지원 제도 이해, 자원연계와 네트워킹, 특수욕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이해

2. 수행체계

- 보건복지부: 교육사업 계획수립
- 시·도: 자립지원전담인력 대상 교육 참여 안내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교육 운영 및 결과 보고, 실적관리
-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인력 교육 이수

  ※ 필요 시 자립지원전담인력 욕구에 따라 기관 운영비를 활용하여 추가 자체 교육 가능

[참고] 슈퍼비전 체계 운영

·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으로 기관 내 서비스 방향, 수준 등의 신뢰성 확보 및 조정

·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실천 역량 강화 및 윤리적 딜레마 지원

(내부) 슈퍼비전

· 목적: 사례관리 실천 과정에 대한 점검, 사례담당자의 성장 지원

집단 슈퍼비전	·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과정 점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집단, 동료 슈퍼비전 진행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과정별 전문가로서 역할, 어려움, 지원 요청 사항 점검
개별 슈퍼비전	· 전문가로서 성장을 위한 개별 슈퍼비전 계획수립, 1:1 슈퍼비전 주기적 실시(매월 또는 격월 권고) · 개별 성장 목표 및 계획(교육, 훈련 등) 점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운영 상황의 적절성(사례 수, 난이도 등), 실천 과정 중 경험, 어려움, 지원요청 사항

(외부) 슈퍼비전

· 목적: 자립지원전담인력에 대한 교육 및 동기부여와 지지, 문제해결 및 개입 전문성 강화 등

· 방법: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외부 전문가(임상 분야 실천가, 학계 전문가 등)의 집중 개별·집단 슈퍼비전 진행

· 내용: 기관 운영 및 사업 자문이 아닌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실천에 대한 슈퍼비전을 통해 실천 전문성 강화 도모

· 주기: 연 1회 이상 권고

· 연간 슈퍼비전 계획수립 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나 기관별 횟수, 주기 설정

04. 평가

1. 목적

- 자립지원전담기관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효과성 제고

2. 개요

- 평가대상: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 평가주기: 추후 안내
- 평가내용: 대상 기간의 사업 운영 전반
  - ▸ 평가영역: 사업 운영, 기관 운영 2개 범주로 구성

평가영역	평가항목
사업 운영	· 사후관리 운영의 적절성, 사후관리 서비스 품질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운영의 적절성,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품질 · 자립지원 프로그램 서비스 품질
기관 운영	· 자립지원 역량관리 · 회의 및 협의체 운영 · 재정관리

- 평가방법: 현장평가, 사례평가, 인터뷰 평가

3. 수행체계

구분	주요 역할
보건복지부	· 평가 업무 총괄, 결과 활용 및 정책 반영
국가아동권리 보장원	· 평가 실무 총괄 – 평가 계획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촉, 평가 운영, 본 평가지표 마련 등
평가단	· 평가 및 평가 결과 분석,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컨설팅, 본 평가지표 개선 방향 제시 등

05. 운영위원회

1. 목적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자립준비청년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2. 구성

-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
  - 위원 유형: 자립지원전담기관장, 자립지원전담인력, 자립준비청년, 시·군·구청 자립업무 담당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원장: 위원 중 호선함
- 위원의 임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3. 주요 내용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자립지원전담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자립준비청년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자립준비청년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4. 보고사항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5. 운영사항

-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필요 시 수시 개최
-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또는 사업 운영 과정에 반영

06. 외부 협력체계 및 자원 연계

1. 외부 협력체계

- 필요성
  - 대상자 욕구 및 문제대응을 위해 기관과 대상자의 자원 외 지역사회 협력 필수
  - 대상자 욕구가 복합적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전략적 공동 대응 중요
- 유의점
  - 참여 기관 등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기본적이고 주요한 이해 공유
  - 물리적 자원부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참여에 이르기까지 외부 협력의 방식과 범위 다양
  - 실무자 간 개인적 협력이 아니라 기관 간 공식적 협력으로 운영
- 운영 방법
  - 자립지원전담기관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공공·민간 분야 각 실무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분기별 1회 이상 권고)
  - 지역자원 및 서비스 제공 관련 협의·조정과 각 기관 간 대상자 및 서비스 등의 정보공유
  - 기관 간 연계 방향 설정 및 연계 내용, 상황, 대상자 변화 등 점검

2. 자원 연계

- 필요성
  - 대상자의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 과정에 연결되도록 지역 내 전문 서비스 제공자, 유관기관 실무자 간 공식적·상시적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자원 발굴 및 체계화
- 자원 연계 전략
  - 공식성: 가급적 업무협약 등 기관 간 자원 연계 과정 공식화
  - 호혜성: 실적·성과 공유, 홍보, 일상 업무 협업 등 상호 업무 수행에 도움
  - 참여성: 사후관리 개입 과정, 외부(확대) 사례회의 등에 참여하도록 요청
- 운영 방법
  - 자원목록표: 지역 내 공공·민간, 후원, 봉사 등 자원을 욕구 영역별로 목록화하여 관리*
    - 기관 내 공용으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하며 대상자용과 구분하여 정리

* 자원명, 지원 대상, 연계 방법, 담당자, 연락처, 협약 내용, 협약일, 현행화 시점, 사후관리 중 본 기관과 해당 자원 간의 역할 구분 및 협력 가능 지점 등 포함

** 자원 예시: 아동보호전담요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법률지원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찰서(여성청소년과) 등

07. 행정 사항

1.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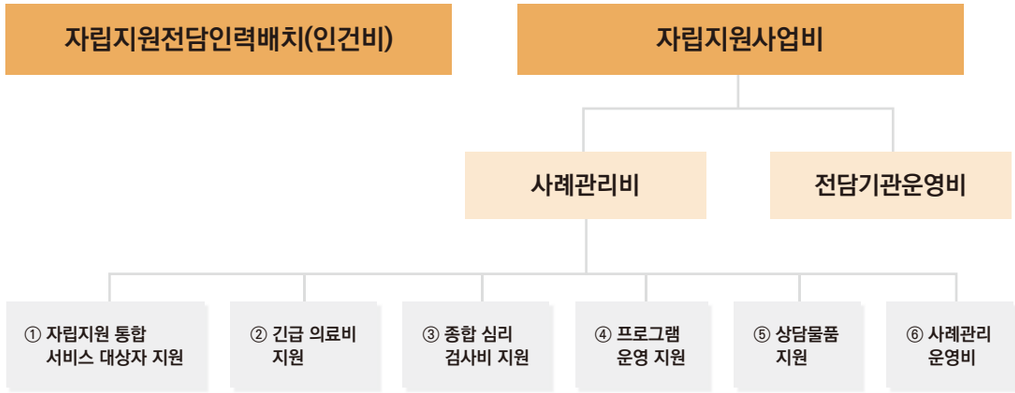

• 예산구분

▸ 자립지원전담인력 배치(인건비)

–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법인부담금 등으로 편성

–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은 「근로기준법」 및 개별 법령 준수

※ 시·도별 자립지원전담인력 배치 인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는 시·도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자체 부담 가능

▸ 자립지원 사업비

– 사례관리비: 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지원, ② 긴급 의료비 지원, ③ 종합 심리검사비 지원, ④ 프로그램 운영 ⑤ 상담 물품 지원, ⑥ 사례관리 운영비

* ②~⑤항목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뿐 아니라 사후관리 대상자, 보호종료예정자, 보호연장아동 지원 가능

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지원

· 의료비, 일상생활지원비, 주거지원비, 교육훈련비, 법률지원비 등 항목별 기준에 맞춰서 집행

(상세 내용 p.79 참고)

② 긴급 의료비 지원

· 수술, 입원 등 ①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비로 충당이 어려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집행 (1인 연100만원 내)

– 공적 자원 등 연계를 우선시하며, 질병·부상의 심각성, 의료비 지출 정도, 경제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절절성 판단 및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지원사항 확인 후 지원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뿐 아니라 사후관리 대상자, 보호종료예정자, 보호연장아동 지원 가능*

* 사례회의 후 사례관리비로 지출하며 사례관리비 지출 내역서에 관리, 사후관리 대상자 지출 사항은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서식18) 추가 작성

③ 종합 심리검사비 지원

· 종합심리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집행(1인 1회 50만원 내)

– 종합 심리검사 참여 및 해석에 필요한 상담비, 초진비 등 지원 가능

– 심리상태 파악에 지능검사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전문가 판단이 있을 경우 지능검사 제외 가능

– 검사 결과에 따라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뿐 아니라 사후관리 대상자, 보호종료예정자, 보호연장아동 지원 가능*

* 사례회의 후 사례관리비로 지출하며 사례관리비 지출 내역서에 관리, 사후관리 대상자 지출 사항은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서식18) 추가 작성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개요 및 지원 절차

· 개요: 정서, 인지, 사고, 행동양식 등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심리검사를 종합적으로 실시

· 검사항목: 지능검사(WAIS), 다면적 인성검사(MMPI), 기질 및 성격검사(TCI), 문장완성검사(SCT) 등

· 검사방식: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검사 실시, 분석(3~4시간 소요)

· 검사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실시

· 절차: 대상자 선정 → 지역 내 상담센터 안내 → 상담 의뢰 및 비용 지급 → 검사 실시 후 결과 파악, 대상자별 사후관리 모니터링지에 결과 기록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선정 여부 검토

④ 프로그램 운영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집행

– (자립지원전담기관 자체 운영)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립기술 학습 또는 대상자 간 상호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경비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운영 별도 안내) 장·단기 자립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자립체험프로그램과 자립체험캠프를 운영하며 실제적 자립생활 기회 제공에 필요한 운영 경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뿐 아니라 사후관리 대상자, 보호종료예정자, 보호(연장)아동 참여 가능

[참고]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 기준

구분	집행 기준
강사료	· 강사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집행 기준' 참고)
활동비	· 체험비(입장권), 문화활동비, 교통비(차량렌트) 등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1인당 1일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일수는 최대 2일
식·다과비	· 1인 1식당 2.5만원 내(1인당 1일 기준 총 7.5만원 내, 1일 최대 3식)

* 프로그램에 현장 참여한 담당 자립지원전담인력에 한해 활동비 및 식·다과비 사용 가능

구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료 집행 기준		
	지급 대상	시간당 지급단가	상한액
1급	· (공공부문) 장관급 이상 공무원	· 기본1시간: 400천원 · 추가1시간부터: 300천원	총액기준 600천원
	· (민간부문)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2급	· (공공부문) 차관급 이상 공무원, 정부(지자체) 투자출연기관장,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 기본1시간: 300천원 · 추가1시간부터: 200천원	총액기준 600천원
	· (대학교수/언론인) 대학 총장이상, 언론사 대표(중앙언론 이상)		–
	· (민간부문) 상장기업 대표 이상(1,000인 이상)		–
3급	· (공공부문) 4급 이상 공무원, 정부(지자체) 투자출연기관 임원 이상	· 기본1시간: 250천원 · 추가1시간부터: 150천원	총액기준 600천원
	· (대학교수/언론인) 부교수 이상, 언론인(10년 이상), 대학병원 및 국공립의료원 소속의 의사		–
	· (민간부문) 국가전문자격(변호사, 의사, 약사 등)을 소지하고 있는 자, 민간분야에서 강의주제와 관련하여 10년 상당의 경력 소지자		–
4급	· (공공부문) 5급 이하 공무원, 정부(지자체) 투자출연기관 직원	· 기본1시간: 180천원 · 추가1시간부터: 100천원	총액기준 600천원
	· (대학교수/언론인) 조교수 이하, 언론종사자		–
	· (민간부문) 경력 10년 미만의 실무자		–
보조	· 실습, 분임, 견학 등 교육 진행 보조자	· 시간당 45천원	–

⑤ 상담 물품 지원

· 대상자 상담 시 필요한 물품 구입위해 집행(1인 10만원 내, 연 1회 한함)

- 대상자 상담 시 자립지원전담기관 홍보, 라포형성 목적으로 웰컴키트 등 물품 지원(1인 10만원 내)
- 지역별 보호종료 예정자 등 신규 상담 예상 인원에 따라 일괄 구매 후 제공 가능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뿐 아니라 사후관리 대상자, 보호종료예정자, 보호연장아동 지원 가능

⑥ 사례관리 운영비

· 대면상담출장비, 차량임차료, 자문수당 비용 집행(사례관리비 10% 이내)

- 공적 자원 등 연계를 우선시하며, 질병·부상의 심각성, 의료비 지출 정도, 경제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절절성 판단 및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지원사항 확인 후 지원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뿐 아니라 사후관리 대상자, 보호종료예정자, 보호연장아동 지원 가능*

* 사례회의 후 사례관리비로 지출하며 사례관리비 지출 내역서에 관리, 사후관리 대상자 지출 사항은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서식18) 추가 작성

거리(왕복)	4km 미만	4km ~ 12km 또는 시내	12km 이상 또는 시외
개별 슈퍼비전	해당없음	출장시간 4시간 미만 10천원 출장시간 4시간 이상 20천원	25천원
식비	대면상담 전·후 대상자와 함께 사용 시 담당 자립지원전담인력(최대 2인) 1회 25천원		
운임	해당없음	해당없음	실비
숙박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실비 * 상한액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경유 시 최종 목적지 기준으로 적용, 차량 임차 또는 관용차량 이용 시 일비 1/2 감액(개인 차량 감액 제외)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대상자, 보호종료예정자(보호종료점검회의 참석), 보호연장아동 대면상담을 위한 출장 시 지원 가능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지원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차량 임차료: 유류비·통행료 포함, 렌트 기한 상관없이 3대 지원 가능(대면상담 용도 위주 사용 권고)
- 자문수당

- 전담기관 운영비: PC, 책상, 사무용품 구비, 출장비*(포럼, 행사 등 대상자 방문 외), 종사자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비(1인 5회기 내)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비용 및 자립 지원 업무 수행 관련 비용

  * 출장비의 경우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처리

• 예산집행 및 관리

▸ 보조금 전용카드 이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

▸ 보조금 반환 및 제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제61조에 따르며, 시·도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자산관리: 자립지원전담인력 PC, 책상 등 집기 구비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관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예외〉

① 자립지원전담기관 → 서비스 제공기관 계좌이체

- 부득이하게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첨부

※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자료 첨부가 어려운 경우 이체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 임대료(전·월세 계약서 등), 공과금·관리비·기숙사비(고지서 등), 통신비 등 대상자 명의 납부 금액·계좌 등 포함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 직접 계좌이체 또는 대상자 계좌이체 후 환급 시 해당 증빙서류 및 계좌이체 내역으로 대체 가능

② 대상자 현금결제

- 긴급상황으로 대상자 현금결제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법인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현금결제 소명신청서(서식37), 현금영수증 내역,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자등록증 첨부

※ 현금 충전식 교통비는 영수증 부착하여 현금결제 소명신청서 후 제출

※ 충전식 교통카드 등 현금결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하여 영수증 처리(현금영수증 외 영수증 증빙 불가), 불가피하게 위의 방식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카드사용 내역 증빙(교통비 확인)

③ 대상자 카드 결제

- 병원, 응급실 등 의료 서비스 사용 전 담당 자립지원전담인력과 협의된 건에 한해 대상자 카드 결제 후 결제내역, 진료비 영수증 첨부(타 지원항목 불가)

2. 보고사항

제출기한	제출내용	제출처
연도별	· 자립지원전담인력 채용계획 및 소요예산 등 사업계획	시·도 (필요시 보완 요청)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 예산집행 관련 사항 – 사례관리비 지출 증빙 시 사례관리비 지출 내역서(서식36) 제출	시·도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 시·도에서 제공받은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에 대상자별 사후관리 실시 현황 작성 (사후관리 유무, 날짜, 연락두절 여부, 대상자 특이사항 등)	시·도
분기별 (익월 20일까지)	· 사후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실적 · 사례관리비 사용 내역(상담 물품 지원내역, 대면상담출장비 내역 등)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월별 (익월 10일까지)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 명단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심사서(서식39)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해지(종결) 동의서(서식40)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상시	· 자립준비청년 사망 사건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시·도는 수시 자료 요구 및 점검 등 가능

자립준비청년(사후관리 대상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사망 사건 보고

·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준비청년 사망 확인 즉시 시·군·구, 아동복지시설 등과 협력하여 사망 경위 등 파악 후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공문 보고(서식23)하고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보고

· 자살인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건보고와 함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족 심리부검 면담, 사후대응 서비스 연계

(참고)

사망사건 발생		사망사건 보고(서식23)		(자살) 유족 등 심리정서 지원
유족, 경찰, 시·군·구, 현장 발견 등을 통해 사망 사실 확인	➡	시·군·구, 아동복지시설과 협력하여 사망 경위, 고인 정보 확인 후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공문 보고	➡	친족, 주변인, 종사자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족 심리부검 면담,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등 연계

[참고] 사망사건 발생 후 유족, 종사자 등 심리정서 지원 방안

• 사망 발생 시 전담기관 운영비로 종사자 심리정서 지원비(1인 5회기 내) 지원 가능

• 자살 발생 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연계 가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족 심리부검 면담

· 유족이 고인 삶의 다양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고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망 전에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회상하며 자살에 이르게 된 원인을 추정하고 고인의 삶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

* 개인 심리상담이 아닌 고인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는 면담

유족 확인 (자립지원전담기관)		신청서 제출 (자립지원전담기관)		면담 일정 조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결과 보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족 확인 후 사업 안내 및 참여 의사 확인	➡	참여 동의 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서식24)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신청서 전달하여 면담 일정 조율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청년정책팀에 심리부검 실시 현황 및 분석 결과 보고

* 유족이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심리부검 면담의 심리정서적 치료 효과 측면에서 적극 안내 필요

* 직접 유족과 소통하기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 아동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협조 필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 자살 사건 발생 조직에 위기 대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직·구성원의 안정 도모 및 일상생활 회복 촉진

– 자살 사후대응 헬프라인(☎1899-4567): 자살 사건 발생 조직에서 현장 개입 의뢰 및 대응 방안 자문요청을 위한 전용 핫라인 운영

– 집단교육, 집단상담, 개별상담, 사후 모니터링 등 지원

의사 확인 (자립지원전담기관)		신청서 제출 (자립지원전담기관)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		결과 보고 (자립지원전담기관)
친족·주변인·종사자 확인 후 사업 안내 및 참여 의사 확인	➡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부록19)에 신청	➡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연계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서비스 연계 여부 보고

- 자립준비청년이 보호되었던 아동복지시설, 친구 등 비친족이 장례 주관 희망시 「장사법」 등 법률에 따라 시·군·구를 통해 장례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 ·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8.〉

⑥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2023. 3. 28., 2024. 2. 6.〉

3. 기록물 관리

- 기록물은 잠금장치가 있는 수납장에 보관
- 기록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관 및 보안에 주의

Part

03 15세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자립지원서비스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1. 자립지원 계획수립
2.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3. 자립준비도 점검
4. 보호연장아동 지원
5. 보호종료 점검

자립지원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1) 자립지원 계획수립 (보호종료 3개월 전까지 매년)		
2)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보호종료 직전까지 상시)		
3) 자립준비도 점검 (보호종료 3개월 전) - 보호종료·연장여부 결정 - 보호종료(퇴소) 신청서 제출		3) 보호종료 신청명단 안내
4) 보호종료점검회의(보호종료 1개월 전) - 자립준비상황 최종 점검,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안내 -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동의서 확보(보호종료 3주 전)		
		5) 보호종료 결정 - 보호종료 결정명단 안내
	6) 사후관리(보호종료 이후 5년)	6) 사후관리 모니터링 - 전출입 명단 안내 - 연락두절 시 업무 협조
	6)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사후관리 계획수립 단계는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소재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실시
※ 보호종료 직후 대상자 주소지 이전 시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소재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보호종료점검회의 참석 및 사후관리 계획수립 후 이전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이관

01. 자립지원 계획수립

1. 수행시기

• 15세부터 보호종료 3개월 전까지 매년* 작성(보호연장, 재보호조치** 포함)

* 고등학교 이후 아동부터는 진학 또는 취업 계획 등 변동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 2회(반기별) 작성 권고,4분기 입소(책정) 아동은 차년도부터 작성

**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퇴소한 아동 중 24세 이전으로 재보호 선정 시 보호아동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2. 수행주체

• 자립지원전담요원

3. 내용

· 15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동의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
· 보호종료 시점에 맞춰 남은 기간 준비할 내용 점검

• 자립기술평가(부록1)*에 기초하여 평균 점수 이하 영역 집중지원 할 수 있도록 계획

* 예. 〈F. 진로탐색〉 결과에 기초하여 희망 진로(진학, 취업 등)에 따라 제공서비스 결정: 학업 수준 향상시켜 희망 대학입학 지원, 등록금 조달방안, 취업에 필요한 자격 준비 등

※ ▲(주거) LH 자립준비청년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LH 유스타트 3.0 상담센터 ☎1670-2288)
▲(진로) 커리어넷 진로정보망(career.go.kr) 진로심리검사, 보호아동 특화 진로상담 창구 등 활용

▸ 보호종료 전까지 본격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도록 전반적인 발달상황, 희망 진로·주거* 등 사정한 내용에 기초하여 자립지원계획서(서식1, 2) 작성

* LH 공공임대, 일반 전·월세, 대학교 기숙사 등 희망 주거유형에 대해 미리 고민해볼 수 있도록 공공임대 지원사항(부록17) 및 전세자금 확보 방안 등 사전 안내

▸ 보호종료 이후 원가정과의 관계, 멘토 등에 관한 계획 포함

• 계획수립에 아동을 적극 참여시켜 심리적으로 보호종료를 준비하도록 격려

02.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1. 수행시기

• 15세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자립지원계획서에 기초하여 필요한 시점에 제공(보호연장, 재보호 포함)

2. 수행주체

• 자립지원전담요원

3. 내용

• 자립지원계획서에 기초하여 아동별로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연계 및 제공

▸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제공내역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기록지(서식3), 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가 아동 평가서(서식4) 작성

▸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상황, 목표 달성 등 점검하여 필요시 계획 재수립 또는 서비스 내용 및 방법 등 수정

• 자립지원 계획, 욕구·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를 제공하며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지양

• 감정 다루기,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 및 방법 교육 등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심리상담 서비스 및 정신건강의학과 이용 시 상담·진료내역 본인 외 제3자 확인 불가 안내
※ 심리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4. 서비스 예시(참고 1~4)

• 직접제공: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매뉴얼을 활용하여 8대 자립 영역별 교육 제공

* 매뉴얼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개별 또는 집단으로 제공, 과정평가 등 자체 모니터링 진행

• 공공연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바람개비서포터스 멘토링,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연계 등

• 기타연계: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진로 관련 교육지원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취업 박람회, 대학 탐방, 학습 캠프 연계 등

[참고1]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 개요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에게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연령·수준별로 표준화된 자립교육을 제공하도록 제작된 표준 매뉴얼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매뉴얼은 8대 프로그램 영역별 최신 정보 수록, 용어 개선, 자립 선배들의 사례, 영상교육 자료 QR 코드, 발달장애 아동과 진행 시 참고사항 등 보완하여 발간

* 전국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책자 배포하였으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

• 8대 프로그램 영역

일상생활기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리, 집 관리, 의복 관리 등 기술 습득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공기관, 여가생활, 문화시설 활용 기술 습득
자기관리기술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응급처치 방법, 성교육,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한 자기관리 기술 습득
사회적 기술	감정 다루기,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습득,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 습득
자산관리기술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 자립 후 살림살이 등 기술 습득
진로탐색기술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적성검사, 진학 및 직업탐색, 취·창업 계획 세우기, 이력서 작성 등 기술 습득
직업생활기술	직장인 되는 법, 즐겁게 일하기 등 직장생활기술 습득
사회진출기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 집 구하기, 계약, 이사 등 거주지 마련 방법 습득

• 활용방법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등 보호자 등은 매뉴얼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립교육을 제공하되, 아동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학습 자료와 프로그램 사용

▸ 정부24 민원서류 발급, 자산관리(돈쓰기 체험), 근로계약서 작성, 안전한 집 구하기(등기부등본 열람) 등 실제 체험을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운영

[참고2] 자립체험프로그램

• 개요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연장)아동을 대상으로 장·단기 자립체험프로그램과 자립체험캠프를 진행하여 실제적 자립생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역량 강화

• 대상: 15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연장)아동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프로그램 내용

▸ 체험기간: 체험 기간 내에 조정하여 운영 가능

▸ 체험장소: 내·외부 자립체험 공간 등

▸ 지원금액: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 가능

구분		단기자립체험 P/G	장기자립체험 P/G	자립체험캠프
체험기간		1박 2일 ~ 6박 7일	1개월 ~ 3개월	1박 2일 이상(권장)
체험장소		· 외부: 시설 외 외부 체험공간(예. 희망디딤돌, 자립체험관) · 내부: 시설 내부 독립된 1인실이 확보된 공간		희망 국내 지역 및 공간
지원금액	**체험비**	1일 3만원 내	1개월 40만원 내	-
	운영비*	1일 2만원 내	1개월 10만원 내	40만원 내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가능(물품구입비. 평가회 등)
- 내부체험: 내부 체험시설에서 운영비 소진(예. 아동양육시설)
- 외부체험: 외부 체험시설에서 운영비 소진(예. 희망디딤돌, 자립체험관)

※ 프로그램 세부 내용,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안내

[참고3] 비람개비서포터스

• 개요: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자조모임으로, 보호종료를 앞둔 후배들의 자립 준비를 위한 긍정적인 멘토 역할 수행

• 대상: 2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주요활동

구분	내용
역량강화교육	·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역량 강화교육, 자립교육·자립멘토링 사전교육
전문가멘토링	· (자립준비청년 대상) 분야별 전문가와 자립준비청년을 연계하여 특강, 소규모 및 1:1 멘토링 진행
자립교육	· (보호대상아동·보호자 대상) 자립선배의 사례(자립경험) 공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자립경험, 노하우, 정보 등 교육
자립멘토링	· (보호대상아동 대상) 소규모 멘토링을 통한 유대감 형성 및 심리·정서적 지원, 자립경험, 노하우, 정보 등 공유
자조모임	· (자립준비청년 간) 심리·정서적 지지, 정책 제안 등을 위한 자발적 교류 활동

• 참여 혜택

▸ 신규 바람개비서포터스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위촉장 수여

▸ 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 교통비 등 지원

• 참여 방법: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문의(부록18)

[참고4]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 목적: 자립을 직전에 둔 보호연장아동 대상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립 동기부여 및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주요 활동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체험형 프로그램(중앙주도형)
  - 자립지원전담기관: 강의형 프로그램, 체험형 프로그램(기관주도형, 자기주도형), 네트워크형 프로그램

구분	내용	
강의형 프로그램	·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영역별 자립생활 지식, 취업 기술 등 전문적 자립 교육 제공 · 영역별 전문 강사 섭외, 온라인 실시간 교육 등 비대면 교육 가능	
체험형 프로그램	· 자립지원전담인력과 유대감 형성, 체험을 통한 자립 경험 확대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8대 영역 중 선택하여 기관 또는 참가자가 기획 및 운영	
	중앙주도형	· 보호연장아동 자립캠프를 통해 자립 동기부여 및 실효성 있는 자립 목표 수립 지원 · 전국 보호연장아동 대상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건강한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권역별 캠프 진행(3회 이상)
	기관주도형	·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전 욕구 조사 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자기주도형	· 참여 희망 아동이 직접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자립지원전담기관 검토, 승인 필요) * 개인 또는 그룹(동일 시설 보호연장아동 2인 이상 등) 가능, 자립 여행 시 국내만 지원
네트워크형 프로그램	· 조사 참여: 지역 내 보호연장아동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참여자 홍보: 모집 및 사업 홍보를 위한 각종 홍보물 배포 등 · 지역사회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관련 기관 간담회, 협약 추진	

- 참여 혜택: 프로그램 참여자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 참여 방법: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문의(부록18)
  ※ 주소지 관계없이 타 지역 프로그램 참여 가능

[참고 5] 보호 환경별 자립지원 프로그램 진행 방법

- 개요
  - 보호 중인 15세 이상 아동별 자립지원 계획수립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 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적극 제공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내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직접 제공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역사회 자원 활용하여 외부 서비스(프로그램) 연계

  - 보호종료 전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결과 최종 점검
    -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도 점검을 통해 일상생활 기술, 자기관리기술, 진로·주거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추가 제공
    - 자립정보북, 자립정보ON 등 자립콘텐츠를 활용하여 아동에게 최신 정보 지속 제공

- 모형 1: 가정위탁(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에 대한 위탁부모 교육 및 자조모임 형성 지원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의 8대 영역을 바탕으로 자립 교육, 자립캠프 등 실시
· 보호아동뿐 아니라 필요 시 위탁부모 대상 자립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구성

  - 개별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므로 기본적으로 위탁부모 자립지원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가 아동을 지도하도록 안내
  - 진로 교육, 금융·경제 교육 등 위탁부모가 교육하기 어려운 영역은 아동과 위탁부모를 초청하거나 별도 공간에서 자립캠프를 운영하여 프로그램 제공
  - 아동 대비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부족하므로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 기획·제공

구분	프로그램 영역	대상	시기(방법)
위탁부모 교육 (자조모임)	전 영역 * 자립기술평가, 자립지원계획서도 같이 설명	위탁부모	월 1회 모임
자립 및 진로준비캠프	자기관리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15세~17세	당일 교육, 1박 2일, 2박 3일(방학 기간)
위탁보호 종료 전 자립캠프	진로탐색기술, 직업생활기술, 사회진출기술	18세 ~ 보호종료 전	

- 모형 2: 공동생활가정

· 소규모 시설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개별 아동의 자립생활 일상화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자체 운영 및 자립캠프 등 외부 자원 적극 활용
· 진학지도는 전문적인 진학 컨설턴트 등 연계 필요

  - 소규모 시설이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등 자립기술을 일상에서 습득하도록 지도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으므로 보육사가 센터장의 슈퍼비전을 받으며 자립지도 및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자립캠프, 진학 컨설턴트 등 외부 자원 적극 연계·활용

구분	프로그램 영역	대상	시기(방법)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	일상생활기술, 자기관리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사회적 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업생활기술	15세~17세	매월 상시 (예. 월별 1개 영역 진행)
자립캠프, 진학 컨설턴트 등	진로탐색기술, 직업생활기술, 사회진출기술	15세 ~ 보호종료 전	당일 교육, 1박 2일, 2박 3일(방학 기간)

▸ 자립기술평가 지표를 활용한 자립 교육
- 자립기술평가의 6가지 영역별 문항에 대해 아동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 후 과제 내용과 점수 기록*

  * 서비스 제공 기록지(서식3) 및 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가 아동 평가서(서식4) 활용

- 수행 과제 달성도에 따라 4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기술 습득의 효과성 의미

• 모형 3: 아동양육시설

·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자체 운영 및 자립캠프 등 외부 자원 적극 활용
· 시설 내 1인실 또는 외부 자립생활관 등을 활용하여 자립체험프로그램 참여
· 진학지도는 전문적인 진학 컨설턴트 등 연계 필요

▸ 자립지원전담요원: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매뉴얼을 참고하여 8대 영역별 자립 교육 진행, 생활지도원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프로그램 진행

▸ 아동: 독립된 주거 공간에서 자립 체험이 필수적이므로 1인실 또는 자립생활관 등을 활용해 자립지원전담기관 장·단기 자립체험프로그램 참여

▸ 지역별 자립캠프, 진학 컨설턴트 등 외부 자원 적극 연계·활용

구분	프로그램 영역	대상	시기(방법)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	일상생활기술, 자기관리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사회적 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업생활기술	15세~17세	매월 상시 (예. 월별 1개 영역 진행)
자립체험 프로그램	일상생활기술, 자기관리기술, 지역사회 자원활용기술, 사회적 기술, 자산관리기술, 사회진출기술	15세 ~ 보호종료 전	단기(3박 4일) 또는 장기(1개월)
자립캠프, 진학 컨설턴트 등	진로탐색기술, 직업생활기술, 사회진출기술	15세 ~ 보호종료 전	당일 교육, 1박 2일, 2박 3일(방학 기간)

03. 자립준비도 점검

1. 수행시기

• 보호종료예정일* 3개월 전

* ▲(연령도래) 18세 도래일 ▲(보호연장, 재보호) 사전협의된 보호종료예정일

2. 수행주체

• 자립지원전담요원

3. 내용

• 보호종료 후 실제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지 자립준비도 점검척도(부록4), 자립지원계획서(서식1), 면담 등을 통해 전반적인 자립 준비 정도 구체적으로 확인

• 아동과 면담, 내부 사례회의, 자문회의를 통해 보호종료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보호종료 또는 보호연장 여부 결정(아동이 보호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연장)

* 보호종료 전 3개월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계획수립 등 자립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

보호종료 결정	· 자립지원전담요원: 관할 시·군·구에 보호종료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보호종료(퇴소)신청서(서식7) 제출 * 중도에 보호연장에서 보호종료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즉시 제출 · 아동보호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호종료 신청명단* 안내 * 성명, 연령, 위탁 또는 입소일, 보호종료예정일, 시설정보(시설명, 연락처, 주소) · 자립지원전담인력: 사후관리 담당 자립지원전담인력 지정
보호연장 결정	· 자립지원전담요원: 관할 시·군·구에 보호기간 연장승인신청서(서식12) 제출 * 보호연장 중에도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의 생활수칙 준수하도록 안내

• 진학·취업을 희망하나, 학교·취업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아동 의사에 따라 보호연장하거나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해당 분야 집중지원 의뢰

• 보호종료 전까지(보호연장, 재보호 기간 포함) 진학·취업·주거·심리 등 자립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교육 등에 참여시키고 자립정보 지속 제공

참고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자립정보 안내 채널

국가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자립정보ON (www.jaripon.or.kr)	카카오채널 아동자립지원	카카오채널 아동자립지원 종사자

* 자립정보북: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04. 보호연장아동 지원

1. 수행시기

• 18세 이후 보호연장 기간

2. 수행주체

• 자립지원전담요원

3. 내용

• 자립지원 계획수립,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지원, 자립준비도 점검

• 보호연장아동 대상 주요 지원 안내
  ▸ 취업·진학 등 사유로 시설·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해도 생활·정서 지원, 자립지원 서비스·정보 등 제공 필수

보호연장아동 대상 주요 지원

· 생계급여
  – 보호연장 및 보호종료 후 5년간 소득조사 시 사업·근로소득 공제(60만원 + 나머지 소득의 30% 공제)
  – 개별급여('23.1월~): 시설 밖 거주 시 자립생활 경험이 가능하도록 본인 계좌에 일반 생계급여 직접 지급(부록25)

· 공공임대: LH 건설·전세·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및 임대료 감면

·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바람개비서포터스

· 기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제외 및 2유형 우선선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무이자 지원 등

• 필요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 연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의뢰(서식20)
    – 시설·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며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거나 심리정서 고위험군일 때 등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종합 심리검사: 심리정서 지원 필요 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종합 심리검사비 지원 활용(1인당 1회 50만원 내)
    – 보호종료 전부터 정확한 진단 및 조기 개입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결과에 따라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우선 선정 검토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 3개월 이내 보호종료예정아동 지원 가능
  ▸ 바람개비서포터스, 보호연장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등

05. 보호종료 점검

1. 수행시기

• 보호종료예정일* 1개월 전

* ▲(연령도래) 18세 도래일 ▲(보호연장, 재보호) 사전협의된 보호종료예정일

2. 수행주체

• 자립지원전담요원

3. 내용

· 보호종료 절차와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심리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보호종료 2~3개월 전
  ▸ 자립지원전담요원: 보호종료(퇴소)신청서 제출 직후 보호종료점검회의 개최
    – 자립지원전담인력 및 아동 대상 보호종료점검회의 참석 안내
    –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아동의 상황·특성을 숙지하고 참여하도록 보호종료 직전 작성한 자립지원계획서(서식1, 2), 보호종료카드(서식5)* 사전 공유

      * 연락처, 보호종료 사유, 학력, 경제 상황, 주거 형태, 취업·진학 상황, 생활비, 조달방안, 지지체계 등 점검(보호종료점검회의 전까지 서면 작성, 사례결정위원회 후 보호종료 결정 시 시스템에 입력)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위탁부모가 보호종료신청서를 제출한 때도 제출 여부를 파악하여 제출 직후 보호종료점검회의 개최
  ▸ 아동보호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호종료 신청명단* 안내(공문 권고)

    * 성명, 연령, 위탁 또는 입소일, 보호종료예정일, 시설정보(시설명, 연락처, 주소)
  ▸ 자립지원전담인력: 보호종료예정자별 사후관리 담당자 지정

• 보호종료 1개월 전
  ▸ 자립지원전담요원: 보호종료점검회의 개최(서식6)
    – 참석: 아동, 자립지원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인력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외 별도 공간도 가능)에서 대면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화상회의로 대체 가능(단, 사유 기재 필수)력
    – 아동 특성, 주거·진학·취업 등 자립준비 상태, 자립지원 필요항목 등 공유 및 회의록 작성(서식6)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신청 및 계획 지원, 디딤씨앗통장 수령 안내(참고1~3)
    – <u>취업 등 아동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소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해당 사실을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공유하고 퇴소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보호종료점검회의 개최</u>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자립지원전담인력
- 자립준비 상황 및 자립지원 필요항목 등 점검, 라포 형성,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안내
- 사후관리계획서(서식15) 작성 및 사후관리동의서(서식16) 확보

서식	내용
사후관리계획서	· 사후관리 연락 방법 및 일정·주기 결정, 생활·주거, 학업·취업, 건강, 가족·대인관계 등 주요 사후관리 내용 등 계획수립
사후관리동의서	· 사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보 * 본인 서명 필요, 대면 회의 시 당일 확보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시 회의 후 7일 내 원본 확보

- 보호종료 후 거주지 이전 확정 시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소재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참석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대상자 이관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우선 선정 필요성 검토: 보호종료 직후부터 초기상담, 욕구조사 등 실시
  *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주거지 확보 상태, 전반적인 자립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집중 사후관리 필요 시 사후관리 주기 단축 또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우선 선정되도록 사후관리계획서 작성
  *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 종합 심리검사비 지원을 활용하여 보호종료 전부터 정확한 진단 및 조기 개입이 가능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우선 선정 검토
- 주거·진학·취업 등 자립준비 상태를 확인하여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공공·민간 자원 연계

• 보호종료 3주 전

▸ 자립지원전담인력: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에 사후관리계획서(서식15), 사후관리동의서(서식16) 제출

▸ 아동보호전담요원: 사후관리계획서·동의서 확보 확인 후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심의 결과 최종 보호종료된 직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호종료 명단 통보
- 아동의 보호종료 신청 의사 중도 철회, 종결 심의되지 않은 경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통보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종료 심의 전 아동 의사 변경 시 자립지원전담요원 업무

· 보호종료 → 보호연장: 즉시 관할 시·군·구에 보호기간 연장승인신청서(서식12) 제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변경사항 안내

· 보호연장 → 보호종료: 즉시 관할 시·군·구에 보호종료(퇴소)신청서(서식7) 제출, 빠른 시일 내 보호종료점검회의 개최*

* 자립지원전담인력: 보호종료점검회의 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서·동의서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보호종료 5년 내 사후관리 거부 시
-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사후관리 종료(해지) 보고(서식21, 22)
- 시·군·구 자립업무 담당자는 5년간 자립수당·정착금 지급 현황 지속 관리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연 1회 연락 시도 및 아동 상황점검(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모니터링 제외)

조기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계획수립 회의

· 아동보호전담요원: 18세 도래 1개월 전까지 사후관리 계획수립·동의를 위한 회의 개최
- 참석: 아동, 아동보호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인력
-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지원 대상자 연계 의뢰 공문 및 과거 실시한 사후관리점검표(타법시설입소) 송부

· 자립지원전담기관: 회의를 통해 사후관리계획서 및 사후관리동의서 확보 후 시·군·구 공유

* 원가정 복귀 사유로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사후관리 대상자가 된 경우에만 해당

[참고1] 자립수당

•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 산정에 미포함)

구분	내용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18세 이후 만기 및 연장 보호종료 또는 재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자립수당 지원 중인 자가 재보호조치 시 지급 중지(재보호조치 종료 시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재개)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18세 이전 원가정 복귀로 종결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급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서류 제출 ※ 보호종료예정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단,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리 신청) ② 우편 및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 해외 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 입영 사실 확인서), 질병(병원 입원 확인서) 등 ③ 온라인신청: 보호종료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보호종료자 대상 사이버교육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 재무상담 확인서 1부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 온라인교육 – 기관별 맞춤형 교육 – 아동자립교육 – (필수)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 아동교육 – 보호종료(예정)아동 온라인 자립교육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전국 4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여 종합 재무설계 전문 상담, 교육(온라인, 유선 가능) 및 확인서 발급 가능(부록24)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종합 재무상담 확인서만 첨부 ② 추가 제출 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급 계좌번호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통장사본 추가 첨부 필요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자립준비청년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시스템상 보호종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확인서' * 행복e음에서 발급(아동보호서비스 데이터 활용, '20. 10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20. 10월 이전 보호종료된 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개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참고2] 자립정착금

구분	내용
대상	▪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지원 제외: ① 자립정착금 수령자가 재보호조치된 경우 재지급 금지 ② 18세 이전 원가정 복귀로 종결한 경우(다만, 지자체 판단하에 지급 가능)
신청방법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이후 지급)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된 자의 경우 18세가 된 때부터 신청 가능 - 지자체 판단하에 18세 이전(보호종료 직후 포함)부터 신청 및 지급 가능 ※ 시·군·구는 관할 지자체 내 거주하는 조기보호종료 아동이 18세가 된 때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적극 안내 ※ 관계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보호종료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지급절차	▪ 보호종료된 당해 연도에 시설 등 관할 지자체에서 행복e음을 통해 지급 원칙 -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 이내 지급 -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 지급이 안 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설 관할 지자체에서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 ①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자가 18세에 신청할 경우 18세가 된 때의 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② 재보호조치된 경우, 재보호종료된 때의 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재지급 금지, 신청 당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지급) ※ 지자체에서 행복e음으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교육*·자립컨설팅 또는 국민연금공단 희망 출발 재무상담**과 연계하여 분할 지급 - 1차 지급: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제출 및 금융·주거 등 자립교육 또는 재무상담 이수 조건 - 2차 지급: 1차 자립정착금 사용내역 및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컨설팅 이수 조건 * 시설 소재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신청·이수(단, 당해년도 거주지 변경 시 해당 시도에서 인정하는 교육 수강 대체 가능) ** 전국 40개 지사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계하여 희망출발 재무상담 후 확인서 발급 가능(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40개 지사에서 상담 가능(부록24)) ※ 단,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일시에 기준금액 전체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에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
사후관리	▪ 보호종료 전: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과 함께 자립정착금을 신청하면서 자립에 꼭 필요한 지출을 하기 위해 사용 용도, 금액, 기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자립정착금 신청 안내 등 사전교육 실시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아동·위탁부모가 직접 신청하더라도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자립정착금 신청 절차 등 안내 및 사용계획서(신청서) 작성 지원 필요 ▪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정착금 적정 사용 여부 등 자립생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자립정착금 미신청자 대상 신청 안내 - 시설 등 관할 지자체 자립정착금 담당자는 보호종료명단을 확보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자립정착금 지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미신청자 대상 신청 안내 등 적극 조치 ▪ 보호유형별·지역별 자립정착금 지급 현황 및 지급 계획 보고
지급기준 (단위: 만원)	서울 2,000, 부산 1,500, 대구 1,000, 인천 1,000, 광주 1,000, 대전 1,500, 울산 1,000, 세종 1,000 경기 1,500, 강원 1,000, 충북 1,000, 충남 1,000, 전북 1,000, 전남 1,000, 경북 1,000, 경남 1,500, 제주 1,500

참고3 | 디딤씨앗통장

-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2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준비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아동</td><td>■ 보호대상아동: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아동 중 신규 선정
■ 차상위계층 아동: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정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기가입 아동 중 가정 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해당 가정의 탈수급 이후에도 계속 지원</td></tr>
<tr><td>지원기간</td><td>■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 정부(지자체) 매칭은 18세 미만까지 지원</td></tr>
<tr><td>지원내용</td><td>■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본인 명의 디딤씨앗통장에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 추가적립액: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경우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추가적립액은 국가 매칭 없음)</td></tr>
<tr><td>만기지급
및
조기인출</td><td>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rowspan="2">요건</th><th colspan="2">지급 구분</th><th rowspan="2">비고</th></tr>
<tr><th>아동 적립금</th><th>정부 매칭금</th></tr>
<tr><td rowspan="2">만기
지급</td><td>만기 해지</td><td>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td><td>O</td><td>O</td><td>24세 이후 적립금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전액 인출 가능</td></tr>
<tr><td>만기 후
적립
예금인출</td><td>일부 금액만
사용 용도 충족</td><td>O</td><td>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td><td>아동 적립금 한도 내 조기 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td></tr>
<tr><td colspan="2">조기 인출</td><td>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td><td>O</td><td>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td><td>아동 적립금 한도 내 2회까지 가능</td></tr>
<tr><td colspan="2">중도 해지(환수)</td><td>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td><td>O</td><td>X</td><td>아동 적립금 지급, 정부 매칭금 환수</td></tr>
</table>
■ 적립금 사용 용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 의료, 결혼 등</td></tr>
<tr><td>문의</td><td>■ 국가아동권리보장원(www.ncrc.or.kr, ☏1670-1834)
■ 개별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td></tr>
</table>

Part

04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서비스 (자립지원전담기관)

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개요

2.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절차

3.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개요

4.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절차

0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개요

사후관리 시 유의사항

· 자립수준평가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종료 후 순조롭게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호종료 전에 수립된 사후관리계획서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 모니터링 중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및 정보 제공 등을 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에 기록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후 모니터링

· 보호종료 후 10개 영역* 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로 연계

* 경제, 돌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거, 일자리, 보육 및 교육, 관계, 안전, 법률 및 권익보장

1. 목적

-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담당자가 대상자별 수립된 사후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정기 사후관리(자립수준평가) 수행
  - ▸ 정기 사후관리 시점 외 갑작스러운 욕구나 어려운 상황 발생으로 유선 상담, 기관 방문 등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시 지원

- 자립수준, 생활상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정보·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지원
  - ▸ 경계선지능, 질병·장애, 심리정서적 어려움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사전 발굴하여 보호종료 직후 집중 사후관리 또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2.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 ▸ 18세 연령 도래 또는 연장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3호)
    - – 재보호조치 된 경우, 재보호조치 기간 사후관리는 일시중지되며, 재보호조치 종료* 후 잔여기간 지원

      * '24. 8. 7. 이후 재보호조치 종료된 자부터 적용
  - ▸ 15세 이상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되었으나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 타법상 시설 입소, 조기 취업·진학 사유로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 도래 후 5년간 사후관리

      ('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원가정 복귀 사유로 조기 보호종료되었으나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대상 기준과 별개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사후관리 대상자 확대(2024. 2. 이후 보호종료된 자부터 적용)

· 아동복지시설 유형

(기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자가 사후관리 대상

(확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자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5세 이후 조기 보호종료

(기존) 18세 보호종료자 또는 연장 보호종료자가 사후관리 대상

(확대) 아동복지법 외 타법상 시설 입소, 조기 취업·진학 사유 보호종료자인 경우, 또는 원가정복귀 사유로 조기 보호종료됐으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후관리 대상으로 포함된 경우 18세 도래시점부터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

3. 수행주체

- 자립준비청년 주소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전담인력
  - ▸ 시·군·구에서 타 시·도 전출·전입 명단을 공유받거나 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이전 통보한 경우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사전 공유하고 이관(참고4)
    - – 보호종료 직후 주소 변경 시 보호종료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보호종료점검회의 참석,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후관리동의서 확보 후 이관
    - – 재등록 대상자(본인 거부 종료 후 재등록)는 재등록 당시 주소지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사후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이관*
    -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료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 대상자 실거주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전 공유 후 이관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기간동안 이관받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수행 → 서비스 종료 후 주소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 ▸ 자립준비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 확인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과 협력

※ 사후관리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4. 수행시기

- 사후관리 기간
  -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후 보호종료 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예. ('24.2.29.) 보호종료 시 ('24. 2. 29.~'29. 2. 28.) 사후관리 실시

('25.1.1.) 보호종료 시 ('25.1.1.~'30. 1. 31.) 사후관리 실시

- – 18세 연령 도래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 – 15세 이후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18세 도래일부터 5년
- – 군입대, 재보호조치 시 사후관리 일시중지되며(참고5), 일시중지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잔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 실시

- 사후관리 주기
  - ▸ 보호종료 3개월 내 최초 1회 실시
  - ▸ 최초 실시일로부터 6개월 내 1회 추가 실시
  - ▸ 마지막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대상자별 주기에 따라) 정기 사후관리 실시
  - ▸ 정기 사후관리 시점 외에는 자립수준평가 없이 사후관리 모니터링만 진행 가능. 단, 이사 등의 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정기사후관리 추가 진행

※ 예. ('25.2.28.) 보호종료 된 경우

① 최초 사후관리: 보호종료 3개월 이내('25.2.28.~'25.5.28.) 실시

② 두 번째 사후관리: 최초 실시일이 '25.5.2.인 경우, 최소 실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25.11.2.) 실시

③ 세 번째 사후관리: 두 번째 실시일이 '25.11.1.인 경우, '26.11.1. 내 1회 이상 실시

* 이후 정기 사후관리: 마지막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실시

5. 수행방법

- 정기 사후관리는 대면 실시 권고

- 사후관리 시 자립수준평가(서식17)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서식18) 작성
  - ▸ 보호종료 전: 사후관리계획서(서식15), 사후관리동의서(서식16)
  - ▸ 보호종료 후: 연 1~2회 자립수준평가(서식17)*, 사후관리 모니터링(서식18)

    * 자립수준평가 결과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개통 시 필수 입력(개통 전까지 별도 파일로 관리)
  - ▸ 보호종료 5년 경과: 사후관리 종료(해지) 동의서(서식21), 사후관리 종료(해지) 보고서(서식22)

[참고1]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관리

- 보건복지부 기준명단
  - ▸ 보건복지부가 연 2회* 행복이음에서 시·도별**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 시·도에 전달

    * 매년 6.30., 12.31. 기준

    ** 해당 시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 시·도는 기준명단 송부 1주 내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명단 안내

PART 04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시·군·구 상시 통보명단

▸ 시·군·구는 연간 발생하는 보호종료 신청·결정 명단(재보호종료 포함), 타 시·도 전출입 명단, 재보호조치 결정 명단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상시 통보(공문 권고)*

* ①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서 보호종료(퇴소)신청서 제출한 직후 보호종료 신청 명단, ② 사례결정위원회 종결 심의 직후 최종 보호종료 결정 명단, ③ 해당 시·군·구 거주 사후관리 대상자 타 시·도 전출입 명단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대상 기준과 별개로 보호 이력이 있는 자는 사후관리 대상자로 관리

▸ 시·도는 사후관리 계획수립 인원에 누락이 없도록 시·군·구 보호종료 신청명단, 보호결정(변경, 종료) 통지서 등 상시 통보 상황 관리 감독 철저

•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기준명단에 시·군·구 상시 통보명단을 반영하여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관리

구분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자립지원전담기관
기준 명단	연 2회 주소지 기준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 시·도에 발송	➡	1주 내 복지부 제공 명단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발송	➡	-	➡	기준명단에 상시 통보명단을 반영하여 관리 ■보호종료 신청명단: 보호종료점검회의 참석, 사후관리 동의서 확보 및 계획 수립 ■보호종료 결정명단: 사후관리 ■전출입 명단: 전담기관 간 이관 ■재보호조치 결정 명단: 사후관리 일시중지
상시 통보 명단	-		-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아래 명단 상시 통보 ■보호종료 신청명단 (재보호종료 포함) ■사례결정위원회 종결 심의 직후 최종 보호종료 결정 명단(재보호종료 포함) ■사후관리 대상자 중 타 시·도 전출입 명단 ■재보호조치 결정 명단	➡	
사후 관리	-		-		사후관리 현황을 참고하여 사후관리 점검표 작성	⬅	대상자별 사후관리 현황 시·군·구에 전달

[참고2] 재보호조치

• 대상: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퇴소한 아동 중 25세에 달하기 전 아동*

▸ 25세가 되는 날까지 연장 가능하며 대학재학·진학 준비, 직업교육·훈련 등은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 가능

* 원가정 복귀, 타법상 시설 입소, 조기 진학 및 취업 등에 따른 조기보호종료 시에도 재보호조치 신청 가능

• 기준

구분	기준
대학진학·준비	대학재학증명서, 대학 진학 관련 교육기관 재원 증명서
직업교육·훈련	직업관련 교육·훈련 증빙서류
장애·질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심리·주거·경제적 어려움	증빙서류 없이 상담내역으로 심사 가능
지적 능력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지적 능력(지능지수 71 이상 84 이하)

• 절차

신청*		접수·상담		재보호 계획수립		재보호 결정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주소지 시·군·구에 재보호조치 신청서(서식13) 제출	➡	시·군·구에서 접수 즉시 접수상담**, 욕구조사를 위한 방문상담 실시	➡	접수상담, 사후관리 상담내역 등을 근거로 사례회의를 통해 보호계획 수립	➡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재보호조치 결정 후 7일 이내 보호조치 결정통지서 송부

* 신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친족,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대리 제출 가능

** 대면·방문을 통한 상담을 진행하여 신청자 환경분석

• 자립지원전담기관 역할

▸ 시·군·구가 사후관리 대상자 재보호조치 의견서(서식14), 자립수준평가서(서식17) 요청 시 공문 회신

▸ 재보호조치 기간동안 사후관리는 중지되며, 재보호조치 종료 이후 잔여기간 사후관리 재개

- 사후관리 미동의자가 재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희망 시 최초 보호종료일부터 5년간 사후관리(재보호기간 제외)

▸ 재보호 종료 대상자 명단은 재보호조치 시 사후관리를 담당한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관리

▸ 재보호조치 신청자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에서 당사자 동의하에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 상황에 따라 선정 및 제공 가능

- 재보호조치 대상자는 보호연장아동으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신청
- 사후관리 대상자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경우, 재보호조치 결정 시 사후관리가 일시중지되므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도 종료되며, 보호연장아동으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신규 선정 필요

* 기존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종결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필요 시 보호연장아동으로 재신청

• 기타

▸ 자립생활관(자립지원시설),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소 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자립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안내

▸ 시·군·구는 연간 발생하는 재보호조치 결정 및 재보호종료 명단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상시 통보(공문 권고)

- 재보호조치 기간동안 자립수당, 의료비 지원은 중지되며 종료 후 잔여기간 지원 재개
- 재보호조치 신청자가 심리, 경제, 주거 분야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시설, 위탁가정 우선 보호 후 신청을 통해 재보호조치 대상 선정 가능
  * 재보호조치 신청자 요청 시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동의한 경우,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경우

[참고] 재보호조치 대상자의 보호유형 결정 시 고려사항

· 자립역량을 높이도록 자립지원시설 입소를 우선 검토하고 입소가 곤란한 경우 1인실 등 독립된 생활공간을 갖춘 위탁가정·시설·기관 입소 검토

· 가능한 보호유형은 가정위탁(3호), 아동복지시설(4호), 전문치료기관·요양소(5호)이며 기존에 보호종료된 위탁가정·시설·기관이 아니더라도 보호 가능

· 대상자 상황(희망 지역 및 보호유형, 재보호 사유 등)과 가능한 보호유형 현황(입소 현원, 독립생활공간 구비 여부, 보호 중인 아동 연령대·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참고3] 사후관리 일시중지(자립지원통합서비스 포함)

- 군 복무 대상자
  - 일시중지 대상
    -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출퇴근으로 의무이행하는 경우 제외
    - 군 복무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 시 일시중지 불가)
  - 일시중지 기간
    - 군 복무 시작일부터 사후관리를 일시중지하며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잔여기간 사후관리 재개
    - 사후관리 기간 중*, 입대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복무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 일시중지** 처리 가능
      * 사후관리 종료일 이후에는 사후관리 기간 연장 불가
      ** 군복무 기간 사후관리(자립수준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대상자가 원하지 않으면 복무기간을 사후관리 기간에 포함하여 사후관리 기간 도래 시 종료 (사전 협의 필수)

- 재보호조치 대상자(「아동복지법」제16조제4호)
  - 일시중지 기간
    - 재보호조치일부터 사후관리를 일시중지하며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잔여기간 사후관리 재개

구분	보호종료일	사후관리 시작	군입대 또는 재보호	사후관리 일시중지	사후관리 재개	사후관리 종료
일자	'26. 1. 14.	'26. 1. 14. ('31. 1. 31. 종료 예정)	'26. 5. 15. ~ '27. 11. 14. (549일 일시중지)	'26. 5. 15.	'27. 11. 15.	'32. 7. 31.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사후관리 일시중지는 일시중지된 일수를 기준으로 함(예. 180일 일시중지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80일 후인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사후관리 제공)

- 시·군·구에서 당사자 동의하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요청 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상황에 따라 제공
  * 기존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는 종결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필요 시 보호연장아동으로 재신청

[참고4] 연락두절 대상자 관리

- 연락두절 유형
  - 연락 회피: 연락처 확보되어 주변 체계를 통해 생활상태 확인되나, 직접적인 사후관리가 불가한 경우
  - 연락 불가: 연락처 확보되었으나 생활상태 확인 불가한 경우(주변 체계 포함)
  - 연락처 미확보: 연락처가 확보되지 않아 사후관리 진행 불가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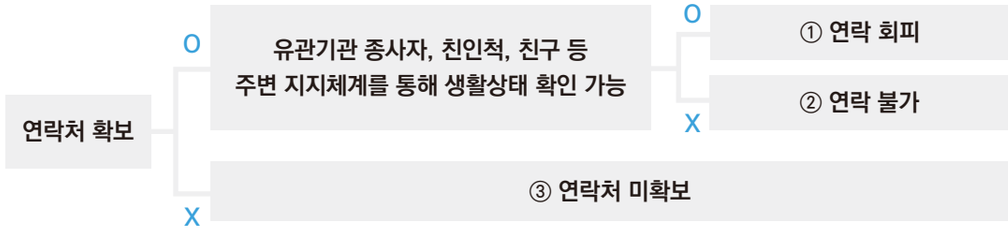

- 연락두절 대상자 관리 과정
  - 연락두절 의심
    - 명단 확보 후 최초 연락 실패 또는 연락처 미확보 시점*부터 2개월마다 대상자, 주변 체계에 최소 2회 연락
      * 예. 보호종료일(사후관리 명단 확보 후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연락처 부재 확인일(사후관리 도중 연락처 변경으로 기존 확보된 연락처가 사라진 경우)
    - 자립수준평가(미실시 – 기타) 비고란에 연락 노력 내용* 작성
      * ▲(연락 회피) 연락 시도 노력, 연락 회피 사유, 주변 체계를 통해 파악한 내용 ▲(연락 불가) 연락 시도 노력 ▲(연락처 미확보) 연락처 확보 노력
      ※ 주변 체계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안내 요청
  - 연락두절 구분
    - 연락두절 의심에 따라 6개월간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응답 시 연락두절 대상자로 관리 (서식19)
  - 연락두절 사후관리
    - 연락두절 구분일로부터 연락 응답 또는 연락처 확보 시까지 최소 3개월마다 꾸준히 연락 노력
    - 자립수준평가(미실시 – 연락두절) 비고란에 연락 노력 내용 기록
    - 사후관리 종료일 도래 전 연락 응답 또는 연락처 확보 시 잔여기간 사후관리 진행
      * 당해연도 연락두절자로 분류되어 자립수준평가(미실시)를 작성한 경우에도 연락 응답 또는 연락처 확보 시 자립수준평가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 작성 필수

자립수준평가 비고란 필수 기록사항

· 연락두절 구분일, 연락시도 일시, 연락 담당자, 연락 대상*, 연락 방식**, 연락 횟수, 회신 여부(Y-N)

* 구분: 본인, 친·인척, 친구,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 구분: 전화, 문자, 이메일, SNS(인스타그램 DM 등), 등기우편, 대면(방문, 내방, 기타), 기타

연락방식

· 전화: 통화연결음이 '착신 정지'인 경우 통신비 체납에 따른 수·발신 정지일 수 있으므로 우편, 가정방문을 병행하고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례관리비(통신비) 지원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기간 중 1회에 한해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제외한 기본요금에 대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3개월간 통신비 지원 불가하며 통신비 체납 사유 명확히 기재

· 대면(방문):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협력하여 가정방문 권고

▸ 연락두절 중 사후관리 종료일 도래

- 사후관리 종료(해지) 동의서, 사후관리 종료(해지) 보고서 내 '연락두절 중 기간만료'로 구분
- 연락 노력(자립수준평가 비고란)* 일자순 작성 후 기관장 서명으로 갈음하여 종료

* ▲(연락 회피) 연락 시도 노력, 연락 회피 사유, 주변 체계를 통해 파악한 내용 ▲(연락 불가) 연락 시도 노력 ▲(연락처 미확보) 연락처 확보 노력

• 연락두절 대상자 업무 과정

구분	기간	업무	작성서식	작성방법
연락두절 의심	6개월간	연락노력 (최소 2개월마다)	▪자립수준평가 (미실시 – 기타)	▪비고: 연락시도 일시, 연락 담당자, 연락 대상, 연락 방식, 연락 횟수, 회신 여부
연락두절 구분	연락두절 의심 후 6개월이 되는 날	연락두절 명단에 포함	▪연락두절 대상자 관리 명단	▪연락두절 유형, 연락두절 구분일, 대상자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보호종료일, 대상자 사후관리 기간
연락두절 사후관리	연락두절 구분일 ~ 연락시까지	연락노력 (최소 3개월마다)	▪자립수준평가 (미실시 – 연락두절)	▪비고: 연락두절 구분일, 연락시도 일시, 연락 담당자, 연락 대상, 연락 방식, 연락 횟수, 회신 여부
사후관리 종료	보호종료 후 5년 도래일	사후관리 종료	▪사후관리 종료 (해지) 보고서	▪종료유형: 연락두절 중 기간만료 – 사유 ▪사후관리 평가: 연락두절 구분일, 연락시도 일시, 연락 담당자, 연락 대상, 연락 방식, 연락 횟수, 회신 여부

예시

구분	예시 1	예시 2
사후관리 시작일	'25. 7.	'22. 7.
연락두절 의심	'25. 7.	'25. 7.
연락 노력	'25. 9., '25. 11., '26. 1.	'25. 9., '25. 11., '26. 1.
연락두절 구분일	'26. 1.	'26. 1.
연락두절 관리	해당 시점부터 3개월마다 연락	해당 시점부터 3개월마다 연락
사후관리 종료일	'30. 7.	'27. 7.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참고5] 대상자 이관

변경 전 기관		변경 전 기관		변경 전 기관		변경 후 기관
대상자가 이관될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결되도록 대상자,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이관 안내	→	이관 협조 요청공문 발송 * 의뢰기관의 사후관리 종료일=접수기관의 사후관리 시작일=의뢰일	→	예정된 이관일(사후관리 종료일)에 맞춰 사후관리 종료(시스템 이관)	→	이관일로부터 1개월 내 라포형성, 생활상태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자립수준평가, 모니터링) 실시

• 이관

▸ 대상자 주소 변경(예정) 시 해당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이관

- 대상자가 주소 변경을 알린 경우 외 시·군·구를 통한 전출입 확인 시에도 반드시 대상자에게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인력 변경 사전 고지 후 이관

▸ 보호종료 직후 주소 변경 시 보호종료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보호종료점검회의 참석,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후관리동의서 확보 후 이관

▸ 시·도 간 전출입에 따른 이관과 별개로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이관 필수

* 이관 공문 발송 후 시스템 이관 처리

▸ 이관 서류

- 공통: 사후관리계획서(서식15), 사후관리동의서(서식16)*, 자립수준평가(서식17),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서식18), 서비스 신청·변경 의뢰서(서식20)

* 자립지원전담기관 개소 전 이관 체계 불분명 등으로 사후관리동의서가 없는 경우 보호종료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재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확보하되, 미확보 시 이관받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확보

** 자립수준평가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는 대상자의 사후관리 기간 실시한 모든 내역 공유 권고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초기상담지(서식26), 서비스 제공 계획표(서식32), 사례관리비 지출 내역서(서식36), 서비스 제공 점검표(서식38)

※ 자립지원전담기관 위치, 대표번호, 담당 자립지원전담인력 등 소개

• 사후관리 대상자

▸ 대상자별 시기에 맞춰 사후관리 실시

- 연내 사후관리 실시 대상자는 이전 사후관리 내역을 참고하여 사후관리 진행

▸ 거주지만 변경할 경우 이관없이 주소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진행

▸ 보호종료 후 거주지 이전 확정 시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소재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보호종료점검회의 참석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대상자 이관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보호연장아동, 재보호조치 대상자 포함)
  -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 변경이 아니어도 실거주지를 고려하여 거주지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이관 가능
  - 지원의 연속성을 위해 이관받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정해진 기간까지 사후관리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가능*
    * 예. 사후관리 계획수립 중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결정된 상태에서 보호종료 후 거주지 이전 확정 시 보호종료점검회의에 참여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후 이관
    - 절차상 이관받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이관 후 초기상담, 욕구사정 필요
  -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사후관리 대상자 중 자립지원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이관받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필요성 검토하여 선정 후 사후관리,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이관
  - 이관서류를 참고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지원
    - 이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잔여 한도 내에서 지원
    - 필요 시 욕구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현재 상황에 맞게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가능
    - 대상자 정보공유 등 필요 시 이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협조 요청
  - 시설·위탁가정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서비스 신청·변경 의뢰서(서식20) 제출
    - 제출받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초기상담 및 접수, 욕구사정 후 선정 결정
    - 보호연장아동이 거주하는 희망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이관
    - 이관받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초기상담 및 접수, 욕구사정, 선정 후 지체없이 서비스 지원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료 후: 주소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하도록 이관

이관 예시

· 대상자: A지역에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결정했으나 보호종료 직후 B지역으로 전입, 대학 진학하여 학기 중 C지역에서 기숙사 생활

· 이관 절차
- A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보호종료점검회의 참석, 사후관리 계획수립,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선정 후 이관
  * 이관 서류: 사후관리계획서, 사후관리동의서, 초기상담지, 욕구조사표, 서비스 신청·변경 의뢰서
- B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이관 후 초기상담, 욕구사정 결과 대상자가 C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지원 희망
  * 이관 서류: 사후관리계획서(A), 사후관리동의서(A), 초기상담지, 욕구조사표, 서비스 신청·변경 의뢰서
- C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이관 후 초기상담, 욕구사정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계획 및 실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료 후 주소지인 B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이관
  * 이관 서류: 사후관리계획서(A), 사후관리동의서(A), 자립수준평가서,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
  ※ 중도에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시 해당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이관

02.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절차

1. 사후관리 계획수립

- 보호종료 1개월 전
  - 자립지원전담요원: 보호종료점검회의 개최(서식6)
    - 참석: 아동, 자립지원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인력
    - 보호종료 후 거주지 이전 확정 시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소재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참석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대상자 이관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외 별도 공간도 가능)에서 대면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화상회의로 대체 가능(단, 사유 기재 필수)
    - 아동 특성, 주거·진학·취업 등 자립준비 상태, 자립지원 필요항목 등 공유 및 회의록 작성(서식6)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신청 및 계획 지원, 디딤씨앗통장 수령 안내
    - 취업 등 아동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소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은 해당 사실을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공유하고 퇴소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보호종료점검회의 개최
  - 자립지원전담인력
    - 자립준비 상황 및 자립지원 필요항목 등 점검, 라포 형성,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안내
    - 사후관리계획서(서식15) 작성 및 사후관리동의서(서식16) 확보

예시

구분	내용
사후관리계획서	▪사후관리 연락 방법 및 일정·주기 결정, 생활·주거, 학업·취업, 건강, 가족·대인관계 등 주요 사후관리 내용 등 계획수립
사후관리동의서	▪사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보 * 본인 서명 필요, 대면 회의 시 당일 확보, 비대면 화상회의 시 회의 후 7일 내 원본 확보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우선 선정 필요성 검토: 보호종료 직후부터 초기상담, 욕구조사 등 실시
      *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주거지 확보 상태, 전반적인 자립 능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집중 사후관리 필요 시 사후관리 주기 단축 또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우선 선정되도록 사후관리계획서 작성
      *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 종합 심리검사비 지원을 활용하여 보호종료 전부터 정확한 진단 및 조기 개입이 가능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우선 선정 검토
    - 주거·진학·취업 등 자립준비 상태를 확인하여 보호종료 전부터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공공·민간 자원 연계

- 보호종료 3주 전
  - 자립지원전담인력: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시·군·구에 사후관리계획서(서식15), 사후관리동의서(서식16) 제출
  - 아동보호전담요원: 사후관리계획서·동의서 확보 확인 후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심의 결과 최종 보호종료된 직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호종료 명단 통보
    - 아동이 중도에 보호종료 신청 의사 철회, 종결 심의되지 않은 경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통보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종료 심의 전 아동 의사 변경 시 자립지원전담요원 업무

· 보호종료 → 보호연장: 즉시 관할 시·군·구에 보호기간 연장승인신청서(서식12) 제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변경사항 안내

· 보호연장 → 보호종료: 즉시 관할 시·군·구에 보호종료(퇴소)신청서(서식7) 제출, 빠른 시일 내 보호종료점검회의 개최*

* 자립지원전담인력은 보호종료점검회의 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서·동의서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보호종료 5년 내 사후관리 거부 시

-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사후관리 종료(해지) 보고(서식21, 22)
- 시·군·구 자립업무 담당자는 5년간 자립수당·정착금 지급 현황 지속 관리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연 1회 연락 시도 및 아동 상황점검(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모니터링 제외)

조기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계획수립 회의

· 아동보호전담요원: 18세 도래 1개월 전까지 사후관리 계획수립·동의를 위한 회의 개최

- 참석: 아동, 아동보호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인력
-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지원 대상자 연계 의뢰 공문 및 과거 실시한 사후관리점검표(타법시설입소) 송부(부록12)

· 자립지원전담기관: 회의를 통해 사후관리계획서 및 사후관리동의서 확보 후 시·군·구 공유

* 원가정 복귀 사유로 조기 보호종료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사후관리 대상자가 된 경우에만 해당

2. 사전 준비

• 최초 연락 시 본인 확인 후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역할, 사후관리 담당자 소개 및 일정 조율

▸ 자립지원전담기관 개소 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최초 연락 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동의 의사 재확인

- 문자, 이메일, 전화 중 선호하는 연락 체계 확인 필요

• 연락두절 및 누락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시·군·구 업무 협조 필수

▸ 연락두절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자립지원전담요원, 시·군·구에 협조 요청

3. 실시

• 사전 협의된 사후관리 방식, 일정·주기에 따라 정기 사후관리 실시

▸ 정기 사후관리 시점 외 대상자 요구 등 필요 시 추가 사후관리 및 정보·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방식

· 대면(방문, 내방) 원칙이나 대상자와 협의하여 비대면(유선, 전자기기를 활용한 화상) 가능

· 최초 사후관리는 대상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립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대면 권고(부득이하게 비대면 모니터링 시 화상회의 권고)

방법	내용
대면	대상자가 수행기관에 직접 내방 또는 대상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모니터링 진행 자립수준평가지를 출력하여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관리 모니터링
비대면	전화 또는 전자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모니터링 진행 자립수준평가지 응답 링크 사전 공유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관리 모니터링

▸ 자립수준평가(서식17)*,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서식18)에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자립수준평가 항목을 질문하고 답변을 토대로 작성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작성(대상자가 직접 자립수준평가지를 작성해도 반드시 사후관리 모니터링 진행)

* 자립수준평가만 진행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 미작성한 경우 사후관리 수행으로 인정하지 않음

▸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변경 시 대상자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변경 정보를 공유하도록 지속 안내

• 심리정서 상태 점검(부록 5~11)

▸ 한글판 우울증 선별도구(phq-9, 부록8)* 등 활용

* 간단하게 우울증을 선별하고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가 보고형 검사(중위험군: 10~19점, 고위험군: 20~27점)

▸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서식18)에 심리정서 상태*, 정신건강 관련 특이사항** 기록 필수

* 예. 취업에 대한 불안감, 새로운 직장에 대한 기대감, 우울감, 외로움 등

** 예. 우울증 선별도구 측정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내원 및 약물 처방·복용 여부 등

▸ 심리상담 필요 또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의뢰, 종합 심리검사비 지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우선 선정 등 지원

* 대상자 거주지 기준 기초센터로 의뢰

- 자살 고위험군은 의뢰 및 공동 사례관리하며, 대상자 동의 시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에 심리정서 지원 등 협조 요청

▸ 심리정서 상태는 민감한 사항이니 사회복지 상담 기술(경청, 무비판적 수용, 공감적 이해 등)을 바탕으로 각별히 주의

정신건강복지센터(부록19)

· 광역: 기초센터 지원, 정신건강 위기개입팀* 운영 등

*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등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 관할지역 내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 경찰 등과 함께 대응

· 기초: 중증정신질환자 발굴·관리사업,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등

*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19~34세)을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우울·불안 해소프로그램 등 제공

· 전화: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09), 가까운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 24시간 상담서비스, 정신건강 정보 및 정신의료기관 안내

자살예방센터(부록20)

· 광역: 기초센터 지원, 자살예방 정책 연구, 자살예방교육 등

· 기초: 우울증 스크리닝 등을 통한 고위험군 발굴,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부록21)

· 광역: 기초센터 지원, 중독건강 실태조사, 중독사업 콘텐츠 개발 등

· 기초: 중독예방, 중독질환자 사례관리, 재활프로그램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1회당 최소 50분 이상)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사후관리 점검 협조
  - 촘촘한 사후관리 대상자 지원을 위해 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와 협조
  - 시·군·구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대상자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시 여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현황, 특이사항, 서비스 연계 필요사항 등 지자체 지원 및 협조 필요사항 공유
    - 협의를 통해 유선 또는 공문으로 사후관리점검표(부록12) 항목에 관한 대상자 현황 공유
  - 사후관리 중 특이사항 발생(연락두절 등), 보호 중 이력 확인, 시·군·구 복지 자원연계가 필요한 경우 등 상시 협조체계 유지

4. 종료

- 사유: 보호종료 후 5년 도래, 사망, 거부 등(사망, 거부 사유 별도 관리)

- 5년 도래한 해당 월말에 종료하며 사후관리 종료(해지) 동의서(서식21), 사후관리 종료(해지) 보고서 작성(서식22)
  - 사후관리 중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대상자의 거부로 인한 종료 시 시·군·구에 사후관리 종료(해지) 동의서, 사후관리 종료(해지) 보고서 송부
  - 사후관리 계획 시 사후관리 거부할 경우 사후관리 종료(해지) 동의서, 사후관리 종료(해지) 보고서 작성
  - 시·군·구 자립업무 담당자는 5년간 자립수당·정착금 지급 현황 지속 관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연 1회 연락 시도 및 아동 상황점검(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모니터링 제외)

- 사후관리 종료 3개월 전 미리 안내하여 사후관리 종료에 대한 심리·정서를 다루며, 종료 이후 어려움 발생 시 대처방안 안내 후 종료

03.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개요

1. 목적

- 원가정 외 보호체계에서 보호종료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이 활용하는 실천 방법

-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따른 사례관리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자립역량강화 및 자립 안전망 마련

2. 특성

- 사례관리 특성
  - 대상자의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해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 서비스 효과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조정 병행
  - 대상자 욕구에 따라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는 개별적 서비스 특성
  - 종합적 서비스로서 대상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서비스 동시 제공
  - 공식·비공식 지원체계 내 서비스 활용 극대화, 특수욕구 대상자를 위해 임상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상태에 따라 서비스 내용과 양의 흐름이 변하는 유연성
  - 사례관리자와 대상자 사이에 관계 형성 매우 중요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특성
  - 사후관리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포함
  - 기간이 제한적이며 비교적 단기에 개입 가능한 문제부터 장기적인 문제까지 범위 다양
  -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

3. 대상

- 사후관리 대상자, 보호연장아동, 재보호조치 대상자* 중 초기상담을 거쳐 선정된 자(수시 선정)
  - 보호연장아동, 재보호조치 대상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배분 인원의 10% 내 선정

    ※ 사업비 예산 내에서 추가 선정·지원 가능하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선정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결정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밖(타 지역) 거주 보호연장아동(서식 25)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의뢰(서식20)

· 초기상담, 욕구사정 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선정하여 거주지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이관

  * 선정 결정 전 이관받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서비스 필요성 검토 후 선정 필요

· 거주지 자립지원전담기관: 절차상 초기상담, 욕구사정 후 지체없이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 후 주소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하도록 이관

4. 수행주체

- 자립지원전담인력
  -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이관 가능
    - 거주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전 공유 후 이관
    -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 후 주소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역할

· 상담자, 조언자, 정보 제공자, 자원 개발자, 자원 연계자, 서비스 조정자, 치료자, 옹호자 등의 역할 수행

5. 수행시기

- 기간: 기본 1년, 욕구 특성에 따라 최소 3개월 가능(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 가능)
  - 보호연장아동, 재보호: 보호연장·재보호 기간동안 지원 가능
    -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받던 사후관리 대상자가 재보호로 사후관리 일시중지 하는 경우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 필수, 재보호 중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보호 기간 내 선정 절차 거쳐 지원
    - 보호연장(재보호) 종료 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 필수, 사후관리 대상자로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 내 선정 절차 거쳐 지원

- 취업, 주거지 확보, 자립역량 향상 등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중간 종결 또는 기간 연장 가능
  - 1~2개월 내 장·단기 목표 달성 시 중간 종결 가능하나, 최소 3개월까지 월별 자립 상담을 통해 대상자 상태, 환경 변화 등 모니터링 후 종결*

    * 거절이나 포기, 연락두절, 이사, 사망, 자체종결, 부정수급 사유로 인한 종결 제외

6. 수행방법

- 자립준비청년의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 제공
- 공공과 민간자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관리

7. 기반

- 자립준비청년의 복합적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내·외부 운영체계 구축

8. 점검·평가

- 지속적, 주기적 점검과 평가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서비스 연속성 강화

9. 전략

- 효과적, 효율적 실천을 위해 민간과 공공 서비스 제공자 간 네트워크 구축

04.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절차

절차	주요 기록 사항	활용 서식
대상자 발굴	▪ 대상자 발굴·접수 절차수행	▪ 서비스 신청, 변경 의뢰서(서식20)
초기상담 및 접수	▪ 대상자 기본정보, 주요 문제·욕구 * 자립수준평가,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 참고	▪ 초기상담지(서식26)
욕구사정	▪ 필요 서비스 욕구 및 강점 사정	▪ 욕구조사표(서식26) ▪ (참고) 위기도조사지(서식27)
선정 (사례회의)	▪ 대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 내용 기록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표(서식29) ▪ 사례회의록(서식30)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 변화 목표 수립 ▪ 필요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타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획된 서비스 의뢰 * 보호연장아동은 의뢰서를 받은 후, 초기상담 및 접수 시작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서약서(서식31)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계획표(서식32) ▪ 서비스신청, 변경 의뢰서(서식20)
서비스 점검 및 평가	▪ 변화 목표 및 서비스 지원 과정 점검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점검표(서식38) ▪ (참고) 자립수준평가서(서식17) ▪ (참고)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서식18)
종결 (사례회의)	▪ 변화 목표 달성 정도 파악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 필요 여부 파악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심사서(서식39)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해지(종결) 동의서(서식40)

1. 대상자 발굴

- 개념
  - ▸ 사후관리 과정에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필요 대상 발굴 또는 외부로부터 대상 의뢰 및 발굴

- 발굴 시점
  - ▸ 사후관리 계획수립: 보호종료 전 사후관리 계획수립 회의 시점에 필요 여부 검토
  - ▸ 정기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정기 사후관리 시점에 자립수준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
  - ▸ 의뢰 및 발굴: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유관기관 등 의뢰를 통해 발굴
    - 의뢰기관을 통해 서비스 연계 및 초기상담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요청

2. 초기상담 및 접수

- 개념
  -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기본정보와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욕구에 대해 일차적 상담 수행
  - ▸ 라포를 형성하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진행 절차를 안내하는 단계

- 수행 방법
  - ▸ 대상자 발굴 후 1주 이내 대상자 초기상담 안내(문자, 유선 등)
    - 초기상담 전 자립지원전담요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통해 대상자 기초자료 및 특이 사항 확인

- 대상자 발굴 후 2주 이내 초기상담 진행(서식26)
  - 초기상담에서 다룰 내용, 필요한 이유, 의뢰된 과정, 미선정 가능성 등 안내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이해, 기본정보, 참여 의지, 가족 사항(사회적 지지체계), 경제 및 주거 사항 등 대상자 상황과 주요 문제 및 욕구 파악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필요 사유, 필요 서비스에 대한 상담자 의견 기술
- 초기상담 후 1주 이내 필요성을 재점검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

• 중점사항
- 라포형성과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개인정보, 개인적 어려움에 과도한 개입 지양
- 가급적 대면상담으로 진행하며 지나치게 개방된 장소 지양

〈 초기상담 시 담당자의 태도 〉

긍정적 태도	■ 라포를 형성한다. ■ 따뜻하고 섬세하게 대한다. ■ 대상자의 말에 공감하며, 경청한다.	■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한다. ■ 일관성 있는 주제로 대화한다. ■ 가능한 개방형 질문을 한다.	■ '무엇'과 '어떻게'를 질문한다. ■ 대상자가 이야기하고 결정하도록 권유한다. ■ 본인의 감정을 조절한다.
부정적 태도	■ 사무적으로 대한다. ■ 무관심하고 차갑게(건조하게) 대한다. ■ 말을 끊거나 판단, 비난한다.	■ 부적절한 농담, 과장된 행동을 한다. ■ 주제를 바꾸고 내용을 끊는다. ■ 폐쇄형 질문을 한다.	■ '왜'를 질문한다. ■ 모든 대화를 담당자가 주도한다. ■ 동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3. 욕구사정

• 개념
- 초기상담을 기초로 기본정보 및 주요 문제, 욕구, 강점, 자원, 장애물 등의 정보를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수집
- 가장 시급하게 충족되어야 하는 욕구를 확인하고 욕구사정 결과를 기반으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 수행 방법
- 초기상담을 바탕으로 욕구 영역별 확인 필요사항 정리, 상담 질문 사전 준비, 상담 일정 협의
  - 대면상담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유선 등 비대면 상담 가능
- 초기상담 후 2주 이내 욕구사정 진행(서식27)
  - 대상자 특성, 욕구, 문제, 자원체계, 사회관계망 등 종합적 분석
  - 대상자의 주관적 욕구를 기반으로 전문적 판단을 추가하여 강점 확인 및 합의된 욕구 도출

• 위기도 조사(서식28, 부록13)
- 욕구사정과 별도로 위기도 조사를 통해 욕구 영역별 문제 시급성 및 중요도 파악
  - 잠재적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의뢰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
  - 위기 영역과 위기 정도 파악,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상황 변화에 따른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의 적정성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

욕구사정 실천기술

· 대상자의 주관적 욕구 확인
- 대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의미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
- 주관적 욕구의 시급성, 심각도, 지속성, 중요도 등에 기반한 우선순위 확인
- 대상자가 제시하는 욕구가 비현실적이어도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며 구체적으로 확인
-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알고 싶어하는 자세로 욕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질문
- 제시한 욕구를 기록할 때는 참여자의 표현 그대로 따옴표로 직접 인용
- 자신의 욕구나 문제를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할 경우 욕구 확인을 위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 표현하도록 촉진

· 미인지 욕구, 숨겨진 욕구 확인
- 대상자가 표현하는 욕구 이면에 미확인 욕구, 대상자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숨기고 있는 욕구에 대한 탐색을 위한 주요 욕구별 핵심 질문 필요

· 생태도
- 대상자와 의미있는 체계와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여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자료로 활용
- 가족관계에 대한 심층적 파악이 어려우므로 생태도를 통해 의미있는 관계와 주변 관계 파악 가능

· 강점 확인
- 대상자의 강점을 다차원적으로 사정하기 위해 노력하며 문제점보다 이겨낸 경험(대처능력), 변화 의지(동기), 성장가능성(잠재력)을 중심으로 사정

4. 선정

• 개념
- 초기상담, 욕구사정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하고 목표 수립 및 수행과정에 대한 방향 모색

• 수행 방법
- 초기상담 및 욕구사정 결과를 기반으로 10가지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슈퍼비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내 논의하여 선정
  - 자립 여건 및 의지뿐 아니라 주요 욕구의 지속도, 반복도, 심각도, 복합도, 해결의 어려움, 위험도, 긴급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

* 경제, 돌봄,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주거, 일자리, 보육 및 교육, 관계, 안전, 법률 및 권익보장

지속도	▪ 주요 욕구와 관련한 어려움이 오랜 기간(6개월 이상) 계속되었는가
반복도	▪ 주요 욕구와 관련한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는가
심각도	▪ 주요 욕구와 관련한 심층 사정 결과 심각도가 높은가 * 예. 우울, 정신건강 척도 검사 결과 임상군으로 나타난 경우 등
복합도	▪ 2가지 이상의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욕구들이 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해결의 어려움	▪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자원이 없는가
위험도	▪ 주요 욕구와 관련한 어려움이 일상생활을 지장을 미치는가, 신체적·심리적 위험 상황인가
긴급도	▪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

주거 불안정, 상시 의료지원 필요, 우울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은 우선 선정하여 사례관리비 지원, 상담 강화 필수

* 우울증, 자살생각, 자살시도, 약물중독, 기타 정신질환(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의심되는 경우 포함정신건강 고위험군 판정: ① 사후관리 계획수립 시 아동복지시설 등 공유된 정보, ②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용 참고, ③ 종합 심리검사 결과 등 활용하되 진단서 등 증빙자료 없이 담당 자립지원전담인력 소견만으로 판단·선정 가능

사례회의(서식30)

·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욕구변화 및 문제해결 정도, 서비스 제공 점검, 개입 방법, 종결, 외부 자원 연계 등 협의를 위해 수시 실시

내부 사례회의

· 목적: 대상자 선정(연장 포함),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점검, 종결 등 협의

· 참석자: 자립지원전담인력, 슈퍼바이저, 기관장

· 주기: 주 1회 주간회의, 월 1회 월간회의 정기 개최 권고

·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한 회의에서 여러 사례를 다룰 수 있으나 사례회의록은 사례별로 기록

통합 사례회의

· 목적: 집중·위기 사례 개입 방향 모색, 유관기관·전문가 등과 협력적 개입 및 조정 논의 등

· 참석자: 대상자 특성에 따라 참석 범위* 탄력적 운영

* 예. 아동보호전담요원, 이전 보호기관 종사자, 읍·면·동 또는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서비스 연계 기관 담당자(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자활사례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 대상자 관련분야 전문가(복지, 법률, 정신건강 등), 희망 시 자립준비청년

· 주기: 분기 1회(연 4회) 이상 권고(외부 기관이 주 사례관리자인 회의 참석 제외)

5.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개념

▸ 초기상담, 욕구사정, 사례회의 등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개인별 자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활동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과정의 중추적 기능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을 구체화하는 과정

▸ 자립준비청년 중심의 개인별 자립계획을 중심으로 수립, 관리

개인별 자립계획(Individual Action Plan)

· 자립을 준비하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계획

· 생계·주거·취업·학업·인간관계·건강 등 자립 전 영역을 포괄하며 본인이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과정 수립

· 대상자 주도적이며 목표지향적, 과정 중심, 장단기 목표 수립에 용이

• 수행 방법

▸ 합의된 욕구 확인: 욕구사정 단계에서 합의된 욕구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우선순위 확인

▸ 목표 설정: 욕구를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대상자 입장에서 목표 설정

–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결과 중심, 시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립

– 단기목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1~3개월 단위 기간 중로 실행 가능한 과정적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개입의 총량, 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프로그램 참여 시간·노력의 총량(산출 목표)

** 3개월 내의 단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장기목표 작성 없이 단기목표만 작성 가능

– 장기목표: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 해결을 위해 기대되는 변화

* 개입을 통해 대상자의 태도·행동·지위·조건 등이 변화되는 것, 문제해결 및 욕구 충족되는 개선 상황을 말하는 성과

〈 목표 설정 예시 〉

구분	취업	건강
단기목표 (산출)	▪ 학원 결석하지 않고 수료하기 ▪ 하루 1시간 이상 자격증 공부 ▪ 결근 없이 아르바이트 유지하기	▪ 주 3회 운동 ▪ 체중 5kg 감량 ▪ 매일 약 챙겨 먹기
장기목표 (성과)	▪ 취업 준비 역량 강화	▪ 지속적인 운동 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증진

▸ 목표 수정: 목표점검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대상자와 합의하여 수정

– 단기목표: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거나 대상자 상황이 바뀌는 경우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장기목표: 가급적 유지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사정하여 목표점검 후 변경 가능

목표설정 시 고려사항

·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생활에 당장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달성하기 쉬운 것
· 초기상담, 욕구사정, 사례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욕구별 누락이 없는지, 대상자 변화 목표가 논리적인지 확인
· 장·단기 목표, 서비스 개입 목표, 제공 서비스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
· 대상자 변화를 장·단기 목표로 수립하되, 대상자 관점으로 목표를 기록하였는지 확인
· 목표는 동사형으로 기재하며 긍정적 단어 활용, 투입이 아닌 성과(결과) 형태로 서술하며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부분화,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하여 대상자 관점에서 기록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계획 수립(서식32)
- 개입 목표(장·단기)를 설정하고 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결된 구체적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계획을 세우는 과정으로 실천 세부내용과 연계된 활동, 서비스, 기간, 빈도, 역할 등 포함
- 대상자 개별 욕구·특성에 맞는 서비스 계획 협의·조정
- 변화 목표를 구체화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전략 등으로 구성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제공 내용, 방법(제공 횟수 및 시간) 등 상세히 확인
- 대상자가 책임감 있게 참여하도록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설정한 목표에 동의하는 형태가 아닌 협력적으로 목표 및 계획 수립

▸ 평가 기준 수립: 종결 시점에 목표 달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기준 수립
- 제공된 서비스나 자원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확인하고 실제로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자립지원통합서비스가 대상자에게 기대하는 긍정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 무엇을 제공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기준 수립

▸ 평자립지원통합서비스 서약(서식31)
- 함께 수립한 목표와 서비스 계획을 바탕으로 상호 파트너십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서비스 조정 및 중단에 대한 내용 확인

6. 서비스 제공

• 개념
▸ 서비스 계획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과정으로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전담인력이 함께 협의하고 계획한 각자의 역할 수행
▸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만 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을 위한 활동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여 자기 동기화를 통한 실행 에너지 제공
▸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직접적인 개입과 서비스 제공, 자원개발 및 연계 등의 과정 포함

• 수행 방법
▸ 단기목표에 기반한 대상자의 활동 및 서비스 계획에 준하여 수행
▸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서비스를 매개로 대상자의 주도적 참여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수단
▸ 대상자 스스로 자립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촉진 및 지원
- 대상자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계획하고 자립지원전담인력은 활동을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발생하는 어려움 지원

〈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 예시 〉

구분	내용
일상생활	■ 규칙적인 기상·취침 시간 설정, 자기 긍정 문구 책상에 써서 매일 1번씩 소리 내어 읽기, 자립수당 관리 및 활용계획 세우기
학업 및 진로	■ 공부 계획에 따라 자격증 취득 준비, 진로 계획수립(단기, 장기적으로 탐색) – 5년 후 내 모습 상상, 도서관·학원 수강 등, 롤모델이나 멘토 찾아서 조언 구하기
경제적 지원	■ 가계부 쓰기(수입·지출 체계적 관리), 주 3회 이상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이력서 작성, 취업처 찾기, 고용센터 방문 등), 취업지원제도 연계 확인
건강	■ 매일 30분 운동, 주간 식단계획(배달보다 요리 빈도 늘리기), 식단 조절(편의점 음식보다 건강한 음식 먹기)
심리정서	■ 감정 일기 작성 또는 매일 자기 전 일기 작성, 취미활동 1개 이상 만들기, 바람개비서포터스 활동

▸ 과업중심 상담: 대상자 욕구를 중심으로 과제를 통해 해결하도록 구체적·실현 가능한 과업 설정

• 서비스 제공 내용
▸ 자립지원 상담(서식33)
- 선정 후 1주일 내 개시, 최소 월 1회 대면 상담하되 대상자 의사·여건 등에 따라 주기 조정 및 비대면 상담 가능
- 대상자 욕구, 자립역량, 환경 등 파악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점검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지원(서식 34, 35)
- 자립지원 상담을 토대로 생계유지, 주거, 학업,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 개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및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 욕구사정, 서비스 제공계획을 근거로 지원하되 지역 네트워크 및 공공·민간 자원을 활용하여 무분별한 지출 지양
- 집행방법: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지원 항목별 집행 기준

구분	집행 기준
의료비	■ 치료비, 약제비, 응급실비, 입원비, 장애 진단을 위한 진료비, 간병비, 영양제, 건강 검진비, 치아교정비(부정교합 진단서 첨부 필수) 등(미용 목적 제외) * 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실비보험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 심리평가비(상담, 심리검사 등) 및 심리치료비 등 * 종합 심리검사는 '종합 심리검사 지원비' 활용
일상생활 지원비	■ 건강보험료 체납액, 교통비(월 6만원 이내, 대중교통에 한함), 방역용품비 등 ■ 통신비 등: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제외한 기본요금에 한함 * 식료품, 의류, 화장품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식료품은 긴급 상황에 한해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주·부식류 지원 가능 * 연락두절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기간 중 1회에 한해 기본요금(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등 외)에 대해 최대 120만원 지원 가능(단, 3개월간 통신비 지원 불가하며 통신비 체납 사유 명확히 기재)
주거 지원비	■ 중개수수료, 난방, 임대료(월세), 관리비, 기숙사비, 주거하자·보수 비용, 이사비용, 입주 청소 등 * 임대료(월세): 주거급여 제외한 나머지 금액 지원(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지속 점검·관리) ■ 침구 용품, 주방용품, 청소·세탁 용품, 기타 주거 물품, 공과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 체납액)
교육 훈련비	■ 학원비, 원서비, 교재비, 자격증 취득비, 교구비, 독서실, 시험접수비 등(취업·학업 목적) * 기타 전공·진로 취업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체력단련비: 꾸준한 재활·운동,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장, 수영 등(1개월 기준 15만원 내, 단순 여가활동 제외) ■ 증명사진비, 면접 준비비(정장·구두 구입, 프로필 사진 촬영 등) * 정장 구입비는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면접 참여 증빙자료 확인 필수
법률 지원비	■ 법률소송비, 변호사 선임비(소송, 재판, 참고인 조사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법무사 선임비(공증 비용, 법률상담비 등)

※ 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지원비만 지원하는 사례 지양(예. 교통비, 통신비만 지원 등)
※ 장례지원비 지원 가능(단,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내 지원 가능하므로 제외)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에 한해 집행, 상담 치료(가족 상담)로 주변인 필요한 경우 집행 허용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지원비 집행 방법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대상자		자립지원전담기관
■ 시·군·구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현황 파악 ■ 매월 20일까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주거급여 변동사항 안내	➡	■ 임대료 지원 전 대상자 및 시·도에 주거급여 변동 사항 확인	➡	■ 임대료 선지출 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당월 청구서, 이체내역, 주거급여 내역 제출	➡	■ 주거급여 지급일(20일) 기준, 증빙 확인 후 대상자 계좌로 주거급여 외 임대료 차액 이체

※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소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주소지 시·군·구를 통해 주거급여를 조회하여 지급 내역을 거주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월별 공문 제출
※ 주거급여 조회 확인 후 임대료(월세)를 지원하며, 주거급여 소급적용 시 소급 결정된 달부터 지원 중단

실비보험 가입자 의료비 집행 방법

· 보조금 전용카드: 의료기관에 대상자 실비보험용 진료비 영수증 발급 제외 요청
· 대상자 결제(사후정산): 실비보험금 신청·지급 후 진료비 영수증과 실비보험금 지급내역 첨부 안내
* 대상자 카드 결제는 의료 서비스(병원, 응급실 등) 사용 전 담당 자립지원전담인력과 협의된 건에 한함

▸ 자원연계
– 복합적, 만성적 문제 등 위기·집중 사례 발견 시 읍·면·동 맞춤형 복지 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등 통합사례관리로 의뢰 및 모니터링·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 가능한 스스로 자원을 탐색하고 기관의 자원목록을 참고하도록 하며 연계할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대상자의 연계 과정 지원
–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제도, 청년 주택·일자리 지원, 국민취업지원 제도, 긴급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융자금 등
– 민간자원: 외부 장학금·후원금, 민간 모금기관·학교·기업 실시 사업 및 후원, 자원봉사 연계 등
– 의료자원: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본인부담액상한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소 보건사업 등
※ 공공, 민간 자립지원 서비스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 공유 체계 구축

7. 서비스 점검

• 개념
▸ 수립된 실행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대상자와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사전 협의한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지, 대상자의 현재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
▸ 실행계획을 수정하거나 효과적인 자립준비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 자원 연계 등 진행

• 점검 시기
▸ 매월 자립지원 상담을 통해 개별 서비스 점검
▸ 개별 서비스에 대한 일상적 모니터링 외 분기 1회 이상(연 4회) 대상자 변화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과정에 대한 변화 점검

• 수행 방법
▸ 목표를 확인하고 대상자 상황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계획과 일치 여부 점검(서식38)
– 공공, 민간 서비스뿐 아니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직접 서비스(전문적인 지지, 상담 개입 등) 포함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기록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변화 시점 등 발견
▸ 목표달성 점검, 목표 달성의 어려움 및 도움 요청사항, 목표 변경 필요 여부 등 확인

구분	실행 과정 점검 내용
계획이행도	▪ 계획된 활동과 서비스의 실행 정보(빈도, 주기, 충실성 등), 실행을 위한 노력 정도
자립준비청년의 점검	▪ 자립준비청년의 목표 성취 정도, 노력, 참여 정도, 강점 활용 정도 ▪ 자립준비청년의 외부 자원과 자립준비청년 간 상호작용 ▪ 새로운 욕구, 환경의 변화 등
서비스 점검 (외부기관)	▪ 외부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는지, 서비스의 질은 어떠한지 정도 등 ▪ 외부 기관이 사례관리를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
점검 방법 (질적)	▪ 자립준비청년의 노력: 자립준비청년 스스로의 면담, 가정방문, 관찰, 전화 등 ▪ 서비스 이행도: 직·간접 서비스에 대한 기관 방문, 대면접촉, 과정 기록지 등을 통해 확인
점검 방법 (양적)	▪ 서비스 제공 횟수, 서비스 이행률, 척도 등을 통해 확인

- 제공기관 점검: 서비스 제공계획, 기간, 횟수, 변화 여부, 연계 및 협력의 원활성
  - 방문, 유선 등 상담으로 서비스 평가, 생활실태 등 파악
  - 필요시 동행하여 세부 서비스 이용 및 진행 상황 파악
  - 서비스 제공자 또는 대상자와 연락하여 대상자 욕구와 상황 변화 파악
  - 대상자가 만족하지 않거나 자립지원전담기관 간 조율이 필요한 경우 소통
- 대상자 점검: 활동 계획, 기간, 횟수, 환경 및 상황의 변동, 활동 의지 및 유지 정도

• 점검 결과에 따라 욕구 재조사,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또는 종결
- 욕구 재조사: 대상자 환경 변화로 재검토 필요, 서비스 중 심각한 문제 또는 신규 욕구 발생
- 계획 재수립: 서비스양 또는 횟수 변경 필요, 욕구 재조사 결과 서비스 종류 변경 필요, 서비스 제공자 여건 변화로 서비스 제공 어려움
- 종결 또는 이관: 상황 호전, 이사, 연락두절, 거절이나 포기

8. 종결

• 개념
- 대상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목표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받아 원하는 변화를 성취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기간 종결에 앞서 서비스 수행 과정 및 결과 종합 평가를 통해 향후 서비스 제공 여부 및 후속 조치 등에 대한 계획 정리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기간 종료, 목표 달성 등에 따른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 종결 또는 재사정 논의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 1개월 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평가 및 종결 심사(서식39)
- 대상자와 평가, 면담을 통해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를 상호 공유하고 종결 사전 합의 및 안내
  - 대상자와 감정 나눔, 변화 유지 방안 등 종결과정을 경험하며 종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계획 단계에서 수립한 목표 달성 기준에 따라 실행 과정 및 결과, 목표 달성도, 추가 욕구 및 문제 평가
  - 자립지원전담인력 입장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 대상자 차원에서 종합 평가
- 위기도 조사지를 재검토하여 목표 달성 여부 확인

※ 사망, 거절이나 포기 또는 자체 종결(위협, 폭력)의 경우 즉시 안내 및 종결 가능

- 평가 결과에 따른 종결 또는 연장(재사정)을 위한 사례회의 개최(서식30)
  - 당초 목표한 장·단기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에 종결
  - 목표 달성이 미진하고 지속 개입이 필요한 경우, 욕구와 문제가 심화되어 집중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욕구 재사정 또는 서비스 제공계획 재수립
- 종결 사유, 목표 달성 여부, 제공된 서비스 및 효과, 대상자 만족도, 종합 의견 공유

• 종결 후속 조치
- 매월 시·도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 명단,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심사서(서식39), 자립지원통합서비스 해지(종결) 동의서(서식40) 제출
- 사후관리 기간 미도래 시 잔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사후관리 제공
- 사후관리 기간 도래하였으나, 문제가 지속될 경우 읍·면·동 보건복지팀(통합사례관리) 또는 인근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례 이관

• 종결 유형

유형	내용
장기목표 달성	■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당초 수립한 장기목표 달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기목표 달성	■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점을 진단하여 당초 수립한 단기목표 달성으로 판단되는 경우 * 서비스 계획에 맞춰 장·단기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을 때 종결이 원칙 ** 예외적으로 3개월 기간의 계약으로 당초 단기목표만 설정하였을 경우, 단기 목표 달성으로 종결
계약기간 만료	■ 사후관리 기간이 5년 도래한 경우 ■ 일시중지 사유(군입대, 재보호)로 종결이 필요한 경우 ■ 보호연장, 재보호조치 아동의 보호종료로 종결이 필요한 경우
상황 호전	■ 위기도 조사 결과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전후 대상자 취업 등 환경 변화로 위기도 점수가 낮아지는 등 상황이 호전되어 자립지원통합서비스가 불필요한 경우
거절이나 포기	■ 서비스 지속 거부 또는 서비스 동의 이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지도나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연락두절	■ 사후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연락두절 대상자로 관리되는 경우 * 연락두절 관리방안을 통해 연락시도 과정을 거쳐 확인 결과 반영
사망	■ 대상자 사망으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자체종결	■ 기관의 자원·능력의 한계 또는 타 기관 연계 ■ 자립준비청년의 소극적 참여 ■ 자립지원전담인력에 대한 위협 또는 폭력 행위를 한 경우
부정수급	■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은 것이 발견된 경우 ■ 대상자가 의도 및 목적과 다르게 사례관리비를 집행한 경우 ■ 주거급여 등 국가지원수당과 중복지원으로 인한 환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 * 부정수급으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종결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와 논의하여 환수 필수
이관(이사)	■ 대상자 이사로 인해 타 지역으로 사례를 이관할 경우 * 이관되는 지역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연속하여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

종결 실천 기술

· 갑작스러운 종결로 느끼지 않도록 종결 1-2개월 전부터 종결에 대한 대화 나누기 및 종결 준비

· 감정 나눔: 대상자와 사례관리자가 느끼는 사례관리를 통한 변화와 성장, 아쉬움을 확인함

· 변화 유지 방안: 사례관리 과정에서의 변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나눔

· 추가 지원 공지: 추가적인 문제 및 욕구 방생 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신청 가능에 대한 안내

· 저항 다루기

- 종결에 대한 저항 신호: 새로운 문제나 욕구 제시, 종결에 대한 불만 표현
- 종결 준비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초기 단계부터 시작하며 종결 시점에 대한 기준 지속 논의 및 합의
- 종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에 대한 인식과 확인 과정 필요
- 대상자가 이룬 성과와 목표 달성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충분한 시간 필요
-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대응 방법 함께 모색
- 위기 상황 발생 시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열어두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참고]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관련 서식 작성 방법

1 초기상담지(서식26)

항목	작성 방법
상담번호	■ 기관번호 - 날짜(형식 : YYYYMMDD) - 당일 접수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부여
상담 일자	■ 첫 대면 초기상담 실시일 기준으로 작성
(차) 상담	■ 상담차수 기록, 초기상담에서 파악하지 못한 정보는 추가 면담으로 기록
상담자 정보	■ 초기상담을 진행한 상담자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록
상담 경로	■ 초기상담에 이르게 된 경로 선택 후 상세 내용 입력 - 대상자 요청: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경우 '전화, 이메일, 편지, 내방 등' 상담 및 요청 방법 기록 - 발굴: 사후관리 중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잠정 평가하여 직접 초기상담 - 타 기관 의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경우 의뢰기관, 의뢰자(성명, 직책), 연락처, 의뢰 목적, 대상자 정보(보호종료일, 퇴소 시설, 보호기간, 의뢰 사유 등) 등 상세히 기록 - 통장, 이웃 주민 등: 의뢰인 인적 사항, 의뢰 사유, 상황 등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기록 - 기타: 항목에 없는 대상자 지인 등 개인이 의뢰
상담유형	■ 상담 진행 방법 선택 - 전화: 대상자와 유선 연락 - 내방: 대상자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직접 방문 - 가정방문: 대상자 주거지 및 주거지 부근 별도 장소에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방문 - 지역사회기관 방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타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 자립지원전담인력이 방문
대상자 정보	■ 대상자 성명 및 기타 인적 사항(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기록
가구 유형	■ 현 거주 상황 정보: 대부분 청년 1인 가구지만, 필요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 유형 선택 - 청년 1인 가구: 65세 미만 성인 단독 가구 - 조손가구: 부모세대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한부모가구: 편부·편모와 자녀 등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부부중심가구: 부부 중심으로 부모 또는 자녀 등으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 미혼모부가구: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 기타: 위 분류 이외의 가구 유형인 경우 구체적인 가구 형태를 기록 - 장애인가구: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타 가구 분류와 중복 체크 가능 - 다문화가구: 국제결혼 등으로 외국인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타 가구 분류와 중복 체크 가능
주거유형	■ 대상자의 주거유형 선택(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임대주택, 무상 임대, 기타) ■ 주거유형에 관한 세부 설명 기록(LH, SH, 이음 주택 등)
가족 사항	■ 해당 시 대상자와 가족에 대한 기본정보, 특성, 개별 연락처 등 작성(미해당 시 제외) ■ 가족 외 사회적 지지체계 정보 필요 시 가족 사항에 기록하고 욕구사정 시 사회적 지지자원에 기록
상담내용	■ 대상자가 제시하는 주요 문제 및 걱정 사항 기록 ■ 대상자가 원하는 도움 또는 지원 내용은 상담 중 대상자가 하는 말을 중심으로 기록 ■ 대상자 주요 문제는 잠재된 욕구로 면담자가 파악한 문제점을 기록

항목	작성 방법
주요 문제	■ 경제: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 및 자산 관리상의 문제 - 기초적 욕구(의식주) 충족에 필요한 자원 부족 - 자산취득 및 관리(저축, 부채 등) 등의 문제 ■ 돌봄(일상생활 유지): 기능적 및 수단적 일상생활 유지상의 문제 - 식사, 용변 처리, 옷 입기, 세탁, 몸 씻기, 시장보기 등 일상 활동 어려움 - 전화 걸기, 교통수단 이용, 복약 관리 등 신변 관리나 일상생활 유지 기능 어려움 - 도보 등 외출의 어려움 ■ 돌봄(가족생활 문제):가족관계, 보육, 간병의 문제 - 부부·부모-자녀 간 갈등이 있거나 관계 단절 - 자녀 양육 및 보육 관련 문제 - 가족 구성원의 돌봄 및 간병 관련 보호 부담의 문제 ■ 신체 및 정신건강: 대상자 및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로 인한 생활상 문제 - 신체적 건강: 심각한 건강 문제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정신적 건강: 심각한 정신적 문제, 정신건강·자살 등, 술·약물, 인터넷·게임 중독, 도박 등 ■ 주거: 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권익 보장상의 문제 - 주거 및 주거환경, 누수·가스누출 등 거주지의 안전 ■ 일자리: 취업·창업 상의 문제 및 직업기능 수행상의 문제 - 기술·경력·능력 부족 등으로 취(창)업 부담 - 돌봄·건강 문제 등으로 취(창)업 어려움 - 구직 및 직업 활동의 불안정, 비정규성 등의 관련 문제 ■ 보육 및 교육: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교육 습득 상의 문제 ■ 관계: 친인척, 이웃, 동료관계 등 소속집단 내에서의 관계 형성 및 유지상의 문제 -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 - 비공식적 지지망이나 지역사회 지지체계 활용 문제 ■ 안전: 가족 구성원 또는 외부인과 관계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 보호 상 문제 -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 내 폭력 및 학대, 방임 - 기타 가족 내외로부터의 안전의 위협 ■ 법률 및 권익보장: 법, 옹호, 인권 등과 관련하여 권리·권익 보장상의 문제
상담자 종합 의견	■ 대상자 유형 분류 사유와 향후 사례관리 또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상담자 의견 중심으로 기술 ■ 최초 의뢰 시 상황(보호종료 당시 상황, 담당자 등)을 기술하여 담당자 변동에 대비하고 서비스 일관성 유지 ■ 상담 내용에 근거하여 상담 결과 판정 의견 및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 - 사후관리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중 결정, 긴급 의료비 지원이 요청될 때 사후관리 대상도 지원 가능 - 사례에 대한 잠정적인 서비스 진행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진행 - 긴급 지원 대상자는 주요 문제별 서비스 수행 방법 중 긴급 지원이 선택된 영역이 있는 경우 - 주요 문제별 서비스 수행 방법 중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서비스 유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아동, 청소년, 한부모가족, 장애인 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긴급복지(의료비 긴급 지원 포함),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하여 표기 - 자립지원통합서비스보다 더욱 집중적인 개입이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사업으로 의뢰

2 욕구조사표(서식27)

항목	작성 방법
상담자 정보	■ 사례관리 번호와 상담자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록
조사 일자	■ 욕구조사표를 신규로 작성하는 경우 '신규', 재조사인 경우 '재조사' 체크 후 해당 차수를 숫자로 기입
대상자 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기재 ■ 연락처에 접촉 가능한 정보(예; 비상 연락처 및 이메일주소) 기입 가능
주거 사항	■ 주거 형태, 주거유형, 주거환경, 주거상태, 주거구조, 난방 방법, 화장실 기록 ■ 이사계획이 있을 경우 사유와 예정일 등을 반드시 기입
가구 유형	■ 현 거주 상황 정보로 선택 - 대부분 청년 1인 가구에 해당하나 필요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가구 유형 선택 - 청년 1인 가구: 65세 미만 성인 단독 가구 - 조손가구: 부모세대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한부모가구: 편부·편모와 자녀 등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부부중심가구: 부부 중심으로 부모 또는 자녀 등으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 미혼모부가구: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 기타: 위 분류 이외의 가구 유형인 경우 구체적인 가구 형태를 기록
가족 사항	■ 해당 시 대상자 포함 가족 정보 작성(관계, 성명, 연령, 동거, 학력, 직업, 장애 유형, 질병 등)
서비스 이력	■ 대상자가 조사 시점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욕구조사 실시 - 추후 서비스 내역은 사례관리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욕구 정보	■ 대상자가 표출한 욕구 및 문제영역별 주요 현상과 원인을 입력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욕구별 주요 내용 작성 ■ 위기도 조사지 척도를 활용한 사정 결과 입력(총점, 해당 욕구 영역)
종합 의견	■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전문적 판단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표현된 욕구와 표현되지 않은 욕구 및 활용 가능한 자원, 활용 능력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 작성
사회적 지지자원	■ 주요 문제를 완화하거나 욕구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 활용 가치가 있는 개인의 내적 자원, 가족이나 지역사회 유형 혹은 무형의 자원을 파악하여 기록 ■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적 지지체계에 관한 자세한 기록
요청 서비스 내역	■ 대상자가 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요청한 서비스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 대상자에게 긴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록

3 사례회의록(서식30)

항목	작성 방법
대상자 정보	▪ 사례회의 대상의 사례관리 번호, 대상자명, 회의 차수, 회의 일시 기록
상담자 정보	▪ 작성자명, 소속기관 기록
회의 제목	▪ 사례회의 주요 안건 요약하여 작성
회의 내용	▪ 사례별, 회의 내용별로 사례회의 주요 내용 작성
회의 결과	▪ 회의 내용 중 결정 사항, 협조 사항, 향후 추진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요약
참석자	▪ 내부 참석자: 자립지원전담기관 내부 참석자 ▪ 외부 참석자: 사례 관련 외부 기관(보건소, 희망복지지원단 등), 사례관련인(예. 자립준비청년) 등 수행기관 종사자 등. 슈퍼비전 제공 등의 목적으로 참석한 외부 전문가
차기 회의 예정 일시	▪ 차기 사례회의 필요 시 차기 회의 일정을 협의하여 기록

4 서비스 제공 계획표(서식32)

항목	작성 방법
사례관리번호	▪ 접수 시 생성된 해당 사례의 관리 번호
대상자명	▪ 자립준비청년 대상자 이름
담당자명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를 담당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 성명과 소속기관
성과목표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궁극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영역별 변화의 양과 질에 대한 기대치 - 단기목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적 목표 설정, 행동이나 인식 변화보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습득, 이를 통해 새로운 자원의 활용 등 궁극적인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조건의 변화를 목표로 함 - 장기목표: 단기목표 달성을 위해 3~6개월 이상의 개입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 *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산출을 단기목표로 수립함이 원칙으로 장·단기 목표가 모두 달성되었을 때 종결 ** 단, 3개월 내의 단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목표 작성 없이 단기목표만 작성 가능하며, 수립한 단기목표가 모두 달성됐을 때 목표달성 종결
욕구 영역별 개입목표	▪ 위기도 조사지 등 욕구사정을 통해 발견된 욕구 영역별로 구분하여 기록함
우선순위	▪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자립준비청년과 합의에 기반하여 설정 - 대상자의 근로 저해 요소로 판단되는 주요 문제 중에서 단기간 내 제거 가능한 것 - 대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거나 삶에 당장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긴급한 것 -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행동적인 것, 대상자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 - 미뤄질 경우 다른 욕구 영역까지 새로운 문제 유발 혹은 욕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
서비스명	▪ 서비스 목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자원 및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
개입 시기	▪ 우선순위와 함께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비스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 긴급성, 현실적 개입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로 1주일 내, 1개월 내, 3개월 내 등 예상 개입 시기를 설정하여 시간 제한적인 개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서비스 기간 및 횟수	▪ 서비스의 충분성과 연관된 것으로 서비스를 통해 기대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 투입량에 대한 잠정적 계획의 의미 ▪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관의 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기관의 서비스 제공 지침을 고려하여 서비스 기간 및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담당자	▪ 실제로 서비스 제공의 일차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명을 기록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채널 구축 ▪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기관이 수행기관일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기록 * 예. 일상생활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마트에서 생필품을 후원하였다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마트
서비스 이용 및 참여에 대한 동의	▪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 대상자 참여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도록 함

5 서비스 제공 점검표(서식38)

항목	작성 방법
사례관리번호	▪ 접수 시 생성된 해당 사례의 관리 번호
대상자명	▪ 자립준비청년 대상자 이름
담당자명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인력 성명과 소속기관
성과목표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궁극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영역별 변화의 양과 질에 대한 기대치 - 단기목표: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1~3개월 단위의 과정적 목표 설정, 행동이나 인식 변화보다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습득, 이를 통해 새로운 자원의 활용 등 궁극적인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조건의 변화를 목표로 함 - 장기목표: 단기목표 달성을 위해 3~6개월 이상의 개입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역,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표 *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산출을 단기목표로 수립함이 원칙으로 장·단기 목표가 모두 달성되었을 때 종결 ** 단, 3개월 내의 단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목표 작성 없이 단기목표만 작성 가능하며, 수립한 단기목표가 모두 달성됐을 때 목표달성 종결
욕구 영역별 개입목표	▪ 위기도 조사지에서 발견된 욕구 영역별로 구분하여 기록
서비스명	▪ 서비스 목표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자원 및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
우선순위	▪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자립준비청년과 합의에 기반하여 설정 - 대상자의 근로 저해 요소로 판단되는 주요 문제 중에서 단기간 내 제거 가능한 것 - 대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거나 삶에 당장 위험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긴급한 것 - 작고 달성하기 쉬운 것으로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행동적인 것, 대상자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 - 미뤄질 경우 다른 욕구 영역까지 새로운 문제 유발 혹은 욕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
개입 시기	▪ 우선순위와 함께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비스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 긴급성, 현실적 개입 가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별로 1주일 내, 1개월 내, 3개월 내 등 예상 개입 시기를 설정하여 시간 제한적인 개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서비스 기간 및 횟수	▪ 서비스의 충분성과 연관된 것으로 서비스를 통해 기대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 투입량에 대한 잠정적 계획의 의미 ▪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관의 지침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기관의 서비스 제공 지침을 고려하여 서비스 기간 및 횟수를 구체적으로 기록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담당자	▪ 실제로 서비스 제공의 일차책임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명을 기록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 채널 구축 ▪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 기관이 수행기관일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기록 * 예. 일상생활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마트에서 생필품을 후원하였다면 서비스 제공기관은 마트
점검방법	▪ 점검이 이루어진 방법에 대한 기록으로, 대상자 내방, 전화, 방문, 시스템 등 점검 방법 기술

* 서비스 제공 계획표 상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실제로 제공한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함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6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 심사서(서식39)

항목	작성 방법
성과목표별 성과 내용 (단기·장기)	▪ 목표 내용: 대상자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설정한 장·단기 목표 내용 기록 ▪ 성과 구분: 전혀 달성하지 못함(1점), 기대 이하로 달성(2점), 보통(3점), 기대한 정도의 목표 달성(4점), 기대 이상의 목표 달성(5점) 등 목표 달성 여부 및 달성 정도 기록 ▪ 성과내역: 목표별 성과 내용을 기록
서비스 개입 (성과)	▪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기초로, 서비스 지속 제공 여부 필요성, 타 기관 의뢰 필요성 등 종결에 대한 담당자 개인의 전문적인 의견을 기술
대상자 변화 (성과)	▪ 개입을 통해 대상자 및 가족의 변화된 정도를 기술
종결심사 의견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변화를 유도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고 종결 여부 논의 결과 요약하여 기록
종결심사 결과	▪ 대상자를 둘러싼 중대한 환경 및 욕구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욕구조사를 재실시하며 그 외의 경우 종결 처리
종결 유형	▪ 장기목표 달성: 대상자의 욕구·문제점을 진단하여 당초 수립한 장·단기목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단기목표 달성: 대상자의 욕구·문제점을 진단하여 당초 수립한 단기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당초 단기목표만 수립한 경우에 한함 ▪ 계약기간 만료: 사후관리 기간이 5년이 도래한 경우, 일시중지 사유(군입대, 재보호)로 종결이 필요한 경우, 보호연장아동(재보호 포함)의 보호종료로 종결이 필요한 경우 ▪ 상황 호전: 위기도 조사 결과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전후 대상자 취업 등 환경 변화로 위기도 점수가 낮아지는 등 상황이 호전되어 자립지원통합서비스가 불필요한 경우 ▪ 거절이나 포기: 자립지원통합서비스에 대한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또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동의 이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여 자립지원통합서비스의 중단이 야기되는 경우 ▪ 연락두절: 대상자가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락을 끊는 경우 ▪ 이관(이사): 대상자의 이사로 인해 타 지역으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이관해야 할 경우 ▪ 사망: 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자체종결: 기관의 자원·능력의 한계, 소극적 참여 등 ▪ 부정수급: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발견된 경우, 의도 및 목적과 다르게 사례관리비를 집행한 경우, 주거급여 등 국가 지원수당과 중복지원으로 인한 환수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

Part

05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실천

* 적용 권고사항

1. 실천 개요

2. 일반형

3. 집중형

4. 위기형

5. 협조가 어려운 대상자

01. 실천 개요

1. 필요성

-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과정에서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형을 3가지 모델로 구분하여 유형별 목표와 지원 수준, 개입의 강조 조정

- 유형 구분을 통해 대상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며, 유형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업무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

2. 유형

구분	일반형	집중형	위기형
정의	▪ 기본적 욕구 해결 및 자립 준비를 위한 정기적 지원과 모니터링	▪ 복합적·만성적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 곤란 대상에 대한 집중지원	▪ 생명·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위급상황 대응
목적	▪ 안정적 기본생활 유지, 정보·자원 연계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	▪ 복합적 욕구 충족 및 문제 완화, 전문 협력체계 구축	▪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적 위기 개입 및 긴급 보호
대상 기준	▪ 심각성이 낮은 수준, 통합적 자립을 위한 정기 지원 필요자	▪ 정신건강 어려움,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고립·은둔 청년 등	▪ 자해·타해 위험, 학대, 자살, 폭력 등 생명 위협 상황
기간	▪ 중기, 장기	▪ 중기, 장기	▪ 단기
주요 개입	▪ 일상생활·진로진학·사회적 관계 지원, 자원 연계 ▪ 월 1회 정기 대면 면담 권고	▪ 정신건강·경계선지능·고립.은둔 등 집중 개입, 외부 전문 협력 ▪ 월 2회 이상 정기 대면 면담 권고 (필요시 가정방문)	▪ 즉각 위기 개입, 긴급 보호조치, 안전 모니터링 연계 ▪ 위기 상황 안정 시까지 정기적 안부 확인 권고
담당자	▪ 경력 1~2년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정기 슈퍼비전을 받으며 진행	▪ 경력 3~5년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정기 슈퍼비전을 받으며 진행	▪ 필요시 경력 5년 이상의 슈퍼바이저가 직접 진행 또는 사례 지원

* 대상 기준에 따라 집중형 또는 위기형에 해당하나, 심각성이 낮은 경우 일반형으로 관리 가능
** 주요 개입, 담당자 등은 권고사항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현황에 따라 조정 가능

3. 주요 가치

- 대상자의 욕구 충족을 돕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

- 존엄성과 가치: 개인의 차이와 독특성 및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대상자를 대하며 사회적으로 부합하는 자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정의: 대상자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차별·배제하지 않음

- 인간관계: 대상자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실천 수단이고 환경 내 사람들과 좋은 관계 형성이 자립의 최우선 조건임을 인식

- 진실: 실천 가치와 원칙 및 윤리를 준수하며 진실된 태도와 자세로 수행

- 역량: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4. 실천 원칙

- 자립준비청년 중심 실천
  - 자립지원전담인력, 자립지원전담기관 중심의 실천이 아닌 자립준비청년 중심 실천
  - 단순 서비스·자원 제공이 아닌 대상자의 잠재력과 강점을 극대화하여 전 과정에 함께 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주체가 되도록 지원
  - 자립준비청년과 신뢰 기반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 과정에서 의견과 참여, 선택권 보장

- 자립준비청년의 참여와 역량 강화
  - 자립지원통합서비스는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자립역량 강화
  -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및 자원 연계 전반에서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병리적 측면보다 내재된 강점, 탄력성과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세워 가는데 초점

- 욕구에 맞는 맞춤형 포괄적 서비스 제공
  - 대상자의 욕구를 구체화하고 이를 욕구로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립준비청년과 협의를 통해 상호합의된 욕구를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
  - 주요 욕구 영역을 중심으로 삶의 전 영역에 표출되는 욕구를 포괄적으로 사정하고 통합적으로 서비스 제공

-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적 접근
  - 포괄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분리된 전문가와 서비스 전달체계 연결 및 조정
  - 자립지원전담인력은 다양한 자원과 전달체계 간 중재자 혹은 권익 옹호자 역할 수행

- 자립지원 서비스의 연속성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욕구를 점검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속 제공
  - 단회적·단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대상자가 일상의 자립 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 원조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5. 주요 관점

- **생태체계 관점:** 개인과 환경 간 긍정적 관계를 통해 대상자의 유능성 증진 및 역량 강화에 초점
  - 대상자의 어떠한 문제도 대상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의 산물로 봄
  - 문제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 대상자와 협력관계 형성
  - 대상자의 행동은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문화체계 등 다차원에서 이해
  - 대상자의 어려움에 대한 전체적 이해와 다양한 변수를 객관적으로 사정·평가하는데 유용한 틀 제공
  - 둘러싼 체계에 대한 종합적 사정, 강점과 자원을 확장해 임파워먼트 향상 지원, 당사자 중심의 지지체계 및 관계망 구축

- **강점 관점:** 모든 인간은 강점이 있다는 전제로 강점을 부각하여 자원 재조직 및 자아존중감·효능감 향상에 초점
  - 대상자의 외상과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이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
  - 대상자는 변화를 위한 자원과 역량이 있으며 새로운 자원 구축을 위해 현재 강점을 기반으로 상호작용 및 협력
  - 문제가 아닌 강점과 자원에 초점, 대상자의 능력·재능·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여 스스로 문제해결
  - 문제보다 강점과 자원에 초점을 두고 접근, 파트너십을 통해 대상자의 능력향상 지원

- **임파워먼트 관점:** 무력감을 느끼는 개인, 가족, 조직, 지역사회가 잠재적 힘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힘을 형성하고 자신과 환경에 통제감을 가지도록 돕는 관점
  - 대상자가 다양한 환경의 내재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인, 대인관계, 지역사회 수준에서 다차원적으로 개입
  - 대상자의 언어로 목표, 계획 등을 표현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

- **역량기반 실천 관점:** 대상자를 강점, 잠재력, 회복력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여 역량 중심으로 주도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돕는 관점
  - 부족한 것을 보충하거나 욕구를 채우는 수준의 목표가 아닌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원을 조직·활용하는 역량 강화
  - 스스로 정책·제도·지역사회 자원 등을 활용하고, 또래 및 시민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인적·사회적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
  - 자립지원전담인력은 동반자·촉진자·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계의 수평성과 상호존중 유지

6. 실천 기술

- 라포형성 및 관계 맺기 기술
  - 자립준비청년 맥락의 특수성
    - 애착 트라우마: 관계 단절 경험으로 신뢰 관계 형성이 오래 걸리며 의미 있는 관계에 욕구가 높으나 직접 표현하지 않고 초기 라포형성 과정에서 거부나 지나친 의존 등 불안정한 관계 형성의 특성을 보일 수 있음
    - 자립 압박감: 혼자 해내야 한다는 부담·압박으로 도움 요청 및 의존이 스스로 약한 존재가 된다고 인식할 수 있으므로 자립은 혼자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도움과 의존이 필요함을 안내
    - 불안정한 생활 현실: 주거, 경제적 불안정, 관계의 어려움 등 예측 어려운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상황 변동, 약속 불이행 등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나 비난하지 않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
  - 단계별 관계 형성 전략
    - 초기(신뢰 구축): '이 사람은 안전하다' 느끼게 하기
      - · 경청·공감·비심판적 태도, 약속 지키기, 과도한 질문이나 조언 자제, 청년 속도 존중
    - 중기(관계 심화): '나를 이해하고 함께 한다' 확신시키기
      - · 진정성·일관성·적절한 자기 개방으로 신뢰 관계 구축
      - · 변화를 위한 과정을 함께 하는 공동 작업임을 알리고 함께 함
      - · 자립지원전담인력에게 의존하기보다 함께 하는 가운데 독립적으로 협력하기를 알림
    - 종결기(건강한 분리): 관계는 끝나도 변화는 남는다는 믿음 갖기
      - · 종결의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고 그동안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격려
      - · 미래 연결망 확보(필요 시 재연결 가능 안내, 버림받는다는 느낌 최소화)
  - 관계 형성 방해 요인 대처방안
    - 저항·거부: 압박하지 않고 준비될 상황을 기다리기
    - 실무자 선입견: 대상자에 대한 선입견, 편견에 대해 성찰, 슈퍼비전, 청년 고유성 인정
    - 시간 부족: 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지만 짧아도 집중된 만남을 갖도록 함
    - 잦은 실무자 교체: 담당자 변경 시 미리 상황을 공유하고 양해 구하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핵심 정보를 반복 요구하지 않도록 함, 관계 재구축의 시간·기회 마련
    - 과도한 사례량: 많은 사례량과 업무로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 사례 구분 및 현실적 목표 설정

- 강점 발견 및 재구성 기술
  - 1단계(강점 발견 및 관계 형성): 생존 이야기 경청, 강점·자원 탐색
    -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나요?'
  - 2단계(목표 설정): 미래 그리기, 기적 질문으로 원하는 미래 구체화
    - '기적이 일어나면 내일 아침은 어떤 모습일까요?'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3단계(예외와 성공 탐색): 문제없는 때, 잘했던 때 찾기
    - '조금이라도 나았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 무엇을 다르게 했나요?'
  - 4단계(작은 변화 실험): 기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작은 행동계획
    - '다음 주까지 아주 조금이라도 새롭게 시작해 볼 활동이 있을까요?'
  - 5단계(변화 인정 및 확대): 작은 변화라도 크게 축하, 진전 측정
    - '와! 어떻게 그걸 해냈나요? 무엇을 계속하면 좋을까요?'

- 해결 중심 단기 치료 기반 질문 기술
  - 문제 원인보다 해결책에 초점을 두고 원하는 미래를 그리며 이미 잘하는 것과 작은 변화를 확대하는 치료법
  - 기적질문(목표 구체화): 오늘 밤 기적이 일어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내일 아침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알아볼까요?
  - 예외질문(해결책 발견):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때는 언제인가요?, 그걸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척도질문(변화 측정): 0~10점 중 지금은 몇 점인가요?, 어떻게 지금 점수까지 올라왔나요?(강점 확인)
  - 대처질문(회복탄력성 인정):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나요?,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게 했나요?
  - 관계질문(강점 발견):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의 어떤 점을 좋아할까요?, 가장 친한 친구는 당신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 이미 하고 있는 것 질문(현재 성공인식):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걸 어떻게 해낼 수 있었나요?

- 과제중심 코칭기술
  - 스스로 선택한 구체적 문제를 단기간에 과제 수행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협력적 개입 방법
  - 핵심 원칙: 대상자 자기 결정권 존중, 문제해결 주체는 대상자, 계약 기반, 구조화된 과제 중심
  - 실천 단계
    - 1단계: 시작(1~2회) – 탐색·계약
      - · 가장 힘든 문제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하나요?
      - · 대상자가 직접 선택한 표적 문제 최대 3개 선정하여 문제, 목표, 기간·횟수, 역할 명시
    - 2단계: 계획(1~2회) – 목표설정·과제개발
      - ·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행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할 수 있을까요?
      - · 문제당 목표 1개 설정, 일반적 과제는 방향 제시, 조작적 과제는 구체적 행동
    - 3단계: 실행 – 과제 수행 코칭(회기별 코칭 7단계 적용 가능)

과제 아이디어 생성	동기 강화	행동계획	장애물 예측	모의실험	과제 동의	요약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왜 중요한가요? 성공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건가요?	방해 요소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역할극으로 예행연습	이번 주 이것을 하시겠어요? (명확한 확인)	회기 종료 전 과제 정리

· 인식점검: '과제는 어떻게 되었나요?' → 격려: '○○을 해내셨네요!'

· 인식 증진: 새로운 관점 제공 → 지시: 전문가 대안 제안

· 수정: 효과 없으면 즉시 과제 조정

· 매회기 과제 수행 점검 및 기록, 성공 강화, 실패는 학습으로 재구성, 필요시 자원 연결, 환경 조정

– 4단계: 종결(마지막 1~2회) – 평가·미래 설계

· 처음과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나요?, 무엇을 배웠나요?,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목표 달성 구체적 확인, 습득 기술 정리, 사후관리 계획 또는 타 기관 연계

· 조력자, 안내자, 격려자, 점검자로서 지시가 아닌 질문, 해답 제공보다 스스로 찾도록 지원

· 모델이 적합한 경우 구체적 문제, 해결 의지·동기, 2~4개월 집중 개입 가능

· 모델이 부적합한 경우: 낮은 동기(동기 강화 면접 선행), 트라우마·심리 문제(심리상담 병행), 만성적 문제(장기 사례관리 연계)

• 역량 기반 사례관리

▸ 초기 접수 및 관계 형성 단계

– 강점, 생존력, 흥미와 재능 발견에 초점

– 취미, 잘해왔던 경험 등 일상적 이야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점을 드러내도록 유도

–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보다 앞으로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질문

– 대상자의 선택과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협력적 과정임을 경험하게 함

▸ 사정 단계

–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와 위험 요인 확인하고 강점·자원 사정 도구 활용

– 어떤 상황에서 잘 버텨왔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본 경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색

– 개인(성격적 강점, 기술, 흥미), 가족·친인척, 주변인(선생님, 멘토), 지역사회(청년센터, 동아리, 온라인 커뮤니티) 수준의 자원 목록화

– 작은 자원과 경험도 의미 있게 재해석하는 작업 병행

▸ 계획 단계

– 진로·학업, 주거·재정, 신체·정신건강, 대인관계·가족, 여가·자기개발 등 주요 생활영역별 구체적 역량 목표 설정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역량 목표마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누구와 함께, 어떤 자원을 활용해 실행할 것인지 세부 계획 작성

– 대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반영해 스스로 선택·조정

▸ 개입 단계

–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서비스를 직접 해주는 사람이 아닌 촉진자로 대상자가 필요한 정보와 기회를 찾고 활용하도록 안내

– 자원 탐색·연계, 기술 학습 기회 제공, 의사결정 지원 등을 통해 대상자의 실행 능력(계획, 선택, 요청, 조정) 향상에 초점

– 선택이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어떻게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함

▸ 모니터링 및 평가 단계

– 서비스 이용량보다 청년의 내적·사회적 역량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중심으로 점검

– 자기효능감, 문제대처 능력, 실패 후 회복 능력, 의사 표현 능력 등 함께 점검

– 사회적 지지망 확대, 정책·제도 활용 능력을 정기적으로 확인

– 평가 결과는 성공·실패 판정보다 어떤 역량이 자랐고, 앞으로 무엇을 더 연습하고 싶은지 정리하는 학습 도구로 활용

02. 일반형

1. 대상

- 욕구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수준의 대상자
- 집중 및 위기 수준은 아니나 통합적 자립을 위한 정기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중 일상 문제의 어려움이 심각하고 복합적일 경우 집중형으로 전환 가능
  * 예. 보호종료 후 생애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 청년, 자기관리 및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2. 목표

- 대상자의 욕구 충족 및 기본 문제해결을 통한 안정적인 기본생활 유지
- 정보 및 자원 연계, 관계적 지지 강화를 통한 동기부여로 당사자의 자립역량 강화

3. 주요 내용

- 기본적인 욕구 해결을 위한 서비스와 자원 연계
- 필요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직접적 개입을 통한 주기적 모니터링
- 제시된 욕구에 대한 소규모 자원 및 서비스 연계
- 정기 대면 면담(월 1회 내외)을 통한 자립 준비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점검 과정에 대한 상담, 정보 및 자원 연계 진행
- 자립생활과 추가 욕구 및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자원 연계 및 개입
- 주요 접근 방법: 일상생활지원, 진로 및 진학지원, 사회적 관계 지원
-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역할: 상담자, 격려자, 정보제공자
- 자립지원전담인력(권고): 경력 1~2년의 인력이 정기 슈퍼비전을 받으며 진행

4. 실천 방법

- 일상생활지원
  - ▸ 지원 목표
    - 독립적 생활을 위한 기본적 일상생활 기술 습득 및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 자기관리 능력향상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유지
  - ▸ 지원 방법
    - 월 1회 정기 대면 면담을 통한 생활 실태 점검 및 상담
    - 필요시 가정방문 또는 현장 동행을 통한 직접 지원
    - 관련 기관(주민센터, 복지관, 의료기관 등) 연계 및 이용 모니터링
    - 온라인 메신저 등을 활용한 수시 소통 및 정보 제공
  - ▸ 유의점
    - 지나친 개입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격려 중심으로 접근
    - 일상생활 문제가 누적되어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선제적 모니터링
    - 청년의 생활 리듬과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면담 일정 조정
    -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되,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적극 개입
    - 특히 주거 불안정, 정신건강 문제, 신체·건강 악화 등 심한 어려움이 발견될 경우 집중 사례 또는 위기 사례로 전환 검토
  - ▸ 주요 지원 내용

① 주거 및 생활환경 지원

- 주거 안정성 점검 및 정보 제공: 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 및 갱신 시기 점검, 공과금 납부 방법 및 자동이체 설정 안내, 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 지원
-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거환경 개선 필요 사항 파악(곰팡이, 난방, 누수 등), 관련 자원 연계(LH 주거개선 프로그램, 지자체 주거 지원사업 등)
- 기본생활 물품 지원: 필요시 자원 연계(가전제품, 가구, 생필품 등)

실천 TIP	■ 주거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위험 요소(화재, 누수 등)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음 ■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 확인 필요

② 금전 관리 및 경제생활 지원

- 재무관리 상담 및 교육: 월별 수입·지출 관리 상담 및 기본적 재무관리 교육 제공, 공공부조 및 복지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보장, 청년수당 등), 금융기관 이용, 저축 계좌 개설 등 금융 생활 정보 제공, 과도한 부채 발생 여부 모니터링 및 필요시 금융복지상담 연계
- 공공부조 및 복지급여 안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확인 및 신청 지원, 청년수당, 근로장려금 등 청년 대상 복지급여 안내, 복지로, 온라인 청년센터 등 복지정보 플랫폼 이용 방법 안내

- 금융 생활 정보 제공: 금융기관 이용 방법 안내(계좌 개설, ATM 사용법 등), 저축 계좌 개설 권유 및 자동이체를 통한 저축 습관 형성 지원,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안내
- 부채관리: 과도한 부채 발생 여부 모니터링, 필요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불법 사금융 이용 징후 발견 시 즉시 개입

실천 TIP	▪ 금전 관리가 어려운 청년은 간단한 가계부 양식을 제공하고 함께 작성 ▪ 스스로 정보를 찾고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③ 건강관리 지원
- 건강 상태 확인 및 의료기관 이용 안내: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 확인(수면, 식사, 통증 등), 의료기관 이용 방법 안내(병원 예약, 진료 절차 등),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및 수검 독려
-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미가입 시 가입 지원, 의료비 지원제도 안내(의료급여, 긴급 의료비 지원 등),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정보 제공
- 건강관리 습관 점검: 기본적 건강관리 습관 점검(식사, 수면, 운동), 건강한 생활 습관 격려 및 정보 제공, 과다 흡연, 음주 등 건강위험 행동 확인

④ 일상생활기술 지원
- 기본 가사 기술 지원: 기본적 가사 기술 수준 파악(조리, 청소, 세탁 등), 필요시 정보 제공 또는 교육 및 프로그램 연계, 간단한 요리법, 청소 방법 등 안내
- 지역사회 자원 활용 안내: 관공서 방문 시 필요한 절차 안내, 지역 내 편의시설·복지관·문화시설 등 안내
- 생활 문제해결 지원: 생활 속 발생하는 문제 상담, 함께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 정보 제공, 필요시 직접 도움 제공 또는 자원 연계

실천 TIP	▪ 가정방문 시 냉장고 내용물, 청소 및 세탁물 관리 상태 등을 자연스럽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함께 정리하면서 방법 안내

• 진로 및 진학지원

▸ 지원 목표
- 청년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탐색 및 구체적 진로 목표 수립
- 교육·훈련·취업 등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자원 연계를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지원 방법
- 월 2회 정기면담을 통한 진로 준비 과정 점검 및 상담
- 청년 관련 교육·취업 정보 정기 제공(문자, 메신저 등 활용)
- 진로 및 취업 관련 자원 연계(고용24,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워크넷 등)
- 필요시 동행 지원 제공(면접, 상담기관 방문 등)
- 진로 관련 지역사회 멘토 연결 또는 자조 모임 연계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유의점
- 청년의 진로 선택권을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되, 현실적 정보 제공
-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진로 계획수립 지원
- 반복적 실패나 좌절 경험 시 심리·정서적 지지 병행
- 진로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자원 연계를 병행
- 장기 미취업 또는 학업 중단 위기 시 집중 사례로 전환 검토
- 노동착취, 직장 내 괴롭힘 등 위기 상황 발견 시 즉시 개입

▸ 주요 지원내용

① 진로 탐색 및 목표 수립 지원
- 진로 욕구 파악: 진로 관련 욕구 및 관심 분야 파악을 위한 상담, 직업에 대한 가치관, 희망하는 생활방식 등 탐색
- 적성 및 흥미 파악: 진로에 확신이 없는 경우 적성·흥미 파악을 위한 진로 검사 연계(고용노동부 워크넷, 커리어넷 등), 검사 결과를 함께 해석하며 진로 방향 논의
- 진로 목표 수립: 단기·중기 진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정기면담을 통한 진로 계획 점검 및 수정

실천 TIP	▪ 진로가 불명확한 경우 다양한 직업 정보를 탐색하도록 과제를 부여하고,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일 경험) 참여 등 권유

② 학업 및 교육훈련 지원
- 재학 중: 학업 지속 과정 중 어려움 상담 및 점검(예: 낮은 학점, 스펙 관리의 어려움 등), 학자금 지원제도 및 경제적 지원 정보 안내(민간장학금 등 연계),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 시 학업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필요시 안정적인 아르바이트 탐색 등 지원(예: 과도한 야간 아르바이트로 학교 수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
- 진학 희망: 진학을 위한 학습계획수립, 진학 준비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점검, 대학 진학 정보, 입시상담 기관, 장학금 정보 등 안내
- 직업교육훈련 희망: 관심 자격증과 정보를 함께 탐색하고 국비 지원훈련 정보 및 기관 연계(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자기부담금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비용으로 지원, 교육 참여 중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참여 과정 모니터링 및 상담·격려

실천 TIP	▪ 교육과정 선택 시 수강료, 기간, 교육장소, 취업연계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안내 ▪ 정부연계지원제도 우선적으로 활용, 정보취합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독려

③ 취업 및 직업생활 지원
- 구직활동 지원: 구직 관련 정보 제공(청년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독려 및 수정 보완, 면접 시 예상 질문, 태도 등 준비, 필요시 복장(대여) 등 지원
- 구직제도 안내: 구직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관련 제도 안내,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안내

- 직장 적응 지원: 취업 후 직장 적응 어려움 상담, 근로 권익 정보 제공(근로계약서, 4대 보험, 최저임금 등), 직장 내 문제 발생 시 노동 상담기관 연계

실천 TIP	▪ 구직 과정에서 반복적 거절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 지지와 격려 중요함 ▪ 작은 성공 경험(면접 기회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 및 격려

④ 경력개발 및 자립준비 지원
- 경력개발 기회 제공: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 경력개발 기회 정보 제공, 직업 체험 프로그램 연계
- 창업 지원: 청년창업 지원제도 안내 및 관련 기관 연계(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 경제적 자원 확보 계획: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 확보 계획수립 지원, 저축 계획수립 독려

• 사회적 관계 지원

▸ 지원 목표
-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향상
-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 구축을 통한 관계적 자립역량 강화

▸ 지원 방법
- 월 2회 정기 대면 면담을 통한 관계 현황 점검 및 상담
- 자조 모임, 집단프로그램 등 집단 활동 기회 제공 및 참여 격려
- 지역사회 청년 관련 기관·시설과의 협력을 통한 관계망 확장 지원
- 온라인 소통 채널을 활용한 수시 안부 확인 및 격려
- 필요시 심리상담 전문기관 연계

▸ 유의점
- 과거 시설·위탁가정에서의 부정적 관계 경험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자립지원전담인력과 관계가 모델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일관되고 존중하는 태도 유지
-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유일한 지지체계가 되지 않도록 유의
- 청년의 관계 형성 속도와 방식을 존중하되, 과도한 고립 개입
- 관계에서의 착취나 학대 징후 발견 시 즉시 위기 사례로 전환
- 애착 및 관계 형성에 깊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집중 사례 전환 또는 심리치료 연계 검토
- 관계 문제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지 지속적 모니터링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지체계가 마련되도록 사전 준비

▸ 주요 지원내용

① 관계 현황 파악 및 상담
- 현재 관계망 파악: 가족, 친구 등 관계망 현황 및 관계의 질 점검(연락 빈도, 친밀도, 갈등 여부 등), 대인관계 어려움 및 갈등 상담
- 관계기술 안내: 관계 형성 및 유지에 필요한 의사소통 기술 안내, 경계 존중, 갈등 해결 방법 등 안내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원가족 관계: 원가족 관계 회복을 희망하는 경우 가족 상담기관 연계, 원가족이 지지망이 되는 경우 적절한 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지원 제공*

  * 단, 원가족과 경제적 착취, 폭력 등을 경험한 경우 대상자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 단절 및 경계 유지를 위한 상담 필요

② 사회적 관계망 확장 지원
- 또래 관계 형성 기회: 자립준비청년 자조 모임, 동아리 활동 등 또래 관계 형성 기회 제공, 소그룹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 권유
-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계: 지역사회 내 청년 참여 프로그램 정보 제공 및 연계(청년미래센터, 청년센터 등), 관심사에 맞는 모임이나 활동을 찾도록 지원
- 사회참여 기회 안내: 자원봉사활동, 취미활동 등 사회참여 기회 안내, 지역사회 행사 참여 권유

  * 첫 모임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사례관리자가 동행하거나 다른 청년을 소개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됨

- 온라인 관계 안내: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시 안전한 관계 형성 방법 안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③ 지지체계 구축 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결: 지역사회 내 자원과 연결(복지관, 청년공간 등),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안내
- 멘토링 프로그램 연계: 멘토·멘티 프로그램 연계(자립지원 멘토링, 직업멘토링 등), 동료 자립준비청년과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 지지자 발굴: 신뢰할 수 있는 성인 지지자 발굴, 관계 유지 격려 및 지원

④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 및 정보 제공
- 관계기술 정보 제공: 경계 존중, 갈등 해결 등 관계기술 관련 정보 제공, 의사소통 방법, 감정 표현 방법 등 안내
- 위험한 관계 예방: 데이트폭력, 성폭력 등 위험한 관계에 대한 예방 교육 정보 제공, 건강하지 않은 관계의 징후 안내
- 집단프로그램 연계: 필요시 관계 관련 집단프로그램 연계(사회기술훈련, 의사소통훈련 등)

⑤ 사회적 고립 예방
- 고립도 모니터링: 정기면담을 통한 사회적 고립 정도 모니터링, 관계 단절 징후 발견 시 적극 개입 및 상담
- 심리·정서적지지: 고독감, 외로움 호소 시 심리·정서적 지지 제공, 필요시 심리상담 전문기관 연계

03. 집중형

1. 대상

- 복합적 욕구와 문제의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만성적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

- 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일정 기간 집중적이고 시급한 지원과 내외부의 전문 협력체계를 통한 심층적 개입 필요

* 예. 정신건강 어려움,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고립·은둔 청년 등이 있으며, 기타 범죄연루, 젠더 이슈 등 집중 관리 및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다양한 대상

2. 목표

-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심한 어려움 완화

- 심리적, 경제적, 관계적 지지의 복합적 지원 및 외부 전문 협력체계를 통해 문제해결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 복합적 문제해결의 상태의 완화 및 해결 과정 마련

3. 주요 내용

- 복합적이고 심한 욕구와 문제에 대한 집중적 자원 및 서비스 연계

- 긴밀한 정기면담(월 2회 내외) 및 일상생활관리, 자립준비의 어려움 완화 및 해결을 위한 개별상담, 다양한 자원 연계 및 서비스 연계 등

- 문제해결 과정 모니터링, 외부 기관 의뢰(예: 희망복지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및 통합 사례관리

- 주요 접근내용: 정신건강 어려움,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고립·은둔 청년 등에 대한 개입

-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역할: 상담자, 격려자, 정보제공자, 치료자, 자원 연계자 등 집중 상담

- 자립지원전담인력(권고): 경력 3~5년의 인력이 정기 슈퍼비전을 받으며 진행

4. 실천 방법

- 정신건강 어려움 청년
  - ▸ 지원 목표
    - 만성적 정신건강 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일상생활 기능 유지 및 향상
    - 전문적 치료 및 서비스 연계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재발 방지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생활 기반 마련
  - ▸ 지원 방법
    - 월 2회 이상 정기 대면 면담 및 필요시 가정방문
    -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통합사례관리 진행
    - 정신건강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자문 및 슈퍼비전 실시
    -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사례회의 개최
  - ▸ 유의점
    -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없이 대상자를 존중하며, 자기 결정권 최대한 보장
    - 증상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계획 수립
    - 약물치료와 심리사회적 개입의 통합적 접근
    -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의견 존중
    - 증상 악화 또는 위기 징후 발견 시 즉시 위기사례 전환
    - 자립지원전담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정기적 슈퍼비전 운영
  - ▸ 주요 지원내용

① 정신건강 상태 평가 및 모니터링

- 정신건강 선별검사: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전문기관 평가 연계(정신건강복지센터, 병·의원 등)

  * 우울척도, 불안척도 등 활용(부록5~11)

- 정기적 증상 확인: 월 2회 이상 정기면담을 통해 증상 변화 확인, 약물복용 여부 확인, 일상생활 기능 수준 확인
- 자기 증상 인식 능력 향상: 정신건강 일지 작성을 지원하여 자기 증상 인식·관리 능력 향상

실천 TIP	▪ 정신건강 문제는 변동성이 크므로 최근 증상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기록 ▪ 증상 악화 징후(불면, 식욕 저하, 무기력, 환청, 망상 등) 주의 깊게 관찰

② 전문적 치료 및 서비스 연계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정기적 치료 지속 지원
- 약물치료 관리: 약물치료 순응도 점검, 복약 관리(복약 알림, 약 보관 방법 등), 약물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도록 안내
- 심리상담, 심리치료, 정신 재활 프로그램 연계
-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 적극 활용(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

실천 TIP	■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예약하거나, 첫 진료 시 동행하여 의료진에게 상황 설명 ■ 약물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 치료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되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

③ 일상생활 기능 회복 지원

-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지원: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집중 지원(위생관리, 식사, 수면 등),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제공
- 규칙적 생활 리듬 확립: 규칙적인 일과 계획수립 및 실천 지원, 수면·식사·활동 시간 등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도록 격려
- 건강관리 및 경제생활 지원: 건강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상담, 필요시 경제생활 지원(공공부조 신청, 의료비 지원 등)

실천 TIP	■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은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되기 쉬우므로, 작은 목표(하루 한 끼 제대로 먹기, 정해진 시간에 잠자기 등)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지원

④ 사회적 기능 회복 및 진로 지원

- 대인관계 기술 향상: 대인관계 기술 향상 프로그램 연계, 당사자 자조 모임 연계
- 사회활동 참여 지원: 주변의 다양한 사회활동 안내 및 참여 독려, 낙인 극복을 위한 심리·사회적 지지 제공
- 단계적 진로 계획수립: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한 단계적 진로 계획수립, 직업 재활 서비스 및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 정신장애인 고용지원제도 연계,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지지하되 현실적이고 단계적 목표 설정 필요

•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청년

▸ 개념

구분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IQ	■ 71~84	■ 통상 70 이하
특징	■ 지적장애 기준 미달, 인지력·사회성 부족으로 학습·대인관계·경제적 자립 어려움 ■ 장애 등록 불가하여 공적 지원 사각지대	■ 지적 기능, 적응 행동(개념적·사회적·실제적 기술) 제한 ■ 일상생활에 지속적 지원과 보호 필요
주요 욕구	■ 판단력 부족으로 금융 사기 피해, 사회적 고립 가능성	■ 복잡한 사회 시스템 이해, 의사결정 곤란 ■ 후견인 선임, 전문적 개입, 밀착 생활 훈련 등 체계적 보호망 필수

▸ 지원 목표

-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기능 향상
- 복지 서비스 연계 및 권익옹호를 통한 사회적 보호체계 구축
- 당사자의 강점 기반 자립역량 개발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지원방법

- 월 2회 이상 정기 대면 면담 및 필요시 가정방문·현장 동행
- 필요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과 통합 사례관리
- 시각적 자료, 체크리스트 등 이해하기 쉬운 도구 적극 활용

▸ 유의점

- 학습 속도를 존중하고 천천히, 간단명료하게 의사소통하며,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접근 방법 활용
-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당사자의 강점에 초점
- 발달연령과 생활연령의 차이 고려하고, 과보호와 방임 사이의 적절한 균형 유지
-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권리침해 상황에 민감성 유지 및 즉각 대응

▸ 주요 지원내용

① 인지기능 평가 및 필요시 장애 등록 지원

- 지능검사, 적응행동평가(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인지적 강점·약점 파악, 개별화된 지원계획 수립
- 장애 진단 및 등록 절차 지원, 장애인 연금, 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 신청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원

실천 TIP	■ 경계선 지능이나 지적장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 의뢰하여 전문적 평가를 받도록 함 ■ (해당 시) 장애 등록을 권유하되 당사자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장점 설명

② 의사소통 및 일상생활기술 지원

- 의사소통 도구 활용: 쉬운 언어, 그림, 사진 등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 활용,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천천히 반복 설명, 의사결정 시 충분한 시간과 정보 제공

* Easy Read: 독자의 문해력 수준에 적합한 쉬운 어휘·문장과 그 의미 전달을 돕는 삽화·사진 등 시각 자료를 결합하여 내용을 수월하게 이해하도록 만든 자료
AAC: 발화만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 보완적 또는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그림 카드, 애플리케이션 등)

- 생활 기술 교육: 개인위생, 식사 준비, 청소 등 기본 생활 기술 반복 교육, 대중교통 이용, 금전 관리 등 지역사회 기술을 훈련함, 위험 상황 대처 방법 교육

실천 TIP	■ 설명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단계별로 나누어 천천히 설명 ■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설명해달라고 요청 ■ 시각적 자료(그림, 사진, 동영상 등) 활용 ■ 반복 학습이 필요하므로 인내심을 갖고 여러 번 알려줌

③ 권익옹호 및 학대 예방

- 인권 및 자기 옹호 교육: 장애인 인권 및 자기 옹호 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 권리침해 상황 모니터링: 금전적 착취, 노동착취, 학대 등 권리침해 상황 모니터링, 의심 상황 발견 시 즉각 조사,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법률구조기관 연계
- 법적 보호장치 연계: 성년후견제도, 의사결정 지원제도 등 법적 보호장치 연계

④ 직업 및 진로 지원
-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 진로 계획수립
- 직업능력평가 및 직업 재활 서비스 연계
- 보호작업장, 일반기업 등 적합한 고용 형태 탐색함, 직장 적응 지원

⑤ 상호작용 태도
- 속도 조절 및 인내심: 충분한 시간 제공, 즉각적 반응을 기대하지 않으며, '빨리' 등의 표현을 피하고 당사자의 처리 속도 존중
- 반복 및 확인 기법: 같은 내용을 다양한 방식(말→그림→실습)으로 여러 번 자연스럽게 반복하고, 중요한 정보는 주기적으로 재확인하여 학습 강화
- 이해 확인 방법: '제가 말한 것을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처럼 티치백(Teach-back) 기법을 사용하고, 실제로 해보도록 하여 이해도를 점검하며 비언어적 신호 관찰
- 단계적 접근 및 언어 사용: 복잡한 과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짧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한 번에 하나의 아이디어만 전달
- 실수와 좌절 대응: 실수를 학습 과정으로 재정의하고 부분적 성공을 강조하며 과제가 어려우면 더 작은 단계로 세분화하여 성공 경험을 늘림

• 고립은둔청년

▸ 지원 목표
- 사회적 고립 상태 완화 및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 회복
- 단계적 사회참여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재통합
- 심리·정서적 안정 회복 및 자립생활 동기 강화

▸ 지원 방법
- 월 2회 이상 정기 접촉(대면, 비대면 혼합 가능)
- 초기에는 대상자가 편한 방식과 장소에서 만나고 필요시 가정방문 및 외출 동행 지원
-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전문기관 연계,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통합 사례관리

▸ 유의점
- 고립·은둔에 대한 낙인 없이 대상자의 속도를 존중하며 천천히 신뢰 관계 형성
- 강압적 개입이나 급격한 변화 시도는 역효과 유발 가능
- 작은 변화도 충분히 인정하고 격려하며, 반복되는 좌절에도 지속적 관심 표현
- 정신건강 문제가 동반된 경우 전문적 치료 병행 필수
- 온라인상 관계나 활동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음
- 자립지원전담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정기적 슈퍼비전 및 동료 지지 중요
- 장기간 변화가 없어도 인내심을 갖고 관계 유지

▸ 주요 지원내용

① 고립·은둔 상태 평가 및 신뢰 구축

- 현재 상태 파악: 사회적 고립척도 HQ-25(부록11)를 활용하여 고립·은둔 정도, 지속 기간, 원인 및 배경 탐색, 현재 생활 실태 및 일상생활 기능 수준 파악
- 신뢰 관계 형성: 강압적이지 않은 접근과 충분한 시간 제공, 대상자가 편안해하는 방식으로 소통, 초기에는 짧고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경청,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상담 관계 유지

실천 TIP	▪ 대면 접촉을 매우 불편해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전화나 온라인 메신저로 관계 시작 ▪ 약속을 지키고 일정한 간격으로 연락하여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 ▪ 첫 만남 시 상담실보다 청년이 편안한 장소(집, 카페 등)에서 만나는 것이 좋음 ▪ 질문: '집에서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언제부터 밖에 나가기 힘들어지셨나요? 온라인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② 기본생활 안정화 및 심리·정서적 지원
- 생활 안정화 지원: 주거환경 및 건강 상태 점검, 의료기관 방문 지원(동행 포함), 영양 및 위생 지원,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한 복지급여 신청 지원
- 정신건강 문제 선별: 우울, 불안, 사회공포증 등 정신건강 문제 선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 연계
- 정서적 지지: 정서적 안정 및 자존감 회복을 위한 지지적 상담 제공

실천 TIP	▪ 우울증, 사회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지 평가하고,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 연계 ▪ 단, 치료를 강요하면 관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함

③ 단계적 사회참여 지원
- 1단계: 사례관리자와의 정기적 만남 유지
- 2단계: 짧은 외출 시도 동행 지원
- 3단계: 소규모 그룹 활동 참여
- 4단계: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 5단계: 교육·훈련 또는 취업 준비 활동 참여

실천 TIP	▪ 각 단계는 청년의 준비 정도에 따라 진행하며, 강요하지 않음 ▪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음 ▪ 작은 성공 경험(5분 외출, 한 사람과의 대화 등)도 크게 격려 ▪ 실패하더라도 비난하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지지

④ 관계망 구축 및 온라인-오프라인 연결
- 온라인 관계 파악: 온라인 관계 및 활동 현황 파악, 긍정적 온라인 활동 격려
- 온-오프 연결: 온라인 소통을 통한 관계 형성 후 점진적으로 대면으로 전환
- 관계 회복 및 새로운 관계 형성: 은둔청년 자조모임 연계, 지역사회 내 은둔청년 지원 프로그램 및 멘토 연결

실천 TIP	▪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음. 오히려 온라인 관계를 활용하여 오프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음 * 예. 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들과 오프라인 모임,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소모임 형성

04. 위기형

1. 대상

- 자해·타해 위험, 학대, 자살, 폭력 등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청년
- 즉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보호조치와 개입이 필요한 경우

2. 목표

- 대상자의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적 위기 개입 및 긴급 보호 연계
- 위험하고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과 개입을 지원하여 문제해결
- 24시간 긴급 대응체계 구축 및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한 신속한 위기 상황 안정화

3. 주요 내용

- 위급상황에 대한 긴급 개입 및 보호조치, 사례관리자와 외부 전문 협력체계(전문가)의 즉각적 협력 개입을 통한 위기 해결 및 안정화 지원
- 생명 및 안전 위협 상황에 대한 긴급 개입 및 즉각적 보호조치
- 집중 관찰 및 상담을 통한 위기 상황 모니터링 및 안정화 지원
- 외부 전문기관 연계(예: 경찰,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 및 긴급 통합사례관리
- 위기 상황 안정화 이후 3개월 간 집중 모니터링하고 집중형 또는 일반형으로 전환
- 주요 접근내용: 자해 및 자살시도, 학대 및 폭력피해 등
-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역할: 위기개입자, 긴급지원자, 자원연계자, 협력조정자
- 자립지원전담인력(권고): 필요시 경력 5년 이상의 슈퍼바이저가 직접 진행 혹은 개입 지원

4. 실천 방법

- 자해 및 자살 시도

▸ 지원 목표
- 자해·자살 위험 의심 상황에서 전문 위기 대응체계로 신속히 연계하여 생명 안전 확보
- 기관 내·외 협력체계를 통해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지 않는 위기 대응 환경 조성
- 전문 치료 및 지역 안전망 연계를 통해 위기 재발 예방 및 안정적 회복 지원

▸ 지원방법
- 위기 징후 인지 시 즉시 기관 내 보고 및 전문기관 연계
- 위기기간 동안 관계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 안부 확인 및 연계 유지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개입
- 슈퍼바이저·기관장 공유하에 팀 단위 대응 및 의사결정

▸ 유의점
- 자해·자살 위험은 개별 인력이 판단·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님을 전제로 함
- 위기 상황에서는 대상자 의사를 고려하되 전문기관 판단 우선 연계
- 자립지원전담인력 단독 대응을 지양하고 팀 또는 기관 차원에서 대응
- 실무자의 정서적 부담과 소진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슈퍼비전 및 지원요청 권장

▸ 주요 지원내용

① 위기 상황 인지 및 전문기관 연계
- 자해·자살 위험 징후 발견 시 전문기관에 의뢰

자살 위험성 평가
· 자살 생각의 구체성: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 자살 수단의 접근 가능성: 약물, 위험한 도구 등을 가지고 있는지
· 과거 자해·자살 시도 이력: 이전에 시도한 적이 있는지, 언제였는지
· 현재 심리상태: 극심한 절망감, 무망감, 고립감 등
· 보호 요인: 가족, 친구 등 지지체계 존재 여부

자살위험징후
· '죽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등의 표현
· 소중한 물건을 정리하거나 나눠줌
· 주변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
· 갑작스러운 평온함
· (자살 결심 후), SNS에 유서 같은 글 작성 등

- 집중 관찰: 매일 또는 수시 연락을 통해 안전 확인
- 위기 상황에 혼자 놓이지 않도록 지지적 동행 및 연락 유지

· '괜찮아질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등의 말보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지금 여기 제가 있어요'라고 공감하고 함께 있어줌
· 위험 수단 제거(약물, 날카로운 도구, 끈 등) 및 안전한 환경 조성
· 가족 또는 의미있는 지인에게 연락 등 가능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 안내에 따라 협조

-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즉시 슈퍼바이저 공유 후 119,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 위기대응팀 등 전문기관 연계

② 위기 대응체계 연계 및 안전 계획수립 협조
- 위기 대응체계 연계: 자살예방센터(1393),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위기대응팀, 경찰, 119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여 연계 이후 결과 기록

③ 전문 치료 및 자원 연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입원, 위기 상담 등 전문 치료 즉각 연계
- 안정화 이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자해·자살 사고의 배경 및 촉발 요인 파악
- 경제, 주거 등 긴급 자원 연계(외부 자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등)

실천 TIP	■ 자살 위기는 대부분 다른 어려움(경제적 어려움, 관계 단절, 학업·직장 문제 등)이 쌓여서 발생 ■ 위급한 상황 안정화한 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도록 지원

• 범죄 및 폭력 피해

▸ 지원 목표
- 범죄 및 폭력 피해 상황에서 전문 보호·사법 체계로 즉시 연계하여 안전 확보
- 자립지원전담인력 개인의 대응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관 및 유관기관 중심의 보호체계 작동
- 피해 회복을 위한 의료, 법률, 심리지원 연계 및 재발 예방

▸ 지원 방법
- 범죄·폭력 피해 인지 즉시 기관 내 공유 및 경찰·전문기관 연계 후 가능하면 현장 방문 및 안전 확인
- 위기기간 동안 안전 확인 및 관계 유지 중심의 지원
- 경찰, 법률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전문 대응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법적 절차는 전문기관, 법률지원기관 동행하에 지원

▸ 유의점
-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조사자, 판단자가 아닌 연결자 역할에 집중
- 피해 경험을 판단하거나 사실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노출 최소화
- 현장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 동행 요청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복귀하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 지지 제공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주요 지원내용

① 피해 상황 인지 및 전문 대응 연계
- 범죄·폭력 의심 시 유형 및 심각도에 대한 세부 판단을 위해 전문기관 위임
  * 범죄·폭력 유형: 신체적 피해(때리기, 밀치기, 물건 던지기 등), 성적 피해(성추행, 성폭력, 성적 착취 등), 정서적 피해(스토킹, 협박 등), 경제적 피해(돈을 빼앗기, 노동착취, 재산 갈취 등)
- 생명·신체 위협 시 즉시 112 신고하고 현장 출동 요청. 긴급 의료 조치 필요시 119에 신고하고 병원 이송
- 의료적 조치 및 증거 확보는 의료기관, 수사기관 안내에 따라 지원
  * 피해 증거 수집 및 보존(사진 촬영, 진단서 발급 등),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등 증거자료 보관

실천 TIP	■ 범죄·폭력 징후: 설명할 수 없는 상처나 멍, 가해자를 두려워함, 가해자의 허락 없이 행동하지 못함, 과도하게 움츠러들거나 불안해함,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 경제적 어려움 호소 등 ■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하여 사실을 말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야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지 않으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분명히 말함. 상처 사진을 촬영할 때는 날짜가 표시되도록 하고, 여러 각도에서 촬영

② 긴급 보호 및 법적 조치 연계
- 긴급 입소 지원: 안전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등 전문 보호체계 즉시 연계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한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 경찰 신고 지원: 경찰 신고, 법적 보호조치 신청 시 전문기관, 법률지원기관과 동행 지원
- 가해자 고소·고발, 국선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 법률 지원체계 신청 절차 지원

실천 TIP	■ 가정폭력 피해자는 1366, 성폭력 피해자는 117로 신고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의료, 법률, 상담을 한 곳에서 지원 ■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이용할 수 있음.

③ 회복 및 재발 방지 중심 연계
- 외상치료 및 정신건강 지원: 전문기관(성폭력전담의료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중심으로 지속 연계
- 가해자 접근 차단을 위한 안전 계획, 주거 이전 등은 관계기관 협력하여 추진
- 재피해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

실천 TIP	■ 범죄·폭력 피해 후 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심리치료 병행 ■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따뜻하고 지지적인 태도로 대함 ■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장기적으로 지원

05. 협조가 어려운 대상자 대응 방안

1. 실천 방향

• 대상: 자립지원통합서비스에 비협조적이거나, 연락두절·약속 불이행, 조기 종결 우려 등이 있는 대상자

• 주요 실천 방향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과정에 원활한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종결 결정 전에 비자발성 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집중적 탈락 방지를 위한 대응 시도

▸그럼에도 대상자의 변화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조기 종결 논의

상황유형	비협조적인 태도	연락두절 및 약속 불이행	조기 종결 불가피
주요 원인	▪ 생존 자원 급박, 과거 상처로 인한 불신, 자존감 저하	▪ 급작스러운 생활 변화, 심리적 압도감, 과거 트라우마, 단순 망각	▪ 3개월 이상 지속 연락 두절, 반복적 약속 불이행, 안전 우려 상황
핵심 대응 전략	▪ 단계적 신뢰 구축, 물질적 지원 우선	▪ 비난 없는 접촉, 원인 파악 후 관계 재설정	▪ 최종 노력 후 신중한 종결, 재개 가능성 열어두기
주요 실천 방법	▪ 판단 없이 의도 확인 ▪ 물질적 지원으로 신뢰 구축 ▪ 짧은 대화부터 시도 ▪ 최소 참여 조건 명확화	▪ 다양한 채널로 2-3회 접촉 시도 ▪ 비난 없이 상황 이해 ▪ 만남 형식·빈도 재조정 ▪ 약속 리마인더 제공	▪ 2주간 마지막 집중 접촉 ▪ 사례회의 통한 객관적 판단 ▪ 다른 기관 연계 시도 ▪ 상세한 문서화
유의사항	▪ 비협조는 자기보호 반응임을 이해, 장기적 관점 유지	▪ '왜?'가 아닌 '무슨 일?' 질문, 청년 속도 존중	▪ 종결 후에도 분기별 안부 메시지, '언제든 재개 가능' 메시지 유지

2. 현금·현물 등 일부 서비스만 받고 비협조적인 경우

• 원인 및 상황 분석

▸ 비협조적 태도의 이면 파악

- 단순히 '이용만 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
- 당장 생존이 급박한 상황일 수 있음: 집세, 식비, 교통비 등 기본 생활비 해결 우선
- 과거 상처로 인한 불신: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어른에게 실망한 경험이 관계 맺기를 두렵게 만듦
- 자존감 저하나 무력감: 무엇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 예: 식비 지원만 받고 상담 거부 → '지금 먹는 것도 해결 안 되는데 미래 계획은 사치'라는 신호일 수 있음

▸ 과거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방어기제 이해

- '어른들은 결국 자기들 원하는 대로 나를 바꾸려 한다'는 불신이 있을 수 있음
-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엔 조건 달고 통제한다'는 경험이 있을 수 있음
- '그냥 돈만 주시면 됩니다'는 '관계 맺는 것이 두렵다'는 메시지일 수 있음
- 비협조는 공격이 아니라 자기 보호임을 이해

▸ 생존 자원이 가장 급한 상황 고려

- 매슬로우 욕구위계이론: 기본 의식주 미해결 시 상위 욕구(자아실현, 관계) 추구 어려움
- 지금 당장 생존이 걸린 문제(집세 밀림, 끼니 거르기 등)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음
-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요?'로 우선순위 함께 파악

• 실천 방법

실천방법	세부방법	세부 대응 방법
솔직한 대화 시도	판단하지 않는 태도로 의도 확인	▪ '왜 프로그램에 참여 안 하나요?', '경제적 지원만 받으려는 건가요?' 같은 비난조 질문 지양 ▪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로 개방형 질문 ▪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로 협력 의지 표현
	자립지원통합서비스가 부담스러운지 직면	▪ '상담이나 프로그램이 부담스러우신가요?' ▪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나요?'
	솔직한 답변 격려하고 존중	▪ 대상자가 '솔직히 돈만 필요해요'라고 해도 화내거나 실망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 ▪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시군요. 그것부터 도와드리고, 나중에 다른 필요가 생기면 그때 이야기해 볼까요?'
동기 강화	청년이 원하는 것과 서비스 연결	▪ 개인 목표 파악: 좋은 일자리? 독립적 주거? 운전 면허? 학업 완성? ▪ '이루려면 이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준비해 볼까요?' ▪ 청년의 욕구와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의미 있게 연결
	작은 변화 인정하고 격려	▪ '지난달보다 한 번 더 연락주셨네요', '이번엔 약속 시간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 사소해 보이는 변화도 크게 격려하여 긍정적 피드백 제공 ▪ 청년이 '변화가 인정받는다'는 경험을 하게 함
	주변의 성공 사례 공유	▪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청년의 성공 사례 공유 ▪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님은 이렇게 하셔서 지금은...'(개인정보 보호 필수) ▪ '당신도 할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 전달

실천방법	세부방법	세부 대응 방법
단계적 접근	물질적 지원으로 신뢰 구축	▪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경제적 지원을 먼저 충실히 제공 ▪ 복잡한 서류나 과도한 질문으로 힘들게 하지 않음 ▪ '이번 달 통신비 입금되었습니다. 필요한 거 챙기시고, 부족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이 '이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경험 제공
	지원과 함께 짧은 대화 시도	▪ 억지로 긴 상담 하지 말고 1-2분 가벼운 안부 나눔 ▪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 추운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요즘 일은 어때요?' ▪ 청년이 짧게 대답하고 가더라도 괜찮음 ▪ 작은 상호작용이 쌓이면서 신뢰 형성
	작은 성공 경험 제공	▪ 쉽게 달성 가능한 아주 작은 목표 제안 ▪ '다음에 오실 때 관심 있는 일자리 정보 있으면 함께 봐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 없으시면요' ▪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전화나 문자 주세요. 간단한 거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 청년이 작은 요청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주면 '도움 요청하면 실제로 도움 된다'는 긍정 경험 제공
	장기적 관계 형성 관점 유지	▪ 당장의 태도 변화나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지 않음 ▪ 6개월, 1년 후를 보는 긴 호흡으로 접근 ▪ '언젠가 00님이 준비되었을 때 함께하면 됩니다'는 메시지 지속 전달
경계 설정	사례관리 취지와 상호 책임 재확인	▪ '우리가 함께 목표로 했던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사례관리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청년과 관리자의 협력 과정임을 상기 ▪ 청년의 참여와 노력도 필요함을 부드럽게 전달
	최소한의 참여 조건 명확화	▪ 월 1회 만남, 월 1회 통화, 근황 공유(문자라도) 등 기본적인 조건을 명확히 하되 위협이나 처벌로 들리지 않도록 톤 조절 ▪ '경제적 지원을 계속 받으시려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조건 미충족 시 서비스 조정 가능성 안내	▪ '만약 지속적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최소한의 만남도 어려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처벌이 아닌 현실적 제약(예산, 인력, 우선순위 등)으로 설명 ▪ '다른 도움이 더 필요한 청년에게도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로 기관 입장 설명

3.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 원인 및 상황 분석
  - ▸ 가능한 원인 탐색
    - 급작스러운 생활 변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음, 이사, 건강 문제 발생 등
    - 심리적 압도감: 사례관리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고 느낌, 변화에 대한 두려움
    - 과거 트라우마: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어른에 대한 불신
    - 단순 망각: 약속을 깜빡 잊음, 시간 관리의 어려움
    - '지난번 만남 이후 부담스러운 점이 있었나요?',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등으로 확인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실천 방법
  - ▸ 다양한 채널로 접촉 시도
    - 전화, 문자, SNS 등 청년이 선호하는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
    - 전화 응답이 없으면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연락이 안 되어 걱정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문자 발송
    - 청년마다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이 있으므로, 다각적 시도 필요
      * 예: 전화는 선호하지 않으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응답하는 성향 파악 등
  - ▸ 비난하지 않는 톤으로 안부 확인
    -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괜찮으신지 궁금했습니다' 등 걱정의 메시지 전달
    - 안부와 걱정 우선 표현
  - ▸ 2-3회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접촉 시도
    - 1차 시도: 약속 당일 또는 익일
    - 2차 시도: 3일 후 '아직 연락이 안 되어 다시 연락드립니다. 답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3차 시도: 1주일 후 최종 연락
    - 너무 잦은 연락은 오히려 더 부담되고, 너무 드문 연락은 관계가 단절될 수 있음
  - ▸ 재연락이 닿으면 비난 없이 상황 이해
    - 청년의 설명이나 변명을 일단 경청하고 인정
    -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연락이 어려우셨나 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로 대화 시작
    - '왜 그랬어요?'는 방어적 반응을 야기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음
  - ▸ 청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공감 표현
    - 중간에 끊거나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경청
    - '그런 상황이었다면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등으로 공감 표현
    -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긍정적 피드백 제공 후 이후 자립지원통합서비스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
  - ▸ 관계를 재설정하고 다시 사례관리 과정을 정비하여 실행

관계 재설정을 위한 TIP
■ 청년의 속도와 방식 존중
■ "지금 편한 방식으로 천천히 다시 시작해볼까요?"로 제안
■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하실 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로 자율성 존중
■ 청년이 "아직 부담스럽다"고 하면 "가끔 안부만 여쭤봐도 될까요?"로 최소한의 연결 유지
■ 만남의 형식이나 빈도 재조정
■ 기존: 주 1회 사무실 대면 → 조정: 2주 1회 카페 또는 전화상담
■ "매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셨다면,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고 나머지는 전화로 하는 건 어떨까요?"
■ "사무실이 불편하시면 근처 카페에서 만나도 됩니다"
■ 청년의 생활패턴(근무시간, 선호 장소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조정
■ 작은 약속부터 다시 시작
■ "다음 주 목요일 3시에 전화 한 통 드려도 될까요?" 같은 부담 없는 약속 제안
■ 작은 약속 이행 시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로 긍정적 강화
■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신뢰 회복
■ 약속 리마인더 제공
■ 사전에 "제가 약속 전날 문자 드려도 괜찮을까요?"로 동의 구함
■ 전날 저녁 또는 당일 아침 "내일(오늘) 오후 3시 만남, 기억하시죠? 편하게 오세요" 문자 발송
■ 리마인더는 통제가 아닌 실질적 도움임을 전달

4.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조기 종결이 불가피한 경우

- 종결 전 최종 노력
  - ▸ 마지막 집중 접촉 시도 및 종결 가능성 안내(2주간)
    - 2주간 집중적 연락 시도하며 종결 가능성 명확히 전달
      * 예: '0월 0일까지 연락주시지 않으면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종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연락드렸지만, 연결이 어려워 안타깝습니다. 12월 31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연락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주거지 방문하여 안전 확인 시도
    - 명확한 마감 시한과 함께 최종 결정권을 청년에게 부여
    - 문자 또는 메일로 공식 전달하여 기록 보관
    - 청년이 신뢰하는 주변인 통해 연락 시도 요청
  - ▸ 사례회의를 통한 객관적 판단
    - 슈퍼바이저, 팀장, 동료 참여하는 종결 심의 회의 개최
    - 모든 가능한 접촉 방법 시도했는지, 더 시도할 방법 없는지, 종결이 최선인지 논의
    - 회의록 작성하여 종결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
    - 다른 기관으로 연계 시도
    - 청년의 주거지 인근 다른 유관기관에 정보공유 및 연계 의뢰
    - 지역 청년센터, 자활센터 등에 협조 요청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 ▸ 최종 종결 통보
    - 가능한 모든 방법(전화, 문자, 메일, 등기우편 등)으로 종결 사실 통보함
    - '0회 연락드렸으나 연결이 어려워 0월 0일부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종결합니다. 향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연락주세요'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종결(서식39, 40)
  - ▸ 상세한 종결 사유 및 관련 과정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문서로 기록
    - 연락이 어려워진 시점, 이후 몇 회 어떤 방법으로 접촉 시도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
    - 사례회의 일자, 참석자, 논의 내용, 결정 사항 기록
  - ▸ 청년의 마지막 확인 상태
    - 마지막 접촉 시점의 청년 상황: 주거, 경제, 건강, 관계, 심리 등
    - 미해결된 욕구와 필요, 청년의 강점과 자원도 함께 기록
  - ▸ 향후 재개 시 필수 참고 사항
    - 기존 라포 형성 방법: '편한 카페 선호', '카톡 선호', '저녁 시간대 연락 잘 됨' 등
    - 민감한 주제나 트리거: '가족 이야기 회피', '시설 경험 언급 시 불편해함' 등
    - 과거 효과적이었던 개입이나 지원 방법
  - ▸ 타 기관 연계 시도 내역: 연계 의뢰한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일자 기록

조기 종결 사유	
■ 장기적 연락 두절	■ 실질적인 사례관리 진행이 6개월 이상 불가능한 상태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연락 시도했으나 응답 없음	■ 최소 참여 조건 장기 미충족
■ 다양한 채널(전화, 문자, SNS, 방문 등) 모두 활용했으나 접촉 실패	■ 합의된 최소 참여 조건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미충족
■ 주변인 통해서도 소재 파악 불가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계획 수정 제안했으나 응답·참여 없음
■ 지속적 약속 불이행과 회피	■ 안전 우려 상황
■ 반복적으로 약속 불참하고 만남 지속 회피	■ 자립지원전담인력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위협 반복
	■ 청년의 불안정한 상태로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안전 위협

- 조기 종결 후 후속 관리
  - ▸ 조기 종결했지만 욕구 및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한 연결 및 재참여 가능성 안내
  - ▸ 조기 종결 후 6개월간 느슨한 연결 유지
    - 종결 후에도 6개월~1년간 분기별 1회 안부 메시지 발송함
    - 명절, 생일, 기념일 등에 짧은 메시지 발송: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비고: 기관 상황에 따라 사후관리 담당자와 역할 조정 필요
  - ▸ 재연락 대비 체계 구축
    - 청년 파일을 '조기 종결 – 재개 가능' 상태로 보관(완전 폐기하지 않음)
    - 청년이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 연락이 오면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준비

- ‘다시 연락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환대

▸ ‘언제든 재개 가능’ 메시지 지속
- ‘이건 끝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조
- ‘준비되셨을 때 찾아주세요’ 여지를 남겨 둠

▸ 긴급상황 대비
- 위기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기관 연락처, 긴급 핫라인 정보 제공
- 24시간 청년전화 1388, 자살예방 1393, 정신건강위기상담 1577-0199 등

• 조기 종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자기관리

▸ 죄책감과 무력감 다루기
- ‘내가 더 잘했으면’ 하는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
- 그러나 청년의 선택과 상황은 사례관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임을 받아들임
-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 이제는 청년이 결정할 차례다’

▸ 슈퍼비전과 동료 지지 적극 활용
- 슈퍼바이저나 동료들과 솔직하게 감정 나누고 객관적 피드백 받음
- 혼자 감당하지 말고 팀으로 나눔

▸ 모든 청년을 도울 수 없다는 현실 수용
- 사례관리자는 한계가 있으며, 청년이 준비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음
- ‘못 도와줘서’가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로 인식

▸ 자신의 소진 신호 민감하게 인식 및 연계
- 소진 증상 느껴질 때 적극적 대처: 휴가, 상담, 교육, 사례 수 조정 등
- 자기돌봄은 지속 가능한 사례관리의 필수 조건
- 기관 운영비를 활용하여 종사자 심리정서 지원비(1인 5회기 내) 집행 가능

조기 종결자를 대하는 실천 TIP
■ 대상자에 대해 비난하지 않기
■ 대상자를 ‘문제적’, ‘비협조적’으로 낙인찍지 않으며, 종결 기록에도 부정적으로 기술하지 않음 (자립지원전담인력의 해석, 감정이 아닌 객관적 사실 기록)
■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고 ‘영원한 종결’이 아닌 ‘지금 시점의 종결’로 이해
■ 종결 후에도 문을 열어두어 청년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함
■ 언젠가는 종결 결정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청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님
■ 진행 과정의 문서화를 통해 모든 접촉 시도, 사례회의, 종결 결정 과정 상세히 기록(법적·윤리적 책임성 확보 및 청년 재연락 시 빠른 재개를 위해 필수)

2026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1권

발 행 일 2026년 5월

발 행 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연 락 처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G스퀘어 5층
TEL 02-6454-8500
홈페이지 : www.ncrc.or.kr
대표메일 : jarip@ncrc.or.kr
카카오채널 : 아동자립지원
자립정보ON : jaripon.ncrc.or.kr

※ 이 사업 안내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